

시·군종합감사

2023년도 의령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전보임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7
2)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17
3) 사설법인묘지(○○공원묘원) 및 산지 관리업무 소홀	23
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 소홀	36
5)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45
6)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52
7)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상태 지도·감독 부적정	58
8)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 전용 허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65
9)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등 업무처리 부적정	71
10)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76
11)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79
12)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83

13) ○○○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88
14) 취득세 부과 누락 등 업무 소홀	97
15)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104
16)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등 부적정 ·	117
17)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141
18)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	147
19) 토석발생 건설공사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	153
20)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등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166
21) 공동주택 소규모지하영향평가 미실시 등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	170
22)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 ·	179
23)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업무 등 소홀 ...	192
24) ○○○○ ○○○○○○ 및 ○○ ○○○○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누락 등 설계용역감독 부적정	20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의령군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의령군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전반,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 등 회계 운영 적정성,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처리실태, 주요 투자사업 및 대형공사 추진실태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의령군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지방의회 논의 사항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6. 5.부터 6. 9.까지 4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 6. 13.부터 6. 21.까지 7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6. 21. 의령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9. 7.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의령군은 경상남도 중앙 내륙에 위치하며, [표 1]과 같이 2023년 9월 기준 인구는 49,857명이고, 면적은 518.00km²이며, 관할 행정구역은 1개 읍, 12개 면이다.

[표 1] 일반현황('23. 9월 기준)

인구(명)			면적(km ²)	행정구역				
계	남	여		읍	면	동	법정	행정리
25,620	12,727	12,893	482.80	1	12	-	116	239

[자료 : 의령군 누리집]

2. 행정조직

의령군의 행정조직은 [표 2]와 같이 본청은 2담당관, 3국, 1추진단, 13과, 소속기관은 2직속기관, 2사업소가 있고, 군의회와 13개 읍면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656명이다.

[표 2] 행정조직현황('23. 8월 기준)

구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담당관	국	추진단	과				
기구	2	3	1	13	2	2	13	1
정원	314				124	21	17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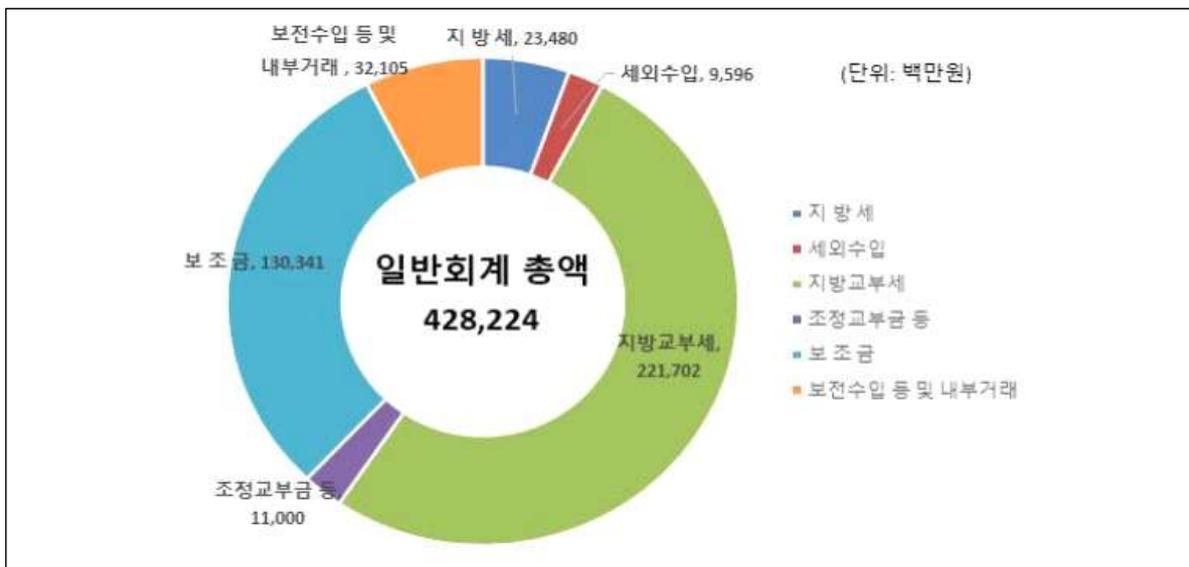
[자료 : 의령군 누리집]

3. 재정 현황

의령군의 20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938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그림 1]과 같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331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3,630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1억 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7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07%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자료 : 의령군 누리집-2023년 의령군예산기준 재정공시]

4. 주요 현안 사업

2023년 의령읍 서동리 내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을 개관할 예정이고,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 및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7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백만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기타
계	71 (29)	13	32 (3)	24 (24)	2 (2)	142	11	49	82	836	13	67	0	106	650
처분 요구	42 (18)	6	19 (1)	15 (15)	2 (2)	142	11	49	82	768	-	67	-	65	636
현지 조치	29 (11)	7	13 (2)	9 (9)	-	-	-	-	-	68	13	-	-	41	14

감사결과 확인된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분야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 소홀
- ○○○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계약·세무분야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취득세 부과 누락 등 업무 소홀
-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등 부적정

건설분야

-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업무 등 소홀

기타분야

- 사설법인묘지(○○공원묘원) 및 산지 관리업무 소홀
-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 전용 허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전보임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행정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시행하면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전보임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르면 직제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¹⁾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1) 필수보직기간 이전 전보 예외 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①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②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③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①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더라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임용할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전체 전보인원 986명 중 67.2%에 해당하는 663명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하여 전보함으로써 연례 반복적으로 연간 전보인원의 10% 범위를 초과한 57.2% 인원에 대하여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하여 전보임용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한 전보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5. 31. 현재
연간 전보인원 (A)	986	258	304	311	113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인원 (B)	663	191	195	203	74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 비율 (C=B/A×100)	67.2%	74.0%	64.1%	65.3%	65.5%
초과 비율 (D=C-10%)	57.2%	64.0%	54.1%	55.3%	55.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직렬 불부합 전보임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및 제5조(직렬별 정원)에 따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전보임용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표를 준수하여 그 범위에서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불임 [별표]와 같이 2020. 11. 1.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 등 107명을 직렬별·직급별 정원표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불부합 전보임용 하였다.

4.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로서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

여야 하고, 수도시설관리자는 [표 2]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관련 학과 졸업, 과목 이수, 실무 경력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

- | |
|--|
|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p> <p>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
|--|

[출처 : 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발취]

그리고 「수도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관련 자격을 갖춘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수도시설관리자인 ○○○○과장을 전보임용할 경우 토목 등 관련 학과 졸업 여부, 수도공학 등 관련 과목 이수 여부,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 경력 등을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20. 11. 1.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3]과 같이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음에도 [표 4]와 같이 지방 ○○사무관(○○) ○○○ 등 2명을 ○○○○과장으로 전보임용함으로써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였고, 이는 인가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 인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군민에게 수도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책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 현황

연번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학력	실무 경력
1	○○5급	○○○○과장	○○○	'○○. ○.	○○대 ○○○○과 졸	1년 6월
2	○○5급	○○과장	○○○	'○○. ○.	○○대 ○○○○과 졸	2년 10월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과장 전보임용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전보임용일	임용 기간
1	○○5급(○○)	○○○	'22. 1. 7.	'22. 1. 7. ~ '22. 7. 14.
2	○○5급(○○)	○○○	'22. 7. 15.	'22. 7. 15. ~ 현재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제4장 인사관리 5. 직무대리에 따르면 법정대리로서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가 있을 경우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 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법정대리에 의해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²⁾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무대리는 임용권자 및 보조기관의 직위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보좌기관인 의회 전문위원은 공석이 되어도 직무대리 지정 직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따르면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규칙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담당관·단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야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사고 등이 있을 경우 규칙에 따라 적정한 사람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21. 7. 5.자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보좌기관으로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위에 ○○과 ○○○○○○ ○○○을 부당하게 직무대리(지정대리)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다.

2)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직급·직렬 불부합 전보임용 현황

연번	직제정원 규칙상			현 보 직 자				직렬불부합 사 유
	부서및직위	직렬	직급	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1	○○과 ○○과장	행정.환경	5급	시설	5급	○○○	'○○.○○.○○	인사운영
2	○○면 ○○면장	행정.녹지.보건.시설	5급	복지	5급	○○○	'○○.○○.○○	인사운영
3	○○면 ○○면장	행정.농업.환경.시설	5급	녹지	5급	○○○	'○○.○○.○○	인사운영
4	○○○○담당관	전산.보건.환경	7급	공업	6급	○○○	'○○.○○.○○	인사운영
5	○○○○담당관	행정.기계운영.사무운영	9급	기계운영	7급	○○○	'○○.○○.○○	인사운영
6	○○○○담당관	행정.농업.녹지	6급	행정	7급	○○○	'○○.○○.○○	인사운영
7	○○○○○○○○단	행정.농업.시설	6급	행정	7급	○○○	'○○.○○.○○	인사운영
8	○○○○○○○○단	행정.시설	9급	행정	8급	○○○	'○○.○○.○○	인사운영
9	○○과	행정.농업.시설	7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10	○○과	행정.세무	7급	세무	6급	○○○	'○○.○○.○○	인사운영
11	○○과	행정.세무.농업.운전	7급	운전	6급	○○○	'○○.○○.○○	승진('21.7.5.)
12	○○○○과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7급	복지	8급	○○○	'○○.○○.○○	인사운영
13	○○○○과	행정	8급	복지	8급	○○○	'○○.○○.○○	인사운영
14	○○○○과	사회복지	9급	복지	8급	○○○	'○○.○○.○○	승진('23.1.9.)
15	○○○○과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7급	복지	8급	○○○	'○○.○○.○○	인사운영
16	○○○○과	행정	9급	복지	9급	○○○	'○○.○○.○○	인사운영
17	○○○○과	행정.세무.보건	7급	시설	6급	○○○	'○○.○○.○○	인사운영
18	○○○○과	행정.사회복지.환경	7급	시설	7급	○○○	'○○.○○.○○	인사운영
19	○○○○과	행정.농업.녹지.시설	8급	시설	9급	○○○	'○○.○○.○○	인사운영
20	○○○○과	행정.농업.녹지.시설	8급	시설	9급	○○○	'○○.○○.○○	인사운영
21	○○○○○○과	행정.시설	8급	기계운영	7급	○○○	'○○.○○.○○	인사운영
22	○○○○○○과	행정.농업.시설	8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23	○○○○○○과	행정.공업.환경.시설	8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24	○○○○○○과	행정.사회복지.공업.보건	8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25	○○○○과	행정.사회복지.전산	7급	행정	8급	○○○	'○○.○○.○○	인사운영
26	○○○○과	행정.시설.방호	7급	행정	8급	○○○	'○○.○○.○○	인사운영
27	○○○○과	행정.농업.녹지.시설	7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28	○○과	환경.공업.기계운영	7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29	○○과	행정.환경.시설	8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30	○○과	환경.공업.화공운영	8급	행정	9급	○○○	'○○.○○.○○	인사운영
31	○○○○과	행정.녹지.시설	8급	녹지	6급	○○○	'○○.○○.○○	인사운영
32	○○○○과	행정.농업.녹지	8급	녹지	9급	○○○	'○○.○○.○○	인사운영
33	○○○○과	행정.공업.녹지.시설	8급	녹지	9급	○○○	'○○.○○.○○	인사운영
34	○○○○과	행정.시설	7급	행정	6급	○○○	'○○.○○.○○	승진('23.2.15.)
35	○○○○과	행정.사회복지.시설	7급	시설	6급	○○○	'○○.○○.○○	승진('23.3.1.)

연번	직제정원 규칙상			현 보 직 자				직렬불부합사 유
	부서및직위	직렬	직급	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36	○○○○과	행정.공업.시설	7급	시설	6급	○○○	'00.00.00	승진('22.2.16.)
37	○○○○과	행정.공업.방재안전	7급	공업	8급	○○○	'00.00.00	인사운영
38	○○○○과	행정.전산.방송통신	7급	방송통신	8급	○○○	'00.00.00	인사운영
39	○○○○과	행정.농업.시설	7급	시설	8급	○○○	'00.00.00	인사운영
40	○○○○과	행정.농업.시설	7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41	○○○○과	행정.전산	8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42	○○○○과	행정.농업.시설	8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43	○○○○과	행정.농업.시설	7급	시설	9급	○○○	'00.00.00	인사운영
44	○○○○과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시설	8급	○○○	'00.00.00	인사운영
45	○○○○과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사회복지	9급	○○○	'00.00.00	인사운영
46	○○과	행정.시설	7급	농업	7급	○○○	'00.00.00	인사운영
47	○○과	행정.시설	7급	전산	7급	○○○	'00.00.00	인사운영
48	○○과	행정.공업.시설	7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49	○○과	행정.전산.농업.시설	8급	시설	9급	○○○	'00.00.00	인사운영
50	○○○○과	행정.공업.환경.시설	8급	공업	6급	○○○	'00.00.00	근속('23.1.9.)
51	○○○○과	행정.시설.화공운영	8급	시설	9급	○○○	'00.00.00	인사운영
52	○○○○과	행정.농업.시설	8급	시설	9급	○○○	'00.00.00	인사운영
53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	6급	○○○	'00.00.00	인사운영
54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	6급	○○○	'00.00.00	인사운영
55	○○○○과	운전	8급	운전	6급	○○○	'00.00.00	승진('23.1.9.)
56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진료	6급	○○○	'00.00.00	인사운영
57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진료	6급	○○○	'00.00.00	인사운영
58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진료	6급	○○○	'00.00.00	인사운영
59	○○○○과	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	7급	보건	9급	○○○	'00.00.00	인사운영
60	○○○○과	행정.보건.공업.의료기술	8급	보건	9급	○○○	'00.00.00	인사운영
61	○○○○과	행정.보건.공업.의료기술	8급	보건	9급	○○○	'00.00.00	인사운영
62	○○○○과	의료기술.간호	8급	보건	9급	○○○	'00.00.00	인사운영
63	○○○○과	의료기술.간호	8급	보건	9급	○○○	'00.00.00	인사운영
64	○○○○과	보건.간호.사회복지	7급	보건	6급	○○○	'00.00.00	인사운영
65	○○○○과	보건.의료기술.시설	7급	의료기술	6급	○○○	'00.00.00	인사운영
66	○○○○과	사회복지.보건.공업.의료기술	8급	사회복지	9급	○○○	'00.00.00	인사운영
67	○○○○과	행정.보건.의료기술	9급	운전	9급	○○○	'00.00.00	인사운영
68	○○○○과	농업.수의.농촌지도사	7급	농업	6급	○○○	'00.00.00	승진('22.7.15.)
69	○○○○과	행정.농업.녹지.환경	7급	농업	6급	○○○	'00.00.00	승진('23.2.15.)
70	○○○○과	행정.환경.시설	7급	농업	8급	○○○	'00.00.00	승진('23.1.9.)
71	○○○○과	농업.수의.농촌지도사	7급	농업연구	연구사	○○○	'00.00.00	인사운영

연번	직제정원 규칙상			현 보 직 자				직렬불부합사유
	부서및직위	직렬	직급	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72	○○○○과	행정.녹지.농촌지도사	7급	농업	6급	○○○	'00.00.00	인사운영
73	○○○○과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농업	6급	○○○	'00.00.00	인사운영
74	○○○○과	행정.공업.농업.시설	8급	기계운영	7급	○○○	'00.00.00	인사운영
75	○○○○사업소	행정.환경.연구사	6급	전산	6급	○○○	'00.00.00	인사운영
76	○○○○사업소	행정.환경.연구사	6급	행정	7급	○○○	'00.00.00	인사운영
77	○○○○사업소	행정.공업.농업.보건	6급	행정	7급	○○○	'00.00.00	승진('23.2.15.)
78	○○○○사업소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8급	행정	7급	○○○	'00.00.00	인사운영
79	○○○○사업소	행정.공업	8급	행정	7급	○○○	'00.00.00	인사운영
80	○○○○사업소	-	-	전산	7급	○○○	'00.00.00	인사운영
81	○○○○사업소	행정.사회복지.시설.기계운영	9급	기계운영	7급	○○○	'00.00.00	인사운영
82	○○○○○○사업소	행정.전산.녹지.환경	8급	전산	6급	○○○	'00.00.00	인사운영
83	○○읍	행정.전산.농업.시설	8급	간호	8급	○○○	'00.00.00	인사운영
84	○○면	사회복지	8급	행정	6급	○○○	'00.00.00	승진('22.7.15.)
85	○○면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9급	행정	8급	○○○	'00.00.00	인사운영
86	○○면	행정.농업.시설	9급	행정	8급	○○○	'00.00.00	승진('23.1.9.)
87	○○면	행정.사회복지	8급	행정	7급	○○○	'00.00.00	인사운영
88	○○면	행정.세무.농업	9급	간호	8급	○○○	'00.00.00	인사운영
89	○○면	사회복지	9급	복지	8급	○○○	'00.00.00	인사운영
90	○○면	행정.사회복지.농업	7급	복지	6급	○○○	'00.00.00	인사운영
91	○○면	행정.세무.농업	7급	행정	6급	○○○	'00.00.00	승진('22.7.15.)
92	○○면	행정.농업.시설	9급	복지	9급	○○○	'00.00.00	인사운영
93	○○면	행정.공업.농업.간호	7급	의료기술	6급	○○○	'00.00.00	인사운영
94	○○면	행정.사회복지.농업	7급	환경	6급	○○○	'00.00.00	인사운영
95	○○면	행정.세무.녹지	7급	녹지	6급	○○○	'00.00.00	인사운영
96	○○면	행정.공업.농업.간호	7급	행정	8급	○○○	'00.00.00	인사운영
97	○○면	사회복지	8급	복지	9급	○○○	'00.00.00	인사운영
98	○○면	행정.농업.간호.환경	7급	행정	6급	○○○	'00.00.00	승진('22.7.15.)
99	○○면	행정.농업.환경.시설	7급	행정	6급	○○○	'00.00.00	인사운영
100	○○면	운전	8급	운전	7급	○○○	'00.00.00	승진('21.1.1.)
101	○○면	행정.농업.시설	7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102	○○면	행정.환경.시설.화공운영	8급	행정	9급	○○○	'00.00.00	인사운영
103	○○면	행정.농업.간호.시설	8급	전산	6급	○○○	'00.00.00	인사운영
104	○○면	행정.사회복지.농업	9급	화공운영	6급	○○○	'00.00.00	인사운영
105	○○면	행정.사회복지.농업	8급	행정	6급	○○○	'00.00.00	인사운영
106	○○면	행정.사회복지.농업	7급	행정	6급	○○○	'00.00.00	근속('23.1.9.)
107	○○면	행정.농업.시설	7급	행정	8급	○○○	'00.00.00	승진('22.7.1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전보임용 등 인사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감독책임자 ○○과 ○○○○○○ ○○○(현 ○○○○담당관), ○○과 ○○○○○○ ○○○(현 ○○면),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과, ○○○○○○), ○○과 ○○○○○○ ○○○(현 ○○면, ○○○○○○), 실무담당자 ○○과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또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하수도 과장으로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기관경고·통보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전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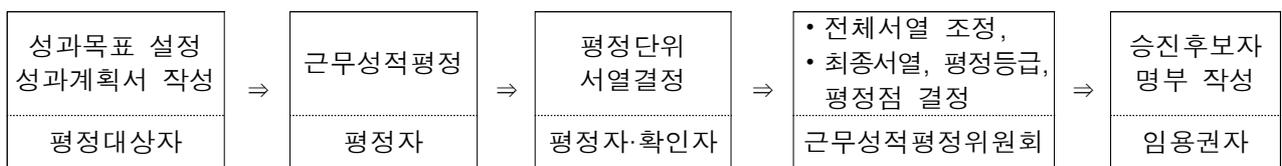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그림]과 같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평정개요(평정기간, 대상공무원, 평정자 및 확인자, 평정원칙, 평정절차), 평정방법(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가점평정),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수립한 후 전 부서에 해당 계획을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의령군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평정자가 아닌 사람이 근무성적평정서 평정점 등 작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근무성적평정 계획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표]와 같이 평정단위별 평정대상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다.

[표] 의령군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2023년 상반기 기준)

평정단위		평정자	확인자
소속	직급		
담당관, 추진단, 사업소, 읍면	5급	부군수	-
	6급 이하, 지도사, 연구사	담당관, 단장, 사업소장, 읍면장	부군수
○○○○국, ○○○○국, ○○○○국	5급	국장	부군수
	6급 이하, 별정직, 연구사	담당과장	국장
○○소	5급	소장	부군수
	6급 이하	담당과장	소장
○○○○센터	5급	부군수	-
	6급 이하, 지도사, 연구사	농업기술센터의 장	부군수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평정등급(점수) 결정 및 평정자 의견작성을 위해 평정자는 평정실시 이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정하되, 소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하며, 평정자는 평정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의령군 근무성적평정 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에 평정요소별 등급 및 합산점수, 소계점수, 총점을 기재하고 최종등급 및 점수 결정 및 종합평정 의견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담당자는 평정자가 평정을 하도록 요청하여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2020. 11. 1.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6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동안 의령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가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 등을 부당하게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있다.

특히 ○○소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자필이 아닌 한글워드로 일괄작성 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과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연필로 일괄 작성하여 평정자인 ○○과장의 서명은 받지도 않고 확인자인 부군수의 날인은 받는 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령군 전체가 관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평정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3. 근무성적평정 부당 평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평정자는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평정·직무수행능력평정 등)이 완료되면, 평정한 등급(점수)을 확인하고, 평정자와 함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급별 등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평정자가 평정한 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평정·직무수행능력평정 등)을 근거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서열을 정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그런데도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국 ○○과 6급 이하(지도사, 연구사 포함) 32명에 대해 평정자인 ○○과장은 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종합평정의견)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날인)도 없음에도 확인자인 ○○국장의 날인은 되어 있는바 이는 ○○국장이 직접 서류를 보고 날인한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자가 ○○국장의 도장을 받아 부당하게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평정자인 ○○과장이 실제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무담당자가 작성한 과내 서열명부만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였고, 추후 근무성적평정서는 실무담당자가 보완하려 하였으나 다른 업무추진에 바빠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 결과 ○○과 6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과 실무담당자가 작성한 평정단위별(○○국) 서열명부를 확인자인 ○○국장은 이를

확정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적정하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기간의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의 ○○ ○급 8명, ○○ ○급 3명, ○○ ○급 6명, ○○ ○급 5명은 평정자인 ○○과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 내 서열을 정할 수 없고, ○○국 내 해당 직렬의 직급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도 작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관 내 최종서열도 정할 수가 없어 결국은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과 내 서열명부를 근거로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절차적으로 볼 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정,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최종서열 등도 그 효력에 하자가 있고,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당시 평정자인 ○○과장이 과내 서열과 점수를 확인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서열을 결정하였으므로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2)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의령군 ○○과는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자가 부군수인 ○○○○○○○○○단장 등 ○급 20명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서를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고 공란인 상태인데 부군수 날인이 되어 있고, ○○○○국장이 평정자인 ○○과장 등 2명은 국장이 평정을 하였으나 국장의 서명(날인)은 없는 반면 확인자인 부군수의 날인은 되어 있는바 실제 평정자인 부군수 및 국장은 ○급 이상 근무성적평정서 평정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과 실무담당자가 평정점, 종합평정의견 등을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 날인만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업무를 처리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등을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감독책임자 ○○과 ○○○○○○ ○○○(현 ○○면), 실무담당자 ○○과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훈계, 주의)
- ② 의령군은 부서 전반에 걸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를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③ 또한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경상남도과 같이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사설법인묘지(○○공원묘원) 및 산지 관리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공원묘원의 부지는 1997. 8. 18.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고시(제1997-255호)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1999. 2. 13. 의령군수로부터 [표 1]과 같이 사설(법인)묘지 설치가 허가되었다.

[표 1] 사설(법인)묘지 ○○공원묘원 현황

허가명	허가자	수허가자 (설치자)	허가 일자	허가위치	허가 면적(m ²)	주요 허가내용
사설공원 묘지(법인)	의령군수 (○○○○과)	재단법인 ○○공원묘원 (대표자 ○○○)	'99. 2.13.	의령군 ○○면 ○○리 산○○○, 산○○○	242,892	○ 시설개요 - 묘역공원, 녹지, 주차장,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예정기수 : 10,000기 - 2023년 1월 기준 : 1,513기 (묘지 767기, 봉안 746기)

[출처 : 의령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09. 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의령군고시(제2009-44호)로 의령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되어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공동묘지)로 결정되었다.

이후 사설(법인)묘지 설치 허가의 주무부서인 의령군 ○○○○과에서는 조성중인 ○○공원묘원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의령군 ○○○○과에서는 공원묘원 구역에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불법행위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에서는 위 인·허가 및 [표 2]와 같이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 구역을 관리해 오던중, 2022. 5월경 ○○공원묘원 내 폐기물 적치(성토) 사실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2023. 2. 24. 부터 2023. 4. 30. 까지 의령군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받았으며, 2023. 6. 21. 감사일 현재 의령군 ○○과에서는 ○○묘원구역내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 [별첨]과 같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중인 상태이다.

[표 2] ○○공원묘원 설치 등 관련 경위

일자	인·허가 등 행정행위	내용
'97. 8.18.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도)	·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
'99. 2.13.	사설(법인)묘지 설치 허가(○○○○과)	· 242,892㎡ / 허가상세 : [표 1] 참고 · 허가조건 : [표 3] 참고
'99. 4.28.	○○공원묘원 실시설계 승인(○○○○과)	· 승인조건 :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것 등
'01. 2. 2.	산림형질변경 허가(○○○○과)	· 형질변경목적 : 사설공원묘지조성 242,892㎡ · 허가기간 : '01.2.2. ~ '10.12.31.
'01. ~ '06.	건축허가	· 묘지관련시설 : 관리동 등 3동 연면적 1,686㎡
'10.12.31.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만료	·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실효
'18. 6.29.	토석채취허가 변경	· ○○공원묘원 구역 침범 - 토석채취허가지는 ○○공원 묘원 허가구역에 연접한 별도 사업장임(주식회사 ○○○○)
'22. 3.22.	산지 복구설계승인(○○○○과)	· 복구면적 : 237,273㎡ - 복구 189,228㎡, 원형보존 48,045㎡
'22. 4.11.	산지 복구준공검사(○○○○과)	· 공사 감리 및 준공보고 - (주) ○○, ○○○○○○○○ ○○○○(○)
'22. 5월경	폐기물 적치 사건 발생	· 순환 토사·골재 29,195㎡ (25톤 덤프 1,717대분) · 행위자 :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22. 6.29.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 이첩	· 낙동강 환경감시단에서 확인 요청→○○과
'22. 6.30. '23. 6. 7.	토양오염조사, 원상복구 명령 등	· '23. 6. 7. 폐기물 반출 자진 착수(행위자)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설법인묘지 허가지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장사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르면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舊 「장사법(1998.1.1.)」 제8조(사설묘지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규칙」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 2. 13. 의령군이 재단법인 ○○공원묘원에 교부한 사설묘지 설치 허가문서에 따르면 허가조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허가증은 준공검사 후 교부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표 3]과 같이 허가 조건에는 “분묘²⁾는 묘지조성 완료 후 설치”, “사업시행에 따른 감리 실시” 등 주요 의무이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공원묘원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 조건

허가조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묘지설치허가로는 분묘 설치 불가, 분묘는 묘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 설치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행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에 의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물막이공 설치, 사면 안전대책 등 방지대책을 수립시행, 사업장내 안전관리에 철저 - 관리실, 휴게실, 주차장, 기타 필수 부대시설은 최단시일내 설치하여야 함 - 묘역조성에 따른 과다한 절·성토 억제 - 공사시행으로 인해 임야 등 훼손시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하고 환경오염등 발생 시 재단에서 책임해소 - 사업시행에 따른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실시, 준공계 제출시 감리조서 첨부

[출처 : 의령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 1) 舊 「장사법 시행령(1997.9.30.)」 제5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이라 함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말함
- 2)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

또한 「장사법」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조성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묘지의 설치자·조성자·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봉안 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장사법」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항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장사법 시행규칙」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설묘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묘지·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장사법」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에 따르면 군수는 다음 각 호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사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르면 군수는 사설묘지 설치·조성자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장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법인묘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봉안 등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4)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장사법」 제39조(벌칙)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벌칙)에 따르면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사설법인묘지 허가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에 따라 부지조성 등을 완료한 후 분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공사 등) 및 운영상황, 관리금 적립 등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필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령군 ○○○○과에서는 산지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복구명령 등 필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분묘설치 허가조건 등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1999. 2. 13.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공원묘원의 부지조성 등이 2023. 6. 21. 감사일 현재 전체 추정 공정률 30%로서 묘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 등)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분묘 1,513기(묘지, 봉안)를 설치하여 운영중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01. 2. 12. 재단법인 ○○공원묘원으로부터 의령군 ○○○○과에 제출된 조성공사 착공서류에 따르면 총공사면적 242,892㎡을 5차로 구분하여 시행계획하고 1차분의 시행면적은 54,154㎡로 준공예정일은 2003. 2. 12.로 되어 있었으나, 착공계 제출 이후 1차분 조성부지의 완료(준공)에 따른 허가증이 교부된 사실이 없고, 2차분 이후의 착공 및 준공과 관련된 문서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등 ○○공원묘원 부지조성에 관하여 허가자로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의령군 ○○○○과의 서류 부존재 사유로 당시 차수별 구분 시행 계획 도면과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조성된 상태가 당시 착공승인 받은 구분계획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2. 9월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의령군에 제출한 1차분 준공 통보 서류⁵⁾에 따르면 당초 1차분 착공계획에 의한 계획면적(54,154㎡)보다 작은 규모인 15,133㎡를 묘지 및 도로부지로 일부 조성하여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1차분 일부 조성 후 2003. 1. 15. 최초로 분묘⁶⁾를 설치하고, 묘지를 조금씩 확대하여 현재까지 차수별 구분 없이 무계획 산발적으로 묘지를 확대 조성(47,000㎡정도)하면서 분묘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묘지구역 변경허가 미조치 등 관리·감독 부적정

의령군 ○○○○과에서는 2018. 6. 29.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이 연접 토석채취 허가 현장에 의해 8,650㎡ 침범되어 당초 허가 받은 계획 면적이 토석채취로 훼손된 상태임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업 구역 조정(변경허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 내 묘지조성부지 및 기반시설(내부도로 등)이 당초 허가된 사업계획과 시설별 위치, 면적 등이 다르게 설치·조성되고 있음에도 시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감사기간(23. 6. 13. ~23. 6. 21.) 이후 비공식 입수된 ○○공원묘원 측 보관 자료(의령군 ○○○○과 미보관 자료)

6) ○○공원묘원 묘적부 최초 신고번호 1번 장례일

또한 의령군 ○○○○과에서는 1999. 2. 13.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 조건으로 수허가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따른 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수허가자인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2023. 6. 21. 감사일 현재 조성공사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지 않고 묘지 조성공사(내부 도로개설, 토사반입 등)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 소극 처리

(가) 묘지구역 내 폐기물 성토

의령군 ○○○○과에서는 2022. 5월 경 ○○공원묘원 내 무단 적치(성토)된 폐기물 사건(순환 토사·골재 29,195m³, 25톤 덤프 1,717대분)과 관련하여 의령군 환경과의 폐기물반입 업체(○○○○○○)에 대한 복구명령이나 오염방지 조치 이행과는 별개로, 재단법인 ○○공원묘원의 행위에 대해 「장사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통제하거나 장사시설 사용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하여야 함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묘지허가구역 외 묘지 및 분묘 무단 설치

의령군 ○○○○과, ○○○○과에서는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사설법인묘지 허가구역을 벗어나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불법사항에 대하여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8. 2월 ○○○○과에서 작성된 비전자 내부 문건에 따르면 무단 묘지조성 행위자인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묘원구역 변경을 요청 하자, 2차례('18. 2. 6., '18. 2. 9.) 관련부서(○○○○과, ○○○○과 등) 검토회의를 하는 등 당시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폐기물 불법 성토(적치) 사건이 불거지면서 의령군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따라 2023. 5. 31. 재조사⁷⁾를 검토한 후 2023. 6. 2. 사법처리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사법 처리를 위한 세부 행정 조치계획(훼손지 정밀조사, 피의자 심문 등)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미조치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2023년 현재는 2018. 2월 불법행위 인지시점 당시 보다 불법 묘지가 확대 조성 되어 산림이 더욱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사설법인묘지 관리·운영 상황 관리 소홀

의령군 ○○○○과에서는 사설법인묘지 설치·조성·관리자인 재단법인 ○○ 공원묘원로부터 매장, 봉안, 시설현황 등 관리운영 상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 받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표 4]와 같이 법인의 보고의무 이행 첫해인 2015년부터 4개년분('15, '17, '18, '20)에 대해 보고가 누락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표 4] 연도별 관리·운영 상황보고 제출 현황

구분	2015년분	2016년분	2017년분	2018년분	2019년분	2020년분	2021년분	2022년분
제출여부	×	○	×	×	○	×	○	○

[출처 : 의령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제출받은 4개년분('16, '19, '21, '22) 각 년도 보고내용이 설치·조성년도, 묘지·봉안 가능구수가 실제 현황 및 허가내용과 맞지 않고 시설관리상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된 바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검사·시정을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의령군 ○○○○과-○○○○호(2023.6.2.) 출장복명서

- 출 장 자 : 5명(○○○○담당 1, ○○○○담당 2, ○○○○담당 2) / 일시 : 2023. 5. 31.
- 출장목적 :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훼손지 현지확인 / 출장배경 :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 사무조사
- 검토의견 : 「장사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조치

(5) 장사시설 적립금 관리 부적정

의령군 ○○○○과에서는 사설(법인)묘지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묘지·봉안시설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관련 기준에 맞게 적립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 장사시설 적립금은 11,131천 원으로, 충족 기준금액(묘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인 13,277천 원에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적립금은 유지·관리, 재해 대비 사용 용도로서 계좌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하나, 입·출금이 불가능한 정기예금계좌를 부적정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공원묘원의 산지복구 계획 수립 및 준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1항 및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이내에 군수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6호에 따르면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산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 수허가자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승인하여야 하고,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전용이 되지 않아 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지로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공원묘원의 산지전용허가가 2010. 12. 31.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지복구계획 수립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대상 산지에 대하여 기간 연장이나 산지전용 재허가 없이, 2022. 3. 22. 부적정하게 복구계획을 승인하고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장사법」에 의한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가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유지되어 묘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당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허가 부서인 ○○○○과와 협의없이 묘지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묘지설치 사업계획과 불일치한 상태로 복구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장사법」과 「산지관리법」 상의 행정관리가 상호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복구계획상 도로 등의 물량이 일부 시공되지 않았고, 계획상 원형보존지가 연접 토석채취허가로 훼손(8,650㎡)된 상태였음에도 걱정한 것으로 보고된 준공감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22. 4. 11. 부적정하게 복구공사를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원묘지 내 폐기물 적치사건과 관련하여,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는 묘지로 조성되지 않은 여전히 산지인 위치로서 폐기물적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2023. 4. 7. ○○○○과에서 작성한 내부 검토문건에 따르면 산지전용유무, 실제 사용현황 조건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위 폐기물 적치 사건의 위법사항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별첨] ○○공원묘원 폐기물관련 의령군 ○○과 조치 경과

일자	주요 조치	관련 내용
'22. 6.30.	현장확인	· 도시재생과, ○○○○과, ○○○○과 합동
'22. 7. 4.	토양오염검사 1차	· 결과회신('22. 7.29.) : 기준이내
'22. 8.22.	토양오염검사 2차	· 결과회신('22. 9.19.) : 기준초과(아연기준2.9배)
'22. 9. 6.	수사의뢰(○○과→의령경찰서)	· 경찰서 확인 시 폐기물 소량으로서 불법처리로 보기 어려워 수사 잠정 중단
'22.11.11.	원상복구명령(○○과→○○○○○○)	· 토양오염 기준 초과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2.12.30.	재수사의뢰(○○과→의령경찰서)	· 수사중
'23. 1. 4.	원상복구 조치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	· 심리결과('23. 2.28.) : 기각
'23. 3.17.	원상복구 조치명령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창원지법('23. 4. 7.) :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23. 4.20.	2차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조치(○○과)	· 덮개, 배수로, 저류조, 흡착분, 흡착포 설치 - 수질오염 모니터링(4회)
'23. 4.28.	자진 원상복구 이행 의사표시(○○○○○○)	· 의령경찰서, 환경부 반출 관련 질의 등
'23. 5. 5. ~ 5. 7.	집중호우로 폐기물 일부 유실	· 유실폐기물 처리명령(○○과→○○, ○○공원) - 스티로폼, 페타일, 페콘크리트 조각 등 약 4톤 수거
'23. 5.23.	오염방지시설 설치 요청(○○과→○○, ○○공원)	· 폐기물 전체 빗물 침투방지 덮개, 배수로 우회 재조정 등
'23. 6. 1.	원상복구 지시(○○과→○○○○○○)	· '23. 6. 2. 원상복구 세부 계획서 제출(○○) · '23. 6. 7. 폐기물 반출 착수

[출처 : 의령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감독책임자 ○○○○과 ○○○○○○○○ ○○○
(현 공로연수),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과 ○○○○○○○○ ○○○(현 ○○○○○과), 실무담당자 ○○○○과
○○○○○○○ ○○○(현 ○○면)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공원묘원 사설법인묘지
허가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현 ○○면, ○○○○○○○○○○),
○○○○과 ○○○○○○○○○○ ○○○(현 ○○면, ○○○○○○○○○○), ○○
○○○○과 ○○○○○○○○ ○○○(현 ○○과)과 「산지관리법」 제39조 등을
위반하여 ○○공원묘원의 산지복구 계획 수립 및 준공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 ○○○와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을 위반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 및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감독책임자 ○○○○과 ○○○○○○○○ ○○○
(현 ○○○과), ○○○○과 ○○○○○○○○ ○○○(현 ○○면),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실무담당자 ○○○○과 ○○
○○○○○○○ ○○○(현 ○○○과, ○○○○○○○○),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
제재 방안과 ○○공원묘원의 위법사항 해소 등 관리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지도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축의 개량, 가축 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축산과에서는 [표 1]과 같이 매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점검 계획을 전 시군에 통보하고 각 시·군별로 ‘월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말까지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경상남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점검 계획 알림 공문 내역

구 분	알림일자	내 용	점검결과 제출기한	비 고
계	4건			
1	2020. 1. 22.	2020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알림	2020. 11. 5.	
2	2021. 3. 2.	2021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알림	2021. 11. 4.	
3	2022. 2. 8.	2022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점검 계획 알림	2022. 11. 2.	
4	2023. 3. 3.	2023년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 계획 알림	2023. 11. 3.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하고 실시 결과를 경상남도 ○○○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적정 사육두수, 허가자의 준수사항, 축산업 관련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2020년 점검대상 시설 377개소 중 171개 점검, 2021년 점검대상 시설 378개소 중 143개 점검, 2022년 점검대상 시설 406개소 중 233개소 점검을 하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상남도 ○○○ 보고 시 매년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00% 이행하였고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표 2] 축산업 허가·등록시설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	실제 점검실적	점검실적 보고	점검 대상	실제 점검실적	점검실적 보고	점검 대상	실제 점검실적	점검실적 보고
점검률		45%	100%		38%	100%		57%	100%
총계	377	171	377	378	143	378	406	233	406
허가	295	163	295	319	128	319	347	223	347
등록	82	8	82	59	15	59	59	10	59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의령군 ○○과에서 제출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중 [표 3]과 같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5개 축사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3] 축산업 허가 사업장 중 ○○과에서 행정처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육종	위반사항	위반일시	비고
계		6개 축사				
1	○○○○ (○○○)	○○면 ○○리 ○○○-○	젖소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020. 11. 9.	
2	○ ○	○○면 ○○리 ○○○	한우	가축분뇨 공공공수역 유입	2021. 2. 15.	
3	○○○○○ (○○○)	○○면 ○○리 ○○○-○	돼지	가축분뇨 공공공수역 유입	2021. 8. 11.	
4	○○○○○ (○○○)	○○면 ○○리 ○○○-○	돼지	악취오염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	2022. 5. 9.	
5	○○○	○○면 ○○리 ○○○-○	한우	퇴비 방치	2023. 4. 10.	
6	○○○	○○면 ○○리 ○○○○	젖소	퇴비 방치	2023. 4. 2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2020년 경상남도 종합감사(2020. 10. 19.~10. 27.) 결과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받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실제 점검한 실적과 결과 보고한 실적이 상이하지 않도록” 현지조치(주의) 통보된 바 있으나 여전히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가축사육업 허가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제1항에 따르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축산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m²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처리한 사항과 준공처리 한 사항을 ○○○○○과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가 된 축산 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고 허가 기준에 맞게 축산업 허가를 하여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한 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5]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처리된 11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 대상 안내 등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무허가 축산업 농가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사육시설 면적이 50m²을 초과하는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사육업

[표 5] ○○과로부터 통보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구분	대표자	소재지	업종	면적(m ²)	배출시설 준공일	사육두수 (마리)	비고
계		11개 시설					
1	○○○	○○면 ○○리 ○○○	한우	308	'21. 1. 5.	26	
2	○○○	○○면 ○○리 ○○○-○	한우	192.5	'20. 9. 23.	16	
3	○○○	○○면 ○○리 ○○○-○	한우	158	'20. 6. 4.	14	
4	○○○	○○면 ○○리 ○○○-○	한우	225	'21. 1. 4.	19	
5	○○○	○○읍 ○○리 ○○○	한우	339.29	'21. 11. 8.	28	
6	○○○	○○면 ○○리 ○○○	한우	259.82	'20. 10. 30.	22	
7	○○○	○○면 ○○리 ○○○-○	한우	139.75	'21. 1. 29.	18	
8	○○○	○○면 ○○리 산○○	염소	372	'20. 9. 24.	370	
9	○○○	○○면 ○○리 ○○○○-○	한우	986	'20. 3. 4.	82	
10	○○○	○○면 ○○리 ○○○-○	한우	1420	'21. 6. 1.	118	
11	○○○	○○면 ○○리 ○○	한우	650	'21. 6. 1	54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6]과 같이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준공 처리된 시설 중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가축사육 농가 2개소가 같은 부서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소, 돼지 등이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육업 무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6]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가축사육업 현황

구분	대표자	소재지	업종	면적(m ²)	배출시설 준공일	실제사육 두수(마리)	비고
계		2개 시설					
1	○○○	○○면 ○○리 산○○-○	한우	203	'17. 4. 28.	10	
2	○○○	○○면 ○○리 ○○○-○	한우	182	'18. 7. 2.	1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2023년 기준 의령군에 등록된 가축사육 농가는 426개인 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620개, 축산물이력제 등록 농가는 613개로서 가축사육 관련 인허가 수가 약 200여 개가 차이가 나며 현실적으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보다 많아야 함에도 적게 관리되고 있다.

4. 가축사육업 보수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축산법」 제56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²⁾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7]과 같이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 농장과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된 ○○○ 목장이 축산업 관련 교육 대상에 누락되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2022년 의령군 ○○○○○과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내역에는 2020년과 2021년 ○○○ 농장이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로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22년 지도점검에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하였다고 지도점검표에 작성하였다.

[표 7]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 축산업 허가 농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교육 이수여부
계		2개 농가			
1	○○○농장	○○○	○○면 ○○리 ○○○	'12. 2. 27.	미이수
2	○○○ 농장	○○○	○○면 ○○○로 ○○○-○○	'08. 1. 3.	'13. 6. 26. 이후 미이수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허가[1차(100만 원), 2차(200만 원), 3차(400만 원)], 등록 [1차(50만 원), 2차(100만 원), 3차(200만 원)]

아울러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 농가에 대하여는 2020년 경상남도 종합감사(2020. 10. 19. ~ 10. 27.) 결과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 농가 행정처분 미흡’으로 지적받아 현지조치(시정) 통보된 바 있으나 여전히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 소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량 과다, 업무미숙, 실무경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이며 앞으로는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실무담당자와 실무 책임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본 감사자의 판단 근거는 의령군에 허가·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 농가는 2023년 기준 426개 농가인 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620개, 축산물이력제 등록 농가는 613개로서 가축사육 관련 인허가 수가 약 200여 개가 차이가 나며 현실적으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³⁾보다 많아야 함에도 적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과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농축산유통과는 단 한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읍·면 직원에게 축산업 지도점검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점검을 하게 하여 읍·면에서는 형식적인 점검만 실행하였고, 점검표에 축산업 농장주의 확인 사인이 없는 점검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3년치 점검표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는 농가가 확인됨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과에서는 단순히

3) 축산업 허가 규모는 사육면적 50㎡, 등록 규모는 사육면적 10㎡ 이상인 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규모가 돼지 50㎡, 소 100㎡ 이상으로 소 사육시설의 경우 99㎡ 이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

점검표 개수만 확인하고 100% 점검을 이행했다고 도에 보고를 한 사안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는 AI, 구제역 등을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가축사육업 허가권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건축신고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사항이 관련 부서에서 통보되면 ○○○○○과는 해당 농가에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임을 안내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하여 의령군에 약 190여 개의 무허가 가축사육업 농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감독책임자의 경우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가 가축사육업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축산법」 제28조 등을 위반하여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과 ○○○○○○○ ○○○(현 ○○○○○과)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축산법」 제22조 등을 위반하여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업무 및 축산업 관련 교육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현 ○○○면, ○○○○○○○),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의 가축사육업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과 ○○○○○○○ ○○○(현 ○○○○○과), ○○○○○과 ○○○○○○○ ○○○(현 ○○○○○과),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④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무허가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⑤ 축산업 관련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및 시정 요구

제 목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등록·관리와 축산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따르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따르면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시설 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1,000천 원, 2차 2,000천 원, 3차 5,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2023년 관내에 등록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211대에 대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보수교육 기간이 4년을 경과한 가축운반 차량○○○수○○○○ 소유자인 ○○○ 등 23명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3,000천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차량유형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등록일자	교육 수료일	4년 경과 보수교육 기한	미부과 과태료	비고
계			23명				23,000	
1	가축운반	○○○○ ○○○○	○○○	2020. 1. 6.	-	-	1,000	
2	퇴비운반	○○○○○ ○○	○○○○ (○○○)	2018. 9. 12	2018. 9. 12	2022. 9. 12	1,000	
3	사료운반	○○○○○ ○○	○○○	2018. 6. 28.	2018. 9. 13	2022. 9. 13.	1,000	
4	사료운반	○○○○○ ○○○	○○○	2018. 6.19.	2018. 8. 24	2022. 8. 24.	1,000	

연번	차량유형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등록일자	교육 수료일	4년 경과 보수교육 기한	미부과 과태료	비고
5	가축운반	○○○○○ ○○	○○○	2017.12.7.	2018.9.13.	2022.9.13.	1,000	
6	진료.예방접종	○○○○○ ○○	○○○○○○○ (○○○)	2017.6.29.	2017.6.27.	2021.6.27.	1,000	
7	가축운반	○○○○○ ○○	○○○	2017.4.3.	2017.8.30.	2021.8.30.	1,000	
8	알운반	○○○○○ ○○	○○○	2016.12.13.	2014.9.26.	2018.9.26.	1,000	
9	가축운반	○○○○○ ○○	○○○	2016.9.20.	2018.9.13.	2022.9.13.	1,000	
10	퇴비운반	○○○○○ ○○	○○○○ (○○○)	2015.5.12.	2017.8.29.	2021.8.29.	1,000	
11	가축운반	○○○○○ ○○	○○○	2014.12.1.	2018.11.17.	2022.11.17.	1,000	
12	가축운반	○○○○○ ○○	○○○	2014.3.26.	2017.8.30.	2021.8.30.	1,000	
13	가축운반	○○○○○ ○○	○○○○○○○ ○○○○○○○ (○○○)	2013.8.8.	2018.11.17.	2022.11.17.	1,000	
14	가축운반	○○○○○ ○○	○○○	2013.7.26.	2018.9.12.	2022.9.12.	1,000	
15	가축운반	○○○○○ ○○	○○○	2013.1.31.	2017.8.30.	2021.8.30.	1,000	
16	가축운반	○○○○○ ○○	○○○	2021.8.26.	2018.9.13.	2022.9.13.	1,000	
17	가축운반	○○○○○ ○○	○○○	2012.11.30.	-	-	1,000	
18	시료채취,방역	○○○○○ ○○○	○○○○ (○○○)	2012.11.22.	-	-	1,000	
19	시료채취,방역	○○○○○ ○○○	○○○○ (○○○)	2012.11.22.	-	-	1,000	
20	시료채취,방역	○○○○○ ○○○	○○○○ (○○○)	2012.11.22.	-	-	1,000	
21	시료채취,방역	○○○○○ ○○○	○○○○ (○○○)	2012.11.22.	-	-	1,000	
22	가축운반	○○○○○ ○○	○○○○ (○○○)	2012.11.22.	2017.8.30.	2021.8.30.	1,000	
23	컨설팅	○○○○○ ○○	○○○○ (○○○)	2012.11.22.	2017.8.30.	2021.8.30.	1,00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등록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3항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등)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 사항을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0천 원, 2차 2,000천 원, 3차 5,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황을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축산 농가가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이번 감사기간(2023. 6. 13.~6. 21.) 중 의령군 ○○○○담당관에서 제출한 등록외국인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축산농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8명이 [표 2]와 같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현지 실태조사를 2020. 11. 1. 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7,0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축산농가 고용신고 미이행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성명	국적	성별	축산농가	등록일	미부과 과태료	비고
계	28명					7,000	
1	○○○○○○○○	○○	○	○○농장	2023. 4. 28.	1,000	
2	○○○○○○○○	○○○○	○		2022. 1. 5.		
3	○○○○○○○○	○○	○		2023. 4. 28.		
4	○○○○○○○○	○○○○	○		2019. 7. 16.		
5	○○○○○○○○	○○○○	○		2022. 4. 13.		
6	○○○○○○○○	○○	○	○○○ 농장	2020. 1. 17.	1,000	
7	○○○○○○○○	○○	○	○○○ 농장	2013. 6. 27.	1,000	
8	○○○○○○○○	○○	○	○○농장	2013. 6. 27.		
9	○○○○○○○○	○○○	○		2018. 4. 23.		
10	○○○○○○○○	○○	○		2023. 5. 3.		
11	○○○○○○○○	○○	○		2022. 7. 4.		
12	○○○○○○○○	○○	○		2017. 6. 9.		
13	○○○○○○○○	○○	○	○○농장	2015. 6. 11.	1,000	
14	○○○○○○○○	○○	○	○○○○	2022. 6. 23.	1,000	
15	○○○○○○○○	○○	○		2019. 4. 26.		
16	○○○○○○○○	○○	○		2022. 6. 23.		

연번	성명	국적	성별	축산농가	등록일	미부과 과태료	비고
17	○○○○○○○○	○○	○		2017. 2. 16.		
18	○○○○○○○○	○○	○		2022. 7. 20.		
19	○○○○○○○○	○○	○		2019. 12. 17.		
20	○○○○○○○○	○○	○		2019. 4. 19.		
21	○○○○○○○○	○○	○		2019. 6. 4.		
22	○○○○○○○○	○○	○		2022. 7. 20.		
23	○○○○○○○○	○○○	○	○○○축산	2023. 3. 30.	1,000	
24	○○○○○○○○	○○	○		2023. 3. 30.		
25	○○○○○○○○	○○○	○		2023. 3. 30.		
26	○○○○○○○○	○○○○	○	○○○○○농장	2022. 12. 22.	1,000	
27	○○○○○○○○	○○	○		2023. 5. 19.		
28	○○○○○○○○	○○	○		2023. 5. 19.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단순히 도에서 제공하는 현황 자료만 관리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다

[표 3] 경상남도 및 농림부 외국인 현황 조사 요청 내역

연번	제 목	일 시	기관명	비고
계	8건			
1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 조사	2020. 11. 23.	경상남도 ○○○○과	
2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2021. 1. 26.	경상남도 ○○○○과	
3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2021. 7. 14.	경상남도 ○○○○과	
4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4. 7.	경상남도 ○○○○과	
5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6. 25.	경상남도 ○○○○과	
6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관계자 정보 입력 철거 요청	2022. 11. 23.	농림축산검역본부	
7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12. 1.	경상남도 ○○○○과	
8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3. 4. 3.	경상남도 ○○○○과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제17조의3 등을 위반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업무 및 축산농가 외국인 등록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20조의6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안한 축산농가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및 시정 요구

제 목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표 1]과 같이 64개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2023년 기준 의령군 축산물 관련 영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64	4	53	2	3	1	1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축산물 관련 영업장 출입·검사 실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검사 기록부에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생관리기준, 축산물의 검사, 품목제조보고, 건강진단, 위생교육, 표시의 기준 등 11개의 중점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에 따르면 [표 2]과 같이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축산물 영업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 원)

연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액			비고
			1차	2차	3차	
1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제8조	1,000	1,000	1,000	
2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제8조	300	600	900	
3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5조	200	350	500	
4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 종업원 수(5인) 및 대상자 50% 기준 차등 부과	제29조	20~50	40~100	60~150	
5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제29조	20	40	60	
6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대상자 50% 기준 차등 부과	제30조	10~20	20~40	30~60	
7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제30조	20	40	60	
8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30	60	90	

[출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4] 발췌]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3]과 같이 농회사법인○○○○○○ 등 4개의 축산물 가공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축산물 가공업 출입·검사 미실시 현황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지도점검 실시 내역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개 사업장					
1	농업회사법인 ○○○○○○	○○○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	○○○○○○○	○○○	미실시	미실시	12. 15.	
3	○○○○○	○○○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4	○○○○○	○○○	미실시	9. 6.	8. 29.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3항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영업자¹⁾ 및 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4]와 같이 2020년 7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5개소 등 21개의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8,4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4]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장명	업 종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내역			미부과 과태료		비고
				'20	'21	'22	영업자	종업원	
계	21개소			7개소	11개소	15개소	4,200	4,200	
1	○○○○○○○○	식육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200	200	
2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3	○○○○	식용란수집판매업	○○○	미이수			200	200	
4	○○○○	식용란수집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200	200	
5	○○○○	축산물가공업	○○○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200	200	
6	○○○○	식육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200	200	
7	○○○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8	○○○○○	식육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200	200	
9	○○○○○○○	식육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200	200	
10	○○○○○○○	식육판매업	○○○		미이수	미이수	200	200	
11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2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3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4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5	○○○○○○○ ○○○○○○	축산물가공업	○○○		미이수	미이수	200	200	
16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7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미이수	200	200	
18	○○○○	식용란수집판매업	○○○			미이수	200	200	
19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20	○○○○	식용란수집판매업	○○○			미이수	200	200	
21	○○○○	식육판매업	○○○			미이수	200	20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영업장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따르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표 5]와 같이 ○○○○○○ 등 3개 사업장이 생산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9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5] 축산물 가공업 등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업소명	영업자	위반사항	미부과 과태료	비고
계	3개소			900	
1	○○○○○○○	○○○	2022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300	
2	○○○○○	○○○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300	
3	○○○○ ○○○ ○○○○○	○○○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30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가 해당 업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무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축산물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않은 **실무책임자** ○○○○○과 ○○○○○○ ○○○, ○○○○○과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축산물 관련 위생교육 및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 및 주의 요구

제 목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상태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및 급수관에 대한 세척과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5층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1) 대통령령 :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2천㎡ 이상인 음식점, 2천㎡ 이상인 학원,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천㎡ 이상인 업무시설,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객석수 1천석 이상 공연장,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등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따르면 대형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에 청소용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²⁾이 초과되지 않은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를 검사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³⁾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제83조(벌칙) 제6호에 따르면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5개 층 이상의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조치와 수질검사를 하는지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3. 6. 13.~6. 21.) 중 실태조사를 통해 [별표]와 같이 2022년 기준 의령군에서 지도·점검 해야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52개소 중 저수조에 대한 위생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미이행 건축물 36개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미이행 37개소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규모이상 저수조 관리대상을 25개소만 제출하였고, 해당 시설의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저수조 내부 청소 등 위생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잔류염소(L당 0.1mg 이상 4.0mg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0.5NTU 이하)
3) 수질검사 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3. 대형건축물 급수관 일반검사 등 이행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물 등⁴⁾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관에 대한 일반검사 및 세척조치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학교 등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일반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일반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제83조(벌칙) 제6호에 따르면 급수관에 대한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연면적 5천㎡ 이상의 학교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급수관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이번 감사기간(2023. 6. 13.~6. 21.) 중 실태조사를 통해 [표]와 같이 의령군에서 지도·점검 해야하는 급수관 관리대상 시설 15개소 중 10개소가 급수관 일반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연면적 5천㎡ 이상(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6만㎡ 이상(대규모점포, 5개층 이상인 아파트, 일반업무시설 등),

더군다나 의령군 ○○○○과에서는 급수관 관리대상 건축물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어 학생 등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급수관 일반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

연 번	시설명	소재지	용도	연면적 (㎡)	사용 승인일	급수관 일반검사 이행년도	비고
계	15개소						10개소
1	○○○○ ○○○○○○	○○면 ○○로 ○○	○○	9,001	1997. 10. 10	2020	위반
2	○○○○○○○	○○읍 ○○로○길 ○	○○	8,903	1997. 9. 5.	2020	위반
3	○○○○○○○	○○읍 ○○리 ○○○○	○○	5,104	2009. 10. 9.	2020	위반
4	○○○○○○○	○○면 ○○로 ○○○○	○○	9,413	1966. 6. 11.	2021	
5	○○○○ ○○○○○○	○○면 ○○로 ○○○-○○	○○○○	8,525	1998. 11. 4.	미실시	위반
6	○○○○○○○	○○읍 ○○리 ○○○○	○○○○	5,561	1998. 11. 4.	미실시	위반
7	○○○○○○○○ ○○○	○○면 ○○리 ○○○-○	○○○○	9,464	1995. 1. 28.	미실시	위반
8	○○○○○○○	○○면 ○○리 ○○○○	○○○○○	7,641	1996. 7. 26.	미실시	위반
9	○○○○ ○○○○	○○읍 ○○리 ○○○-○	○○○○	7,152	2000. 3. 27.	미실시	위반
10	○○○○○○○○	○○읍 ○○로○길 ○○	○○○	7,300	2007. 4. 9.	2020	위반
11	○○○○	○○읍 ○○리 ○○○-○	○○○	10,189	2007. 4. 9.	2021	
12	○○○○ ○○○○○○	○○읍 ○○리 ○○○○	○○○○	10,538	2010. 12. 7.	미실시	위반
13	○○○○ ○○○○○○	○○면 ○○○로 ○○○-○○	○○○○	7,913	2018. 3. 9.	5년 미경과	
14	○○○○○	○○읍 ○○리 ○○○○	○○○	5층 이상	2018. 7. 20.		
15	○○○○ ○○○○○○	○○읍 ○○로 ○○	○○○	5층 이상	2020. 2. 4.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의령군 저수조 관리대상 건축물 현황(2022년 기준)

연 번	시 설 명	소재지	용도	연면적 (㎡)	수질검사 실시 (2022년)	저수조 청소이행 준수여부
계	52개소				36개소 미이행	37개소 미준수
1	○○○○○○○○○○○○	○○면 ○○리 ○○○○	○○○○	9,464	미이행	미준수
2	○○○○○○○	○○면 ○○리 ○○○	○○○○	9,413	이행	미준수
3	○○○○○○○	○○읍 ○○리 ○○○	○○○○	5,561	미이행	미준수
4	○○○○○○○○○○○○	○○면 ○○리 ○○○○	○○○○	9,001	이행	미준수
5	○○○○○	○○읍 ○○리 ○○○○	○○○○○○	10,189	미이행	준수
6	○○○○○○○	○○읍 ○○리 ○○○○	○○○○	7,152	이행	미준수
7	○○○○○ ○○○○○	○○면 ○○리 산 ○○○	○○○○	7,917	이행	준수
8	○○○○○○○○○○	○○면 ○○리 ○○○○	○○○○	4,183	이행	미준수
9	○○○○○○○	○○면 ○○리 ○○○○	○○○○	4,710	이행	미준수
10	○○○○○○○	○○면 ○○리 ○○○	○○○○○○	7,641	미이행	미준수
11	○○○○○○○	○○읍 ○○리 ○○○○	○○○○	4,259	이행	준수
12	○○○○○○○○○○	○○읍 ○○리 ○○○○	○○○○	3,367	미이행	준수
13	(주)○○○	○○읍 ○○리 ○○○○	○○○○	16,644	이행	준수
14	○○ ○○○ ○○○○○	○○면 ○○리 ○○○○	○○○○	8,525	미이행	준수
15	○○○ ○○○	○○읍 ○○리 ○○○	○○○○	3,663	이행	준수
16	○○○○○○○○○○○○	○○읍 ○○리 ○○○	○○○○	3,458	미이행	준수
17	○○○○○○○	○○읍 ○○리 ○○○○	○○○○	3,414	미이행	미준수
18	○○○○○○○○○	○○읍 ○○리 ○○○	○○○○	3,595	미이행	미준수
19	○○○○○○○○○○○○	○○읍 ○○리 ○○○	○○○○	10,538	미이행	준수
20	○○○-○○○○○	○○읍 ○○리 ○○○○	○○○○	8,903	이행	준수
21	○○○○○○○○○○○○	○○면 ○○리 ○○	○○○○○○	3,363	이행	미준수
22	○○○○○	○○읍 ○○리 ○○○○	○○○○	5,948	미이행	미준수
23	○○○○○○○○○○	○○면 ○○리 ○○○○	○○○○○○	3,497	미이행	미준수
24	○○○○○○○	○○읍 ○○리 ○○○○	○○○○	4,634	미이행	미준수
25	○○○○○○○	○○면 ○○리 ○○○○	○○○○	4,222	미이행	미준수
26	○○○○○○○○○○	○○면 ○○리 ○○○	○○○○	3,631	미이행	미준수
27	○○○○○○○○○○	○○읍 ○○리 ○○○○	○○○○	3,381	미이행	미준수
28	○○○○○○○○○	○○면 ○○리 ○○○○	○○○○	3,364	미이행	미준수
29	○○○○○○○	○○읍 ○○리 ○○○	○○○○	3,301	미이행	미준수

연 번	시 설 명	소재지	용도	연면적 (㎡)	수질검사 실시 (2022년)	저수조 청소이행 준수여부
30	○○○○○○	○○면 ○○리 ○○○○	○○○○	3,141	미이행	미준수
31	○○○○○○	○○읍 ○○리 ○○○○	○○○○	5,103	이행	준수
32	○○○○	○○읍 ○리 ○○○	○○○○	2,226	미이행	미준수
33	○○○○○	○○읍 ○○리 ○○○○	○○○○	5층 이상	이행	미준수
34	○○○○ ○○○○○	○○읍 ○○리 ○○○○	○○○○	5층 이상	이행	미준수
35	○○○○○○○○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36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37	○○○○○	○○읍 ○○리 ○○○○	○○○○	5층 이상	이행	미준수
38	○○○○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준수
39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준수
40	○○○○○○○○	○○면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1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2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3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4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5	○○○○○	○○면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6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47	○○○○○	○○읍 ○○리 ○○○○	○○○○	5층 이상	이행	미준수
48	○○○○	○○읍 ○○리 ○○○○외	○○○○	5층 이상	미이행	준수
49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50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51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미준수
52	○○○○	○○읍 ○○리 ○○○	○○○○	5층 이상	미이행	준수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앞으로는 저수조 및 급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수도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및 급수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과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담당자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사업소 ○○○○○○ ○○○(현 ○○○면, ○○○○○○○), ○○○○과 ○○○○○○ ○○○(현 ○○○○과), ○○○○과 ○○○○○○ ○○○(현 ○○○과), ○○○○과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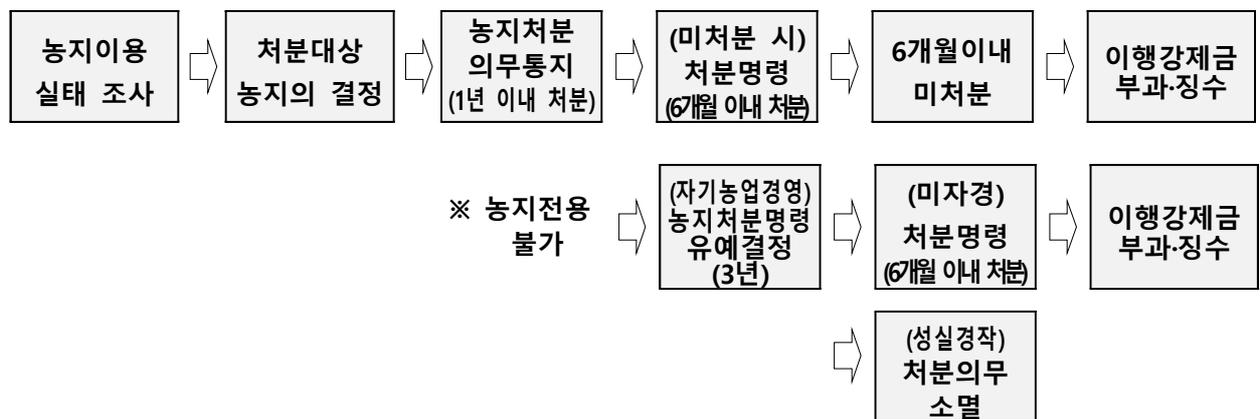
경징계·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 전용 허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등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¹⁾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그림]과 같이 하고 있다.

[그림]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처리단계



[출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재구성]

1)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등을 제외하고 매년 9.1.~11.30.(90일간) 조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음

2.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의 전용허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VI.(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르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이 처분의무기간 동안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을 때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처분의무대상 농지²⁾로 전용을 할 수 없는 농지임에도 [표 1]의 ○○읍 ○○리 ○○○번지(전, 660㎡, 소유주 ○○○)에 대한 농지전용(단독주택, 660㎡) 허가(협의) 통보를 2021. 12. 21. ○○○○과로부터 받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농지처분의무대상 농지전용허가 현황

신청인	위 치	목 적	신청면적 (㎡)	허가내용		사업기간	비고
				종류	면적(㎡)		
○○○	○○읍 ○○리 328	단독주택 건립	660	토지형질 변경	660	'21.12.21.~ '23.12.12.	전용취소 (22.12.26.)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처분의무기간 : 2021. 4. 5. ~ 2022. 4. 4.

그결과 위 농지처분의무대상 농지인 ○○읍 ○○리 ○○○번지(660㎡, 소유주 ○○○)에 대하여 적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면, 2022. 5. 24.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타 농지와 같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통지해야 하지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상태로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시까지 처분명령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2. 12. 26. 농지전용이 취소되었음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농지가 처분되고 있지 않는 등 처분 의무부과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처분명령 농지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고, 처분의무 기간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처분유예기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며,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적발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통지를 한 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 ○○리 ○○○○-○번지 등 2필지에 대해 처분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표 2]와 같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9,836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2018 ~ 2022년 농지이용실태결과 이행강제금 미부과 내역

구 분	성 명	토지소재지	면적 (㎡)	이행강제금 미부과현황(원)		
				소계	2022년	2023년
계	2명	2필지	1,299	9,836,760	4,589,160	5,247,600
1	○○○	○○면 ○○리 ○○○-○○	684	5,790,060	2,694,960	3,095,100
2	○○○	○○면 ○○리 ○○○○-○	615	4,046,700	1,894,200	2,152,50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3]과 같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면 ○○리 ○○○번지 등 12필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9년 부과 이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고, 2023년도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6,276천 원에 달한다.

[표 3] 2019년 이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 원)

구분	성 명	토지소재지	면적 (m ²)	연도별 미부과현황(원단위 절사)				
				소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명	12필지	16,006	88,670,140	18,702,950	21,428,860	22,262,320	26,276,010
1	○○○	○○면 ○○리 ○○○	902	3,094,300	660,260	739,640	790,150	904,250
		○○면 ○○리 ○○○	975	3,163,380	705,900	791,700	766,350	899,430
		○○면 ○○리 ○○○	1,560	5,187,780	1,141,920	1,279,200	1,272,960	1,493,700
		○○면 ○○리 ○○○	2,734	8,796,630	1,859,120	2,088,770	2,230,940	2,617,800
		○○면 ○○리 ○○○	1,785	5,534,390	1,170,960	1,313,760	1,403,010	1,646,660
		○○면 ○○리 ○○○	1,808	6,202,330	1,323,450	1,482,560	1,583,800	1,812,520
2	○○○	○○면 ○○리 ○○○-○	2,086	18,803,200	3,909,160	4,422,320	4,839,520	5,632,200
3	○○○	○○면 ○○리 ○○○	1,489	18,552,940	3,871,400	4,764,800	4,407,440	5,509,300
4	○○○	○○면 ○○리 ○○○-○	962	10,937,940	2,328,040	2,597,400	2,789,800	3,222,700
5	○○○	○○면 ○○리 ○○○-○	317	1,746,020	355,670	409,560	457,740	523,050
6	○○○	○○면 ○○리 ○○○-○	855	3,314,400	670,320	769,500	863,550	1,011,030
7	○○○	○○면 ○○리 ○○○-○	533	3,336,830	706,750	769,650	857,060	1,003,37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공백 및 농지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미이행한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업무 과중과 업무연찬 부족 및 담당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담당자간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농지법」 제63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하여 처분명령 농지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는 등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현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농지법」 제63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하여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처분명령 농지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는 등 농지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현 ○○○면), ○○○○과 ○○○○○○○○○○○○○○○○○(현 ○○○면, ○○○○○○○○○○○○○○○○○), ○○○○과 ○○○○○○○○○○○○○○○○○(현 ○○○○과), 실무담당자 ○○○○과 ○○○○○○○○○○○○○○○○○(현 ○○○면,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농지법」 제63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농지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현 ○○○면,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③ 「농지법」 제63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장기간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26,276천 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9】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군수는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별지 제15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및 그 밖의 처분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르면 군수는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이거나,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벌칙)에 따르면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표 1]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 만원)

범 칙 행 위	범 칙 금 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재구성]

그리고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 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한날부터 20일이 경과하거나, 공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여야 하고,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강제폐차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최근 4년간(2020년 ~ 2023년) 무단방치 차량 73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자진처리 기한을 초과하여 강제 폐차 등을 평균 743일만에 처리하였고, 범칙금 40,700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강제 폐차에 따른 정산비용은 없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2014. 3. 30. ○○면 ○○○ 근처 농로에서 방치되어 적발된 ○○○○○○○의 ○○○ 차량의 경우 강제폐차 및 수사에 소요된 기간은 2,946일(8년간)이었고, 범칙금 150만원 부과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2020년 ~ 2023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단위 : 일, 천 원)

계(A=a+b+c)			강제폐차(a)			자진처리(b)			수사중(c)	
건수	처리기간 (평균)	미부과 금액	건수	처리기간 (평균)	미부과 금액	건수	처리기간 (평균)	미부과 금액	건수	미부과 금액
73	743	40,700	30	1,016	11,500	19	228	3,200	24	26,00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내역 [별표] 참고

그리고 의령군 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와 체결하거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및 ○○폐차장에 2013년부터 2023. 6. 21.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협약 및 계약체결 없이 무단방치자동차의 견인조치, 자동차 보관업무, 폐차비용 정산처리 등 부적정하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표 3] 계약체결없이 폐차 및 견인·보관 지시 현황

구분	연도	관련문서	차량번호	폐차 및 보관 장소	내 용	처리업체
1	2013	○○○○과 -○○○○호	○○○○○○ ○○외 28대	○○폐차장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합폐차장
2	2013	○○○○과 -○○○○호	○○○○○○○○ 외 2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3	2014	○○○○과 -○○○○호	○○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4	2015	○○○○과 -○○○○호	○○○○○○○○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5	2015	○○○○과 -○○○○호	○○○○○○○○ 외 9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6	2016	○○○○과 -○○○○호 외 2건	○○○○○○○○ 외 4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7	2016	○○○○과 -○○○○호	○○○○○○○○ ○○ 외 7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	2017	○○○○과 -○○○○호 7건	○○○○○○○○ 외 11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9	2018	○○○○과 -○○호	○○○○○○○○ 외 10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0	2018	○○○○과 -○○○○호	○○○○○○○○ 외 8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1	2018	○○○○과 -○○호	○○○○○○○○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2	2019	○○○○과 -○○○○호 외 4건	○○○○○○○○ 외 5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3	2021	○○○○과 -○○○○호 외 4건	○○○○○ 외 9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4	2021	○○○○과 -○○○○호 외 1건	○○○○○○○○ 외 11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5	2022	○○○○과 -○○○○호 외 7건	○○○○○○○○ 외 11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견인 및 보관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6	2022	○○○○과 -○○○○호	○○○ 8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7	2023	○○○○과 -○○○○호	○○○ 3대	○○자동차해 체재활용업	폐차지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폐차수수료, 견인비용, 차량보관 등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지 않아 이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 또한 어떠한 정산내역도 없어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업무를 자동차 해체재활용

업체에 부적정하게 전가하였으며, 특정 업체가 10년간을 아무런 위탁계약체결 없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단방치차량 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되었고, 자동차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무단방치차량의 범칙금 부과 및 강제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경상남도 ○○담당관,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의령군수는

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과 ○○○○○○ ○○○(현 ○○○○○○사업소), ○○○○○과 ○○○○○○ ○○○(현 ○○○○과),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과 ○○○○○○ ○○○(현 ○○○면), ○○○○○과 ○○○○○○ ○○○,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복구 업무와 고발 또는 검찰송치와 같은 사범 조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은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은 제39조제4항을, 복구 설계서의 승인 등은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

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지 복구설계서¹⁾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법 산지전용면적	과태료(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0㎡ 미만인 경우	250	500	1,000
1,000㎡ 이상 10,000㎡ 미만인 경우	500	1,000	2,000
1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500	3,000	6,000
100,000㎡ 이상인 경우	2,500	5,000	10,000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 재구성]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전용한 자에 대하여 산지복구 명령을 하고 산지복구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20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2018. 9. 28.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6건의 불법전용 산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었고, 6건의 산지 복구설계서가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복구개요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복구준공 처리한 건이 5건이 있는 등 불법산지 전용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표 2] 불법 산지전용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행위자	산림 소재지	면적(m ²)	미복구	복구계획서 미제출	복구개요서 미제출 복구준공
불법전용	○○○ 등 20명	○○읍 ○리 산○○○ 등 27필지	6,749	6	6	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 내역 별표 참고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전부 수용하면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 시, 산지관리법을 준수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산지관리법」 제44조 등을 위반하여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과 ○○○○○○ ○○○(현 ○○○○○과), ○○○○과 ○○○○○○ ○○○(현 ○○○면), ○○○○과 ○○○○○○ ○○○(현 ○○○○○과)와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면), ○○○○과 ○○○○○○○○ ○○○(현 ○○○○○○○),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길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검토 및 ○○과에 대한 구매 계약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2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¹⁾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과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관련 [별표 1]²⁾,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에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³⁾를 도급하려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1호 및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농공 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면허 보유 등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총 15개로 구분되어 있음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전문공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PC BOX⁴⁾ 구매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2021. 5. 20. 농공단지⁵⁾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인 ○○○○ ○○○○로부터 206,000천 원의 견적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2021. 6. 18.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매 검토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군수 방침을 득하였으나,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가 포함⁵⁾되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허 보유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같은 날 ○○○과에 수의계약요청사유서⁶⁾를 첨부하여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의령군 ○○○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의 PC BOX 구매 관련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제반 서류⁷⁾를 보면 [표 1]과 같이 ○○○과가 선정한 ○○○○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콘크리트암거 등을 제조만하는 제조업체이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에정금액 30,000천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임을 판별할 수 있었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PC BOX 구매 관련 수의계약 요청 제반 서류상 시공 자격 확인 가능 내역

계약상대자	업종 확인 가능 서류		공사예정금액 확인 가능 서류	
	업종	확인 가능 서류	예정금액	확인 가능 서류
○○○○ ○○○○	콘크리트암거 등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가능)	총 206,000천 원 - 제작 165,000천 원 - 공사 30,000천 원 - 운반 11,000천 원	- 관급자재 구매 검토보고서, 견적서 (공사금액 확인가능) -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인도조건에 현장설치도라 명시)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관급자재)

5) 실무담당자가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매 검토보고를 작성하면서 PC BOX 설치금액을 직접 기재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⁵⁾에 입주한 공장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

7) 수의계약요청사유서, ○○○과의 관급자재 구매 검토보고서, 견적서 등

이에 따라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자격 조건을 보유한 다수 업체의 과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시공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무면허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여 계약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관급자재의 납품 방식중 하나인 현장설치도 부분을 공사 계약건으로 분할발주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부족때문이라고 하였고, ○○○○과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업무미숙으로 해당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하고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면), ○○○○과 ○○○○ ○○○ ○○○(현 휴직)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 ○○○○과 ○○○○○○○○ ○○○(현 ○○○○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해당하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였음에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 안내광고 시 공사현장·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의 경우 의령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1인 뿐일 경우 유효한 공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령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였음에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나, 시·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수의계약 안내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유효하지 않은 2인 이상 수의소액 견적입찰 공고 진행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 3. 21. ‘○○○~○○○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건이 추정가격 32,490천 원으로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을 등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²⁾하여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로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표 1]과 같이 당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1인³⁾ 뿐임에 따라 유효한 공고가 성립될 수 없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령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부적정하게 제한하였다.

[표 1]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내용 및 의령군 내 중간재활용업 업종 등록 업체 현황

(단위 : 원)

2인 이상 수의소액 견적입찰 공고 내용			관내 중간재활용업 업체	
용역명	추정 가격	과업내용	업체명	비고
○○○~○○○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2,490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소나무 107t/소나무외 366t)	○○○○○○(주) ※ 면허 : 임목폐목재 등	투찰 가능 (해당 과업수행 가능)
			○○○○ ※ 면허 : 폐목재 등	투찰 불가 (해당 과업수행 불가)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관내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 ○○○(주)만 입찰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을 하였고 해당 업체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으로 되어 있고,(임목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폐목재 등)로 분류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임목폐목재)로 분류되므로 해당 용역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업대상폐기물을 임목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제한함은 타당하나 폐목재 면허 소지자는 해당 과업 수행이 불가함
- 3)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의령군 내 (주)○○○○○○이 유일함

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그리고 의령군 ○○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2]와 같이 2020. 10. 13.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과 2022. 3. 21. ‘○○○~○○○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자 해당 공고상 의령군으로 지역제한을 하였음에도 지역제한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와 부적정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공고내용					계약내용		적법 절차
용역명	공고일	기초금액	지역제한	결과 ¹⁾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위법사항)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 10. 13.	76,230	의령군	유찰	○○○○○○○ ※ 단독응찰자	단독응찰자 대상 1인 수의계약	재공고 진행
○○○~○○○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22. 03. 21.	35,739	의령군	유찰	○○○○○○○(주) ※ 단독응찰자		

1)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재공고를 진행하였다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본래 공고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단독응찰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관계 법령상에서 2인 이상 수의 소액 견적입찰시 의령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일부만 인지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지 못한 업무미숙때문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직무연수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면)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당시 실무책임자 ○○과 ○○○(현 ○○○과,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오토캠핑장¹⁾ 시설을 2018. 9. 20.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 오토캠핑장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소재지	사용허가 시설		면적(m ²)	사용허가 기간
○○○ 오토캠핑장	○○면 ○○로○길 ○○ 일원	기본시설	오토캠핑장, 프리텐트 등	33,230	'18. 9. 20. ~ '23. 9. 19.(5년)
		편익시설	주차장, 관리실 등		
		위생시설	화장실, 개수대 등		
		체육시설	다목적 구장, 물놀이시설 등		
		기타시설	벤치, 정자 등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1) 폐교(○○○○○○○○)를 활용하여 '18.9.20 최초로 사용허가한 가족휴양시설(사업기간 '16.5.25.~'18.5.24.)로 ○○○야영장에서 ○○○ 오토캠핑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2. 위탁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²⁾」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르면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따르면 문화·관광³⁾·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6조에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령군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2.12.)호에는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입과

2)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음
3) 관광진흥법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야영장업(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4)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이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함

*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이하 ‘위탁료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는 관리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으로 계산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지방 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령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입찰 시 위탁료 산정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관리위탁 입찰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법령 규정에 따라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 오토캠핑장 위탁을 위한 의령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전문기관에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여 위탁료 산정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결정하고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2018. 9. 20.부터 2023. 9. 19.까지 5년간 낙찰자 ○○○에게 부적정하게 사용허가 하였다.

[표 2] ○○○ 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내역

(단위 : 천 원)

공고일자	입찰건명	사용(허가)기간	예정가격 (연간 사용료)	낙찰가격	낙찰자
'18.8.22.	의령군 ○○○ 야영장 사용·수익허가	'18.9.10.~'23.9.9.(5년)	14,722	21,500	○○○ (개인)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 부적정

1) 군 승인없는 시설물 설치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 야영장 사용허가 조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소규모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군의 승인 없이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군의 지시·시정 조치를 3회 고지 후 불이행 시 익년도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하며 허가재산과 영업행위 전반에 대하여 군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위 조건에는 모든 시설 사용료 징수는 의령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사용료⁵⁾를 인상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료 등)에는 사용료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체험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의령군 조례와 사용허가 조건에는 ‘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이용료’가 정당 용어임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 오토캠핑장의 수탁자가 [표 3]과 같이 의령군의 승인 없이 탁구장 등 3개 시설을 임의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3개 시설물에 대해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야영장 이용 시 1만 원의 추가요금⁶⁾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표 3] 승인 없는 시설물 설치 및 추가 이용요금 내역

시설물명	시설물 현황	설치연월	추가 이용요금	비 고
탁구장	탁구대 2대	'18. 10.	1만 원 (해당 시설을 이용 시 받는 것이 아닌 오토캠핑 입장 시 요금 징수)	수탁자 설치 건의 요청 시설
영화관	영상플레이어 1대	'18. 10.		수탁자 설치 건의 요청 없는 시설
실내놀이터	놀이기구 1식	'19. 4.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수탁자가 위 3개 시설물 중 탁구장과 영화관을 설치하여 2018년 10월 의령군에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⁷⁾한 사실이 있어, 의령군 ○○○○과에서는 위 시설물 설치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수탁자가 감사대상 기간('20. 10. 1. ~ '23. 4. 30.) 중 위 3개 시설물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 총 142,280천 원⁸⁾을 징수한 점을 감사기간('23. 6. 13. ~ 6. 21.) 중 확인하였다.

2) 위탁료 업무처리 및 위탁재산 유지비용 군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해당 시설을 체험할 시에 체험료로 받는 것이 아닌 오토캠핑장 이용 시 추가요금 1만 원을 받고 있는 등 당초 탁구장, 영화관을 이용시 받겠다는 건의 요청과도 달리 운영하고 있었음

7) 탁구장 : 교실 한칸에 탁구대 2대를 설치하여 탁구대 사용료 10분당 1천 원 사용료 징수 요청함

영화관 : 교실 한면에 영상플레이어를 설치하여 1인당 2천원 사용료 징수 요청함

8) '20.10.1.~'23.4.30. 기간 총 이용명수 14,228명 × 10,000원 = 142,280천 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는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위탁료 산출 시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의 수입과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과금, 보험료 등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9. 12. 24. 시행된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25천 원에서 인상하여 비수기에는 30천 원, 성수기(6~8월)에는 35천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 따르면 위탁료를 산출함에 있어 지출액 산정 시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경상 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입장료 등 수입과 인건비, 수선유지비(전기안전관리비, 홈페이지 운영비) 등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 오토캠핑장을 위탁계약이 아닌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2018. 9. 20부터 2023. 9. 19.까지 매년 사용료를 21,500천 원으로 부적정하게 고정함으로써 2019. 12. 24.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으로 인상된 이용요금⁹⁾과 수탁자가 2018년 10월부터 승인받지 않고 추가 인상한 이용요금(1일 1명 1만 원) 등 실제 수입액 등을 매년 위탁료 산출에 반영하지 않아 [표 4]와 같이 매년 최대 15,343천 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4] 재정손실액 추정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당초 위탁료(5년간 동일) (낙찰가격) ^②	재산정 위탁료 ^{10)⑥}	매년 재정손실액(추정) ^③ (②-⑥)	비고
2020~2022	21,500	36,843	15,343	최근 3년 평균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의령군 ○○○○과에서는 ○○○ 오토캠핑장의 위탁료 산출에 기준이 되는 수탁자 지출비용에 전기안전 관리비와 홈페이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수탁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2020. 10. 1.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10,815천 원의 금액을 의령군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5] 위탁재산 유지비용 군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소규모 유지수선비			비 고
	계	전기안전 관리비	홈페이지 운영비	
계	10,815	4,851	5,964	
2020	664	319	345	
2021	2,907	1,472	1,435	
2022	3,622	1,530	2,092	
2023	3,622	1,530	2,092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하여 야영장 관리·감독 및 위탁료 산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9) 야영장 내 오토캠핑의 경우 1일 1면 요금이 25,000원에서 비수기 30,000원, 성수기(6~8월) 35,000원으로 인상

10) 최근 3년 평균 조정 후(실제) 수입액 230,210천 원 - 조정 후 지출액 193,367천 원 = 36,843천 원

다만 당시 ○○○ 오토캠핑장을 공유재산 관련 모든 행위의 관리위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 오토캠핑장의 수탁자는 탁구장 등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개별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와 구두 협의·승인하였으며, 매년 수입지출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위탁료를 산출하는 업무처리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전기안전 관리비와 홈페이지 운영비를 의령군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용허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의령군 ○○○○과에서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여 위탁료 산정방식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한 점, 시설물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설치 당시 업무 담당자(담당계장)이 해당 시설물들에 대하여 설치를 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매년 수입지출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위탁료 산정 시 반영된 지출액인 점을 볼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담당관), 실무담당자 ○○○○과 ○○○○○○○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과 ○○○○○○○ ○○○(현 ○○○○○○, ○○○○○○○), ○○○○과 ○○○○○○○ ○○○(현 ○○○○○○사업소), ○○○○과 ○○○○○○○ ○○○,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군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과 임의로 추가 징수하고 있는 이용료 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군 예산으로 집행한 전기안전 관리비, 홈페이지 운영비 10,815천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1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 누락 등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부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미사용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 등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비과세)에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4(원시취득¹⁾의 경우 과세표준) 및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거나 기계장비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및 제21조(부족세액의 추정 및 가산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²⁾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³⁾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토지를 취득한 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자, 건축물을 신축한 자 등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취득세 신고 시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2019. 1. 1.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표 1]과 같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액이 사실상 증가한 토지를 소유한 ○○○ 등 55명이 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총 55건, 14,765천 원을 직권으로 부과하지 않았고,

1)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등을 하여 취득하는 것

2)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3)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부과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표 1]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해당연도	납세자	미부과액(추징예정액)		
		계	취득세	농특세
계	55명(55건)	14,765	12,640	2,125
2019	○○○ 외 4(5건)	579	529	50
2020	○○○ 외 9(10건)	1,626	1,482	144
2021	○○○ 외 19(20건)	6,460	5,074	1,386
2022	○○○ 외 14(15건)	3,049	2,779	270
2023	○○○ 외 4(5건)	3,051	2,776	27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세부 내역(별첨)

또한 [표 2]와 같이 ○○○ 등 11명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총 11건, 12,189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표 2]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납세자명	소재지	면적 (㎡)	허가일	접수일	존치기간 만료일	추징세액(예정)		
						계	취득세	농특세등
계	11건					12,189	11,096	1,093
○○○	○○면 ○○리 ○○○-○ 외 1필지	250.2	퇴비사	'20.10.08	'23.08.31	802	741	61
○○○○	○○면 ○○리 ○○○-○	226.53	사무실	'21.08.02	'22.10.30	794	722	72
(주)○○○○ ○○	○○면 ○○리 ○○○-○	240	임시 사무실	'22.02.28	'23.12.19	1,810	1,646	164
(주)○○	○○면 ○○리 ○○○	372	임시창고	'22.03.03	'23.12.31	654	595	59
○○○○ ○○(주)	○○면 ○○리 ○○○○ 외 1필지	709	공사용 사무실	'22.03.03	'24.04.19	5,164	4,695	469
○○○○○○○ ○○○○○○○	○○면 ○○리 ○○○	154	창고	'22.03.31	'25.03.30	264	240	24
○○○○○○○	○○면 ○○리 ○○○	240	임시 사무소	'22.04.01	'23.12.20	1,446	1,315	131
○○○○(주)	○○면 ○○리 ○○	54	공사용 사무실	'22.06.16	'23.09.23	148	135	13
○○○○○○○	○○읍 ○○리 ○○○○-○ 외 2필지	180	창고시설	'22.07.14	'25.07.12	664	604	60

납세자명	소재지	면적 (㎡)	허가일	접수일	존치기간 만료일	추징세액(예정)		
						계	취득세	농특세등
○○○○○ ○○(주)	○○면 ○○리 ○○○-○	54	사무실	'22.07.26	'24.03.23	145	132	13
○○○○○○○ ○○○○	○○읍 ○○리 ○○○-○ 외 8필지	108	임시 사무실	'22.10.26	'24.01.23	298	271	27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한 ○○○ 등 13명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과소 신고하였음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총 13건 27,130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3] 신축 건축물 등 취득세 미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보조사업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추징액(예정)			비고
			기신고	정당	차액	계	취득세	농특세	
계		13건	216,063	1,247,406	1,081,342	27,130	24,799	2,331	
2021	○○○	○○면 ○○리 ○○○○-○ 66.7㎡ (농산물가공장)	27,688	92,930	65,242	2,637	2,379	258	과소 신고
2021	○○○	○○면 ○○리 ○○○ 16.9㎡ (저온저장고)	-	12,378	12,378	354	327	27	무신고
2021	○○○	○○면 ○○리 ○○○○-○ 116.5㎡ (저온저장고)	35,768	71,514	35,745	1,454	1,312	142	과소 신고
2021	○○○	○○면 ○○리 ○○○○-○ 91㎡ (저온저장고)	45,409	79,545	34,136	1,301	1,175	126	과소 신고
2022	○○○	○○면 ○○리 ○○○○-○ 18㎡ (주거시설)	-	13,636	13,636	373	344	29	무신고
2022	○○○○ ○○○○	○○면 ○○리 ○○ 105.7㎡ (저온저장고)	92,708	263,191	170,483	2,909	2,597	312	과소 신고
2022	○○○○○○○ ○○○○(주)	지게차 B25SE-7	-	32,825	32,825	790	725	65	무신고
2022	○○○○ ○○○○○	지게차 LEP30	-	28,915	28,915	814	751	63	무신고
2022	○○○	○○면 ○○리 ○○-○ 10㎡ (저온저장고)	-	7,830	7,830	214	198	16	무신고
2022	○○○	○○면 ○○리 ○○○○-○ 10㎡ (저온저장고)	-	6,000	6,000	163	151	12	무신고
2022	○○○	○○면 ○○리 산○○○-○ 47.2㎡ (저온저장고)	14,490	20,488	5,998	155	143	12	과소 신고
2022	○○○○○○○ ○○○○○○○	전동지게차 B25SE-7	-	29,890	29,890	826	762	64	무신고
2022	○○○○○○○ ○○○○○○○	사일로 500톤 2기	-	588,264	588,264	15,140	13,935	1,205	무신고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취득세 추정 등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경감하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이 자경 목적으로 ○○면 ○○리 ○○○-○번 지 외 1필지 2,772㎡ 농지를 2021. 4. 27.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2022. 3. 31. 감면 농지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등 2019. 11. 1. 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4]와 같이 ○○○ 등 5명이 감면받은 농지에 자경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총 5건, 10,835천 원을 추징하지 않았으며,

또한 ○○○ 외 1명이 자동차를 2022. 3. 31.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1년 이내인 2022. 7. 6.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1건, 1,764천 원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았다.

[표 4] 감면대상 미추징 내역

(단위 : 천 원)

납세자명	취득일	과세물건	감면내용	추징사유	추징액(예정)		
					계	취득세	농특세
계		6건			12,599	11,103	1,496
소계		5건			10,835	9,339	1,496
○○○	'21. 4.27.	○○면 ○○리 ○○○-○ 외1필지 2,772㎡	자경농민 취득 농지	2년 내 다른 용도 사용 (22.3.31. 노유자시설 착공)	4,834	4,169	665
○○○	'21. 6. 4.	○○면 ○○리 ○○○ 외5필지 7,369㎡	자경농민 취득 농지	2년 내 직접 미사용 (현장확인 상 임야)	2,666	2,276	390
○○○	'21. 2. 8.	○○면 ○○리 ○○○○-○ 1,14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년 내 다른 용도 사용 (21.7.30. 유통시설 착공)	867	744	123
○○○	'21.12.14.	○○면 ○○리 ○○-○ 1,157㎡	귀농인 취득 농지	3년 내 다른 용도 사용 (22.4.7. 단독주택 착공)	856	771	85
○○○	'19.11.26.	○○면 ○○리 ○○○ 1,997㎡	자경농민 취득 농지	2년 내 직접 미사용 (현장확인 상 임야)	1,612	1,379	233
소계		1건			1,764	1,764	-
○○○ 외1	'22. 3.31.	2020년식 ○○○○○ 승용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	1년 내 소유권 이전 (22.7.6. 타인 이전)	1,764	1,764	-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과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으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하여 취득세 부과를 누락한 실무담당자에 대해 업무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 ②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하여 취득세 부과를 누락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지방세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에 따라 취득세 부과 누락분 총 79건, 54,084천 원과 취득세 감면 추징 누락분 6건 12,599천 원은 추징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하천의 재해 예방 및 정비를 위해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발주해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용역기간)	계약 상대자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8. 6. 16.	○○면 ○○리 일원	하천정비 L=3.44km	8,261	6,210	2,051	'18. 6. 20. ~ '21. 8. 13.	○○○○○○(주) 대표 ○○○	100% (준공)
○○ 2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2. 6. 21.	○○면 ○○리 일원	하천정비 L=1.0km 교량 1개소 등	3,596	2,515	1,081	'22. 6. 27. ~ '24. 6. 26.	○○건설(주) 대표 ○○○	35% (공사중)
○○ 소하천 정비사업	'21. 1. 11.	○○면 ○○리 일원	소하천정비 L=0.76km	3,065	2,154	911	'21. 10. 12. ~ '23. 10. 9.	(주)○○○○○○○ 대표 ○○○	65% (공사중)
○○천 ○○제 재해복구사업	'21. 6. 16.	○○면 ○○리 일원	하천재해 복구 L=2.0km	4,078	3,796	282	'21. 6. 21. ~ '22. 3. 25.	○○건설(주) 대표 ○○○	100% (준공)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암반구간 적정성 검토없이 하상보호 과다 시공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와 현장 조건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6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하상유지시설)에 따르면 하상유지시설이라 함은 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9조(보) 제7항에 따라 보를 설치하는 경우 본체 상류·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 등 실정보고를 할 때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정보고한 내용이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검토·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공자가 [표 2]와 같이 하천의 보 및 하상보호공사를 시공하는 구간이 당초 설계에는 토사 구간으로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보호공사가 필요했으나, 착공 후 현장조사 시 암반 구간으로 확인되어 암반깨기 및 구조물(심벽) 설치 등 하상보호공사의 적정성에 대해 설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하상보호를 위해 기존 암반층을 유지하는 것이 공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암반깨기 후 전석 불임으로 2021. 8. 13. 시공 완료해 31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 하였다.

[표 2] 하상보호공사 당초 설계조건 및 변경, 예산 미절감 내역

시공사보고일 (발주청승인일)	준공일	위 치	당초 설계시 조건	현장조사 시 조건 및 변경	예산 미절감액
‘19. 5.16. (‘19. 5.17.)	‘21. 8. 13.	자연형보 3개소 제1호,제6호,제8호	하천바닥이 토사지반으로 터파기 후 전석불임으로 설계됨	하천바닥이 암반임에도 암반깨기 후 전석불임으로 변경 시공	311 백만 원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¹⁾ 제7조(사용기준)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이하 ‘시공자’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 관리비’라 한다)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2020. 1.23. 시행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2022. 6. 2. 개정되기 이전 기준 적용)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 제1항 나호에 따라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를 반영한 경우와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된 인건비²⁾ 등에 대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제8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환경관리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1호(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따라 살수차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말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를 준공정산 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용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한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2021. 6. 24. 준공정산하면서 시공사[○○○○○○(주)]가 2021.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의 안전관리 인건비 3,570천 원의 사용실적³⁾을 제출했음에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표 3]과 같이 3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55,056천 원과 환경관리비 3,504천 원 등 총 58,560천 원을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내역

(금액: 천 원)

연번	공 사 명	지급일자 (정산일자)	과다 지급액			준공정산 부서	시 공 자
			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합계	3건		58,560	55,056	3,504	1개 부서	3개 업체
1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 6. 29. ('21. 6. 24.)	46,774	46,774		○○ ○○과	○○○○○○(주) (○○시 소재)
2	○○소하천 정비사업	'22. 10. 31. ('22.10. 24.)	7,036	3,532	3,504	○○ ○○과	(주)○○○○○○ (○○시 소재)
3	○○천 ○○제 재해복구사업	'22. 3. 31. ('22. 3. 25.)	4,750	4,750		○○ ○○과	○○건설(주) (○○시 소재)

※ 과다 지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별표]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2021. 6. 24. 준공정산 시 2021. 5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고 발주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2021.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사용실적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음

4. 하천정비에 따른 강성호안 과다 설계 및 시공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2. 3. 행정안전부)」 제1장(총칙) 제1호(목적)에 따르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 등 세부 추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지침 제5장(참고자료) 제3항(사전설계 검토 유의사항) 제7호(제방 및 호안)에 따르면 강성호안⁴⁾을 계획홍수위선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하상경사 및 소류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안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불합리한 부분 등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소하천의 호안을 정비할 때에는 계획홍수위 이상 또는 여유고 구간까지 불필요하게 강성호안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의 제방 호안을 정비하면서 [표 4]와 같이 일률적으로 계획홍수위선 이상 여유고까지 과도하게 강성호안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여유고 까지 강성호안 2,088㎡ 과다 시공으로 공사비 9,020천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됨에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4)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수충부 등 소류력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구간에 제방 또는 호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돌쌓기 또는 식생옹벽 같은 구조물을 일컫음.

[표 4] 여유고 구간 강성호안 과다 물량 및 공사비

구 간	물 량(m ²)			공사비(천원)			비고
	당 초	조 정	증감	당 초	조 정	증감	
계	2,088	2,021	감)67	271,800	262,780	감)9,020	
NO.1+22.2 ~ NO.17+06 (좌우안 L=332.3m)	1,031	1,000	감) 31	134,580	130,270	감) 4,310	기시공
NO.23+09.6 ~ NO.36+15 (좌안 L=359.0m)	1,057	1,021	감) 36	137,220	132,510	감) 4,710	미시공

※ 공사비는 순공사비, 자재비, 재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5. 안전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승인없이 공사 추진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라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안전관리)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등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하면 승인하여 시공자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표 5]와 같이 천공기를 사용하고 2m 이상 지보공을 사용함으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승인 대상임에도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없이 2021. 8. 13. 준공 처리하였다.

[표 5]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내역

공 사 명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공사 기간	안전관리계획 제출일	안전관리계획 승인통보일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천공기 사용 교량 구간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로 대상임	’18.6.16.~ ’21.8.13.	’20. 6.24.	미승인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소하천 정비공사’는 [표 6]과 같이 총공사비가 31억 원으로 품질시험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시공자가 착공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없이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6]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내역

공 사 명	총공사비 (억원)	공사기간	품질시험계획 제출일	품질시험계획 승인통보일
○○ 소하천 정비공사	31	’21.10.12.~ ’23.10. 9.	’21.10.12.	미승인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 등을 위반해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건 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과 ○○○○○○○○ ○○○(현 ○○○○○○ ○○)과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 실무책임자 ○○○○과 ○○○○○○○○ ○○○, 감독책임자 ○○○○과 ○○○○○○○○ ○○○(현 ○○○○○○○○○○○○○○○○○○○), ○○○○과 ○○○○○○○○○ ○○○(현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 총 58,560천 원의 회수방안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시공자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을 위반하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강성호안으로 과다 설계 및 미 시공분 4,710천 원을 ‘설계감액’ 조치 바랍니다.(시정)
-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1. 공사명 :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36,330천원	
'19년 2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2명)	520천원	총2명(○○○,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19년 10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2,47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19년 11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2,66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0년 3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6명)	4,390천원	총7명(○○○, ○○○, ○○○, ○○○, ○○○, ○○○,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0년 4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3명)	1,650천원	총4명(○○○, ○○○, ○○○, ○○○) 인건비 과다 지급 (근거 : '20년 4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0년 10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1,19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0년 12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1,19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1년 1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2명)	4,590천원	총3명(○○○, ○○○,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1년 2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2명)	4,130천원	총3명(○○○, ○○○,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1년 3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2명)	6,420천원	총6명(○○○, ○○○, ○○○, ○○○, ○○○,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1년 4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2명)	3,550천원	총5명(○○○, ○○○, ○○○, ○○○, ○○○) 인건 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4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1년 5월	안전 관리비	안전신호수(1명)	3,57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5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 본 공사는 설계내역서에 교통 신호수의 노무비 1,100만원(재경비 포함)이 별도 반영되어 있음
 준공 정산시 매월 노무비로 동일시기 동일인물에게 지급된 증빙서류를 안전관리 인건비 서류로 재
 청구해 시공자에게 지급됨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36,330천원	안전신호수
② 일 반 관 리 비	1,885천원	(①) × 5.19%
③ 이 윤	4,306천원	(①+②) × 11.27%
④ 공 급 가 액	42,522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4,252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46,774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명 : ○○소하천 정비사업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2,550천원	
'22년 3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2명)	260천원	총2명(○○○,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4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3명)	690천원	총3명(○○○, ○○○,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4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5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4명)	840천원	총4명(○○○, ○○○, ○○○,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5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7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2명)	400천원	총2명(○○○,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7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8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2명)	360천원	총2명(○○○,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8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2,550천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153천원	(①) × 6.0%
③ 이 윤	405천원	(①+②) × 15.0%
④ 공 급 가 액	3,108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310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114천원	(④+⑤) × 3.35%
⑦ 과 다 지 급 액	3,532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환경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2,530천원	
'22년 3월	환경 관리비	살수인부 (인건비 2명)	1,950천원	총2명(○○○, ○○○)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5월	환경 관리비	살수인부 (인건비 1명)	28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5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8월	환경 관리비	오탁방지망 설치 (인건비 1명)	15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8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2년 10월	환경 관리비	살수인부 (인건비 1명)	15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2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2,530천원	중복지급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151천원	(①) × 6.0%
③ 이 윤	402천원	(①+②) × 15.0%
④ 공 급 가 액	3,083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308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113천원	(④+⑤) × 3.35%
⑦ 과 다 지 급 액	3,504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명 : ○○천 ○○제 재해복구사업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3,520천원	
'21년 12월	안전 관리비	장비유도신호수(1명)	3,52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1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3,520천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11천원	(①) × 6.0%
③ 이 윤	424천원	(①+②) × 15.0%
④ 공 급 가 액	4,155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415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	
⑦ 과 다 지 급 액	4,570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16】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기관경고

제 목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등 8개 부서)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 등 7개 부서 및 ○○과에서는 해마다 소규모 풀배기, 준설, 하천 유목제거, 포장, 보수 등 소규모 공사와 설계용역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사·용역을 발주 및 계약하고 공사감독을 임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용역의 경우 1억 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령군에서는 권한대행의 방침¹⁾(2020. 8. 21.)을 받아 ‘수의계약 운영 개선 사항’을 의령군 전 실과소에 통보(2020. 8. 25.)하면서 ①특정업체에게 일감몰아주기 차단, ②타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 제공, ③수의계약 낙찰률(91%)이 공개입찰 낙찰률(88%)보다 높아 예산 낭비우려가 있어 동일 사업, 동일 시기, 동일 지역의 여러 건의 소규모 사업을 1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통합 발주(분리발주금지)하도록 2020.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절 2(용어 정리)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이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 등 7개 부서에서는 동일시기, 동일 사업내용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 또는 용역을 분할하여 계약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규모 공사계약을 체결된 경우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

1) “수의계약 분석 및 제도 개선 계획”[(기획예산담당관-10592호) 2020.8.21.] 의령군 권한대행 방침

공무원을 임명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에서도 동일시기, 동일 사업내용으로 통합 가능한 소규모 공사 및 용역계약은 예산절감을 위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며, 특정업체에 분할하여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통합 가능한 공사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공사감독 미임명

그런데 ○○과 등 7개 부서와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9월부터 2023. 3월까지 소규모 공사 476건에 대해 동일시기, 동일공종으로 예산 편성, 통합발주 및 2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일 2~3건으로 통합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최대 88%의 낙찰가격을 적용할 경우 최대 31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과 등 7개 사업부서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야 함에도 332건은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또한 ○○과에서는 의령군 권한대행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 사항’ 방침에 따라 사업부서에 동일시기, 동일공종의 계약의뢰 건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차단 및 타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73건에 대해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통합가능한 공사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감독 미임명, 절감액 내역

대상기간	발주부서	분할발주 및 계약 건수	예정 금액	계약 금액	평균 낙찰률	분할수의 발주	분할수의 계약	공사감독 미임명
2020. 9월 ~ 2023. 3월	○○과 등 7개 부서	476건	8,955 백만원	8,195 백만원	92%	459건	73건	332건

계 약 구 분	예정가격	평균낙찰률	계약금액	절감가능액
분할 1인 수의계약	8,955 백만 원	92.0%	8,195 백만 원	315백만 원
통합 2인 수의계약		88.0%	7,880 백만 원	

※ 통합 가능한 공사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공사감독 미임명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출처 :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통합 가능한 용역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또한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20. 10월부터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20건의 단일 용역을 48건으로 분할하여 ○○과에 1인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해당 계약 요청 건을 20건의 단일 용역으로 검토 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48건으로 분할해 요청받은 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최대 88%의 낙찰가격을 적용할 경우 최대 30백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2] 통합 가능한 용역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절감액 내역

대상기간	발주부서	계 약 구 분	분할발주 및 계약 건수	예정가격	평균 낙찰률	계약금액	절감 가능액
2020. 10월 ~ 2023. 6월	○○과 등 3개 부서	분할 1인 수의계약	48건	866백만 원	91.5%	792 백만원	30백만 원
		통합 2인 수의계약	20건		88.0%	762 백만원	

※ 통합 가능한 용역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 [별표2] 참조

[출처 : ○○과, ○○○○과, ○○○○과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등을 위반하여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공사감독 미임명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 ○○○○과), ○○과 ○○○○○○ ○○○(현 ○○○○○○○○), ○○○○과 ○○○○○○ ○○○, ○○○○과 ○○○○○○ ○○○(현 ○○과), ○○과 ○○○○○○ ○○○,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등을 위반하여 통합 가능한 공사·용역의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독 미임명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1] 통합 가능한 공사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공사감독 미임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건)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합계				476건				8,955,354	8,195,287	92	459	73	332
1	2020	일반	○○ ○○과	2020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2차)	(주) ○○○	2020 1005	2020 1109	19,898	19,300	97	1		1
2	2020	일반	○○ ○○과	2020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2차)	(주)○○○○	2020 1005	2020 1109	17,205	15,163	88	1		1
3	2020	일반	○○ ○○과	2020년○○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식회사 ○○○○	2020 1023	2020 1123	17,000	15,072	89	1		1
4	2020	일반	○○ ○○과	2020년○○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0 1023	2020 1123	16,900	14,763	87	1		1
5	2020	일반	○○ ○○과	2020년○○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 (주)	2020 1023	2020 1123	21,860	19,002	87	1		1
6	2020	일반	○○ ○○과	2020년○○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 조경	2020 1026	2020 1123	18,070	15,885	88	1		1
7	2020	일반	○○ ○○과	2020년○○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공사	○○○○조경 (주)	2020 1023	2020 1123	21,930	19,178	87	1		1
8	2020	일반	○○ ○○과	2020년○○ 천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조경(주)	2020 1026	2020 1123	21,690	18,951	87	1		1
9	2020	일반	○○ ○○과	2020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조경	2020 1026	2020 1123	19,600	17,288	88	1		1
10	2020	일반	○○ ○○과	2020년○○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0 1026	2020 1123	13,300	12,369	93	1		1
11	2020	일반	○○ ○○과	2020년○○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0 1026	2020 1119	12,550	11,672	93	1		1
12	2020	일반	○○ ○○과	2020년○○○○천외3개소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식 회사	2020 1026	2020 1118	10,695	10,050	94	1		1
13	2020	일반	○○ ○○과	2020년○○○○천외1개소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0 1026	2020 1124	13,300	12,369	93	1		1
14	2020	일반	○○과	○○ ○○마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0 1029	2021 0101	22,000	19,173	87	1		1
15	2020	일반	○○과	○○ ○○마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건설(주)	2020 1029	2021 0101	22,000	19,231	87	1		1
16	2020	일반	○○과	○○ ○○마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주)○○개발	2020 1029	2021 0102	22,000	19,560	89	1		1
17	2020	일반	○○과	○○ ○○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주)○○개발 건설	2020 1029	2021 0102	22,000	19,230	87	1		1
18	2020	일반	○○과	○○ ○○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주)○○○○ ○○○	2020 1029	2021 0102	22,000	19,234	87	1		1
19	2020	일반	○○과	○○ ○○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주)○○건설	2020 1030	2021 0101	22,000	19,080	87	1		1
20	2020	일반	○○과	○○ ○○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건설(주)	2020 1030	2021 0101	22,000	19,091	87	1		1
21	2020	일반	○○ ○○과	2020년○○천등6개소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0 1027	2020 1126	13,300	12,369	93	1		1
22	2020	일반	○○ ○○과	2020년○○○○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0 1026	2020 1118	11,220	10,546	94	1		1
23	2020	일반	○○ ○○과	2020년○○○○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0 1027	2020 1119	11,990	11,150	93	1		1
24	2020	일반	○○ ○○과	2020년○○천(○○지구)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0 1027	2020 1123	12,900	11,997	93	1		1
25	2020	일반	○○과	○○ 군도○○호선(○○~○○) 차선도색공사	(유)○○○○	2020 1130	2020 1230	31,100	27,131	87	1		1
26	2020	일반	○○과	○○ 군도○○호선 차선도색공사	(주)○○건설	2020 1130	2020 1230	30,900	26,989	87	1		1
27	2020	일반	○○과	○○ ○○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종합건설 (주)	2020 1207	2021 0207	22,000	19,257	88	1		1
28	2020	일반	○○과	○○ ○○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0 1208	2021 0208	22,000	19,355	88	1		1
29	2020	일반	○○과	○○ ○○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주)○○건설	2020 1207	2021 0126	22,000	19,256	88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30	2020	일반	○○ ○○과	의령군 기상관측시스템(AWS) 통합 웹서버 구축 공사	(주)○○	2020 1208	2021 0111	24,156	21,471	89			1
31	2020	일반	○○과	○○ ○○○천 정비공사	(주)○○	2020 1214	2021 0316	24,110	20,869	87	1		1
32	2020	일반	○○과	○○ ○○○천 정비공사	(주)○○산업	2020 1214	2021 0416	24,110	20,869	87	1		1
33	2020	일반	○○과	○○ ○○마을 세천(축사옆) 정비공사	○○건설(주)	2020 1214	2021 0614	23,340	20,437	88			1
34	2020	일반	○○과	○○ ○○ ○○평 배수로 정비공사	○○○○개발 (주)	2020 1214	2021 0613	30,610	26,969	88	1		1
35	2020	일반	○○ ○○과	○○배수문 배수맨홀 정비사업	○○ 주식회사	2020 1215	2020 1228	10,756	10,110	94	1		1
36	2020	일반	○○ ○○과	○○배수문 정비사업	○○산업	2020 1214	2020 1224	16,320	15,015	92	1		1
37	2020	일반	○○과	○○ ○○○2구 용수로 교체공사	○○건설주식 회사	2020 1221	2021 0327	33,600	29,503	88	1		
38	2020	일반	○○과	○○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주)	2020 1221	2021 0329	17,800	15,713	88	1		1
39	2020	일반	○○과	○○ ○○마을 세천 정비공사	○○건설(주)	2020 1221	2021 0328	20,940	18,134	87	1		1
40	2020	일반	○○과	○○ ○○마을 농로 사면정비공사	○○산업개발 (주)	2020 1221	2021 0329	26,550	23,443	88	1		
41	2020	일반	○○과	○○ ○○마을 비룡부 세천 정비공사	(주)○○건설	2020 1221	2021 0327	27,480	23,976	87	1		1
42	2021	일반	○○ ○○과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구)	(주)○○○	2021 0128	2021 0224	93,054	83,748	90	1		
43	2021	일반	○○ ○○과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주식회사 ○○	2021 0128	2021 0225	28,792	26,488	92		1	
44	2021	일반	○○ ○○과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구)	주식회사 ○○	2021 0128	2021 0225	72,895	67,063	92	1	1	
45	2021	일반	○○과	○○ ○○마을 농로포장공사	(주)○○건설	2021 0129	2021 0330	17,820	16,217	91	1		
46	2021	일반	○○과	○○ ○○ ○○골 농로포장공사	○○건설(주)	2021 0129	2021 0317	14,520	13,360	92	1		
47	2021	일반	○○ ○○과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구)	(주)○○○○	2021 0129	2021 0302	49,361	45,412	92	1	1	1
48	2021	일반	○○ ○○과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지구)	(주)○○○○	2021 0129	2021 0226	37,277	34,294	92	1	1	1
49	2021	일반	○○과	○○ ○○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주식회사 ○○건설	2021 0203	2021 0415	21,950	19,760	90	1		
50	2021	일반	○○과	○○ ○○(○○)마을 농로 정비공사	○○건설(주)	2021 0205	2021 0526	19,450	17,700	91	1		
51	2021	일반	○○과	○○ ○○마을 안길 우수관로 정비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1 0223	2021 0427	15,700	14,450	92	1		
52	2021	일반	○○과	○○ ○○,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주)○○	2021 0223	2021 0525	21,900	19,710	90	1		
53	2021	일반	○○과	군도○○호선(○○마을~○○마을) 차선도색 공사	(주)○○산업	2021 0305	2021 0322	19,340	17,500	90	1	1	1
54	2021	일반	○○과	지방도 ○○○○호선(○○지구) 차선도색공사 외 3개소	(주)○○산업	2021 0305	2021 0322	19,730	17,800	90	1	1	1
55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정비공사	○○건설주식 회사	2021 0322	2021 0419	20,500	18,500	90	1		1
56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측구 정비공사	(주)○○	2021 0322	2021 0415	21,200	19,100	90	1		1
57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갓길포장공사	(주)○○	2021 0322	2021 0407	21,400	19,300	90	1	1	1
58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도로 재포장공사	(주)○○	2021 0319	2021 0407	16,980	15,630	92	1	1	1
59	2021	일반	○○○ ○○과	안전속도 5030 30구간(○○,○○) 표지판 설치공사	○○건설	2021 0322	2021 0330	15,400	13,786	90	1		1
60	2021	일반	○○○ ○○과	안전속도 5030 30구간(○○,○○) 표지판 설치공사	(주)○○건설	2021 0326	2021 0409	19,500	17,381	89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61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종합건설(주)	2021 0406	2021 0804	17,690	16,100	91	1		1
62	2021	일반	○○과	○○리○○호선(○○지구) 외 1개소 재포장공사	(주)○○	2021 0406	2021 0420	16,250	14,950	92	1		1
63	2021	일반	○○과	노후현수막 지정계시대 보수공사(○○면 2개소)	(주)○○건설	2021 0406	2021 0428	19,000	17,100	90			1
64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토건	2021 0520	2021 0610	11,590	10,900	94	1		1
65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건설	2021 0524	2021 0610	21,790	19,700	90	1		1
66	2021	일반	○○과	2021년○○천(○○제)춘계하천 제방정비공사	○○토건(주)	2021 0521	2021 0617	11,660	11,000	94	1		1
67	2021	일반	○○과	2021년○○제춘계하천제방정비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2021 0521	2021 0617	14,060	13,000	92	1		1
68	2021	일반	○○과	2021년○○천등6개○○계하천 제방 정비사업	○○종합건설(주)	2021 0521	2021 0618	16,370	15,100	92	1		1
69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건설	2021 0521	2021 0610	21,090	19,000	90	1		1
70	2021	일반	○○과	2021년○○천(○○제)춘계하천 제방정비사업	(주)○○○○	2021 0521	2021 0616	18,080	16,500	91	1		1
71	2021	일반	○○과	2021년○○천(○○~○○)춘계 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1 0521	2021 0616	21,470	19,400	90	1		1
72	2021	일반	○○과	2021년○○천춘계하천제방정비 공사	○○개발(주)	2021 0521	2021 0617	19,590	17,700	90	1		1
73	2021	일반	○○과	2021년○○천춘계하천제방정비 사업	(주)○○산업	2021 0521	2021 0615	19,410	17,500	90	1		1
74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건설	2021 0521	2021 0611	21,030	19,000	90	1		1
75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건설(주)	2021 0521	2021 0610	17,050	15,600	91	1		1
76	2021	일반	○○과	2021년○○○○천외1개소춘계 하천제방정비공사	(주)○○건설	2021 0521	2021 0616	16,840	15,500	92	1		1
77	2021	일반	○○과	2021년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면○○천,○○○천)	(주)○○건설	2021 0521	2021 0615	19,350	17,500	90	1		1
78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제 춘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주)○○건설	2021 0524	2021 0617	21,260	19,200	90	1		1
79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0524	2021 0617	19,090	17,200	90	1		1
80	2021	일반	○○과	2021년○○천(○○제)춘계하천 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0524	2021 0616	20,980	18,900	90	1		1
81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1 0524	2021 0618	21,890	19,800	90	1		1
82	2021	일반	○○과	2021년○○천(○○지구)춘계하 천제방정비사업	(주)○○종합건설	2021 0520	2021 0615	11,580	10,900	94	1		1
83	2021	일반	○○과	2021년○○천춘계하천제방정비 사업	○○조경(주)	2021 0521	2021 0617	18,340	16,700	91	1		1
84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산업	2021 0521	2021 0610	18,100	16,500	91	1		1
85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 하천제방정비공사	(주)○○	2021 0525	2021 0616	18,490	16,900	91	1		1
86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춘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	2021 0525	2021 0616	21,750	19,600	90	1		1
87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건설	2021 0525	2021 0610	21,560	19,500	90	1		1
88	2021	일반	○○과	2021년 ○○강(○○○○○○○) 생태공원정비사업 시행	(주)○○토건	2021 0525	2021 0610	20,370	18,400	90	1		1
89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건설(주)	2021 0525	2021 0610	21,760	19,600	90	1		1
90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춘계하천제방정비공사	○○건설(주)	2021 0520	2021 0616	19,500	17,600	90	1		1
91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춘계하천제방정비공사	○○종합건설(주)	2021 0527	2021 0618	21,500	19,400	90	1		1
92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춘계하천제방 정비공사	○○건설(주)	2021 0527	2021 0616	21,950	19,800	90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93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건설(주)	2021 0527	2021 0618	18,600	17,000	91	1		1
94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시행	○○건설 주식회사	2021 0527	2021 0625	15,530	14,300	92	1		1
95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시행	(주)○○건설	2021 0527	2021 0611	12,000	11,200	93	1		1
96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토건(주)	2021 0528	2021 0629	11,700	11,000	94	1		1
97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시행	○○건설(주)	2021 0602	2021 0629	16,500	15,200	92	1		1
98	2021	일반	○○과	2021년 저수지 제당 자갈부설공사(○○지구) 시행	(주)○○건설	2021 0601	2021 0628	14,800	13,700	93	1		1
99	2021	일반	○○ ○○과	2021년 주요등산로 풀베기사업(○○지구)	(주)○○○○	2021 0604	2021 0625	21,940	19,800	90	1		
100	2021	일반	○○ ○○과	2021년 주요 등산로 풀베기사업(○○지구)	(주)○○○○	2021 0604	2021 0625	21,420	19,300	90	1	1	
101	2021	일반	○○ ○○과	2021년 주요 등산로 풀베기사업(○○지구)	(주)○○○○	2021 0604	2021 0625	21,460	19,400	90	1	1	
102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	(주)○○○○	2021 0608	2021 0628	21,820	19,700	90	1	1	
103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	(주)○○○○	2021 0608	2021 0628	18,940	17,300	91	1	1	
104	2021	일반	○○ ○○과	○○면 ○○마을 앞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조경(주)	2021 0707	2021 0728	20,000	18,000	90	1		1
105	2021	일반	○○ ○○과	○○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건설	2021 0707	2021 0721	19,833	17,900	90	1		1
106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1 0719	2021 0830	21,736	19,600	90	1	1	
107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1 0719	2021 0830	21,746	19,600	90	1	1	
108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1 0719	2021 0830	17,426	15,600	90	1	1	
109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2차)	(주)○○○	2021 0809	2021 0906	16,945	15,500	91	1		
110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생태숲 조림지 풀베기 사업(2차)	(주)○○○○	2021 0809	2021 0906	16,546	15,300	92	1		
111	2021	일반	○○ ○○과	2021년 주요등산로 풀베기사업 2차(○○○지구)	(주)○○○	2021 0809	2021 0906	17,730	16,200	91	1		
112	2021	일반	○○ ○○과	2021년 주요 등산로 풀베기사업 2차(○○지구)	(주)○○개발	2021 0809	2021 0824	17,260	15,800	92	1		
113	2021	일반	○○과	○○ ○○마을 세천 정비 공사	○○건설주식회사	2021 0901	2021 1123	13,200	12,300	93	1		
114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개발(주)	2021 0902	2021 1015	17,300	15,800	91	1		1
115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횡배수관 정비공사	○○종합건설(주)	2021 0901	2021 1008	12,400	11,600	94	1		1
116	2021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1 0902	2021 1105	13,100	12,200	93	1		1
117	2021	일반	○○과	○○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주)○○건설	2021 0901	2021 0913	14,800	13,700	93	1		
118	2021	일반	○○과	○○ ○○농로 개설공사	○○건설	2021 0831	2021 1222	14,570	13,500	93	1		
119	2021	일반	○○과	○○ ○○○구 배수로 정비공사	(주)○○	2021 0903	2021 1012	17,300	15,800	91	1		
120	2021	일반	○○과	○○○○ ○○○골 세천 호안 정비공사	○○건설(주)	2021 0906	2021 1105	17,810	16,300	92	1		
121	2021	일반	○○과	○○ ○○ 농로 개설공사	○○종합건설(주)	2021 0907	2021 1221	19,550	17,600	90	1		
122	2021	일반	○○과	○○ ○○ 새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산업개발(주)	2021 0907	2021 1227	21,800	19,700	90	1		
123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2차)	(주)○○○	2021 0906	2021 0924	21,307	19,200	90	1		
124	2021	일반	○○ ○○과	2021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2차)	(주)○○○○	2021 0908	2021 0929	22,154	19,278	87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125	2021	일반	○○과	○○○○ 용수로 교체공사	○○건설(주)	20210909	20211228	21,090	19,000	90	1		
126	2021	일반	○○과	○○○○ 배수로 정비공사	(주)○○건설	20210909	20211214	20,640	19,600	95	1		
127	2021	일반	○○과	2021년 ○○○○○○ ○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조경	20210914	20210928	10,800	10,200	94	1	1	1
128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외 1개소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조경	20210914	20210928	10,760	10,200	95	1	1	1
129	2021	일반	○○과	○○○○마을 농로 측구 용수로 설치공사	(주)○○건설	20210914	20211213	20,990	18,900	90	1		
130	2021	일반	○○과	○○○○지구 용배수로 확장공사	(주)○○	20210914	20211224	21,610	19,500	90	1		
131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주)○○○○○○	20211014	20211107	16,000	14,800	93	1	1	1
132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주)○○○○○○	20211015	20211107	21,800	19,700	90	1	1	1
133	2021	일반	○○과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주)○○○○○○	20211015	20211107	20,800	18,800	90	1	1	1
134	2021	일반	○○과	○○ 농공단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공사	(주)○○건설	20211014	20211116	14,900	14,200	95	1		1
135	2021	일반	○○과	○○○○ 농공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공사	주식회사 ○○	20211117	20211210	21,950	20,800	95	1		
136	2021	일반	○○과	지방도○○○○호선 등 22개소 교통안전표지 정비공사	(주)○○건설	20211014	20211102	19,800	18,000	91			1
137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	20211022	20211108	20,920	19,950	95	1		1
138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식회사 ○○건설	20211022	20211111	21,120	19,950	94	1		1
139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건설(주)	20211022	20211115	18,390	18,000	98	1		1
140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외 1개소 추계 하천제방정비공사	(주)○○건설	20211022	20211116	16,000	15,600	98	1		1
141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토건(주)	20211022	20211112	13,230	13,000	98	1		1
142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종합건설 (주)	20211022	20211115	17,660	17,300	98	1		1
143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조경 (주)	20211022	20211116	17,110	16,700	98	1		1
144	2021	일반	○○과	2021년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면 ○○천, ○○○천)	(주)○○	20211022	20211112	18,350	17,900	98	1		1
145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공사	○○토건 주식회사	20211025	20211112	10,550	10,400	99	1		1
146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제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	20211025	20211112	20,520	19,950	97	1		1
147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11025	20211119	20,800	19,950	96	1		1
148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조경	20211025	20211112	20,730	19,950	96	1		1
149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하천제방정비공사	(주)○○○○	20211025	20211117	17,570	17,200	98	1		1
150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식회사 ○○건설	20211025	20211119	11,770	11,600	99	1		1
151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하천제방정비공사	○○개발(주)	20211025	20211112	20,200	19,950	99	1		1
152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11025	20211105	21,180	19,950	94	1		1
153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개발(주)	20211025	20211117	20,330	19,950	98	1		1
154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종합건설 (주)	20211025	20211116	21,410	19,950	93	1		1
155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주)○○건설	20211022	20211112	18,910	19,950	105	1		1
156	2021	일반	○○과	○○○○ 농로 확포장공사	○○건설(주)	20211026	20220422	18,910	18,000	95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157	2021	일반	○○○○과	2021년 ○○천(○○지구)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1026	2021 1112	11,620	11,400	98	1		1
158	2021	일반	○○○○과	2021년 ○○천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산업개발(주)	2021 1026	2021 1112	18,840	18,500	98	1		1
159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 하천제방정비공사	주식회사 ○○건설	2021 1026	2021 1112	18,030	17,700	98	1		1
160	2021	일반	○○○○과	2021년 ○○천 등 6개소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1 1026	2021 1112	16,600	16,200	98	1		1
161	2021	일반	○○○○과	2021년 ○○(○○○○)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개발(주)	2021 1025	2021 1109	17,310	17,000	98	1		1
162	2021	일반	○○과	○○○○마을 주택 뒤 석축쌓기공사	○○토건(주)	2021 1103	2021 1223	11,300	10,900	96	1		
163	2021	일반	○○과	○○○○○○ 세천정비공사	(주)○○건설	2021 1105	2021 1220	14,600	14,000	96	1		
164	2021	일반	○○과	○○○○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1 1103	2021 1216	20,580	19,800	96	1		
165	2021	일반	○○과	○○○○마을 세천 정비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1 1104	2021 1202	18,540	17,800	96	1		
166	2021	일반	○○과	○○○○마을 안길 포장공사	(주)○○	2021 1104	2021 1202	21,880	20,000	91	1		
167	2021	일반	○○과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건설(주)	2021 1105	2022 0405	13,100	12,600	96	1		
168	2021	일반	○○과	○○○○ 세천 정비공사	(주)○○산업	2021 1105	2021 1227	19,450	18,700	96	1		
169	2021	일반	○○○○과	2021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1102	2021 1117	11,260	11,100	99	1		1
170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공사	(주)○○○○	2021 1103	2021 1117	18,980	18,600	98	1		1
171	2021	일반	○○○○과	2021년 ○○천(○○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1101	2021 1115	18,490	18,100	98	1		1
172	2021	일반	○○과	지정 군도○○호선 재포장공사	(주)○○	2021 1207	2021 1222	19,700	18,200	92	1		1
173	2021	일반	○○과	의령 군도○○호선(○○지구)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1 1208	2021 1222	19,500	18,000	92	1		1
174	2021	일반	○○○○과	2021년 하반기 노거수 정비사업	주식회사 ○○	2021 1214	2021 1223	17,000	15,700	92	1		
175	2021	일반	○○○○과	2021년 하반기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주)○○○○○○	2021 1214	2021 1223	16,070	11,971	74	1		
176	2021	일반	○○○○과	○○제 주변 정비사업 시행	○○건설 주식회사	2021 1220	2021 1224	21,700	19,900	92	1		1
177	2021	일반	○○○○과	○○제 주변 정비사업	(주)○○○○	2021 1220	2022 0118	21,000	19,900	95	1		1
178	2021	일반	○○○○과	○○제 주변 정비사업	(주)○○	2021 1216	2021 1224	21,700	19,900	92	1		1
179	2021	일반	○○○○과	○○제 주변 정비사업	(주)○○○○	2021 1215	2022 0125	20,800	19,500	94	1		1
180	2022	일반	○○과	○○○○들 노후 용수관로 정비공사	○○개발(주)	2022 0217	2022 1025	21,380	19,300	90	1		
181	2022	일반	○○과	○○○○마을 농로 개설공사	○○토건(주)	2022 0216	2022 0811	18,660	17,000	91	1		
182	2022	일반	○○과	○○○○마을 농로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217	2022 1115	17,930	16,400	91	1		
183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217	2022 0329	19,690	17,800	90	1		
184	2022	일반	○○과	○○○○○○ 농로 개설공사	○○건설(주)	2022 0217	2022 0524	18,890	17,100	91	1		
185	2022	일반	○○과	○○○○지구 노후 용수로 교체공사	○○토건(주)	2022 0218	2022 0321	15,800	14,600	92	1		
186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218	2022 0418	16,020	14,800	92	1		
187	2022	일반	○○과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1	2022 0727	19,740	17,800	90	1	1	
188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1	2022 0328	14,720	13,600	92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189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1	2022 0328	20,000	18,000	90	1	1	
190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1	2022 0328	13,660	12,800	94	1	1	
191	2022	일반	○○과	○○○○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1	2022 0509	13,050	12,200	93	1	1	
192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1	2022 0509	19,390	17,500	90	1	1	
193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1	2022 0328	14,810	13,700	93	1	1	
194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1	2022 0415	17,260	15,800	92	1	1	
195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1	2022 0328	13,650	12,700	93	1	1	
196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 호안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218	2022 0323	19,120	17,300	90	1		
197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217	2022 0523	11,200	10,600	95	1		
198	2022	일반	○○과	○○○○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주)○○건설	2022 0221	2022 1223	12,830	12,000	94	1		
199	2022	일반	○○과	○○○○산 농로 포장공사	○○○○개발(주)	2022 0222	2022 0407	17,830	16,300	91	1		
200	2022	일반	○○과	○○○○마을 사면 정비공사	○○토건(주)	2022 0222	2022 0426	21,940	19,800	90	1		
201	2022	일반	○○과	○○○○ 용수로 교체공사	주식회사 ○○건설	2022 0223	2022 0318	17,860	16,500	92	1		
202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2 0223	2022 0408	18,890	17,100	91	1	1	
203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223	2022 0421	14,910	13,800	93	1		
204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2 0223	2022 0408	14,140	13,100	93	1	1	
205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 사면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222	2022 0329	18,600	17,000	91	1		
206	2022	일반	○○과	○○○○ 윗마을 세천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222	2022 0328	18,010	16,400	91	1		
207	2022	일반	○○과	○○○○ 세천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223	2022 0405	13,515	12,600	93	1		
208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3	2022 0325	13,060	12,300	94	1	1	
209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3	2022 0328	13,650	12,900	95	1	1	
210	2022	일반	○○과	○○○○지구 세천 정비공사	○○종합건설(주)	2022 0223	2022 0425	18,410	16,800	91	1		
211	2022	일반	○○과	○○○○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종합건설(주)	2022 0217	2022 0323	14,430	13,300	92	1		
212	2022	일반	○○○○과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사업(○○면)	○○조경(주)	2022 0216	2022 0307	17,741	16,200	91	1		
213	2022	일반	○○○○과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사업(○○○)	(주)○○○○	2022 0222	2022 0318	20,778	18,800	90	1		
214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5	2022 0328	12,967	12,200	94		1	
215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225	2022 0328	15,020	13,900	93	1		
216	2022	일반	○○과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0225	2022 0328	13,800	13,000	94	1	1	
217	2022	일반	○○과	○○○○ 세천 정비공사	○○토건(주)	2022 0314	2022 0414	20,810	18,800	90	1		
218	2022	일반	○○과	○○○○ 세천 정비공사	(주)○○산업개발	2022 0314	2022 0406	16,780	15,500	92	1		
219	2022	일반	○○○○과	○○○○천 ○○삼거리 호안정비공사	○○건설(주)	2022 0314	2022 0425	20,040	18,100	90	1		1
220	2022	일반	○○○○과	○○○○지구 하상정비공사	(주)○○토건	2022 0314	2022 0412	19,930	18,200	91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221	2022	일반	○○ ○○과	○○○○천 석축 기초보강공사	○○토건(주)	2022 0315	2022 0425	21,400	19,300	90	1		1
222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주)○○건설	2022 0315	2022 0329	17,500	16,100	92	1		1
223	2022	일반	○○과	○○○○마을 석축보강공사	(주)○○건설	2022 0315	2022 0607	21,860	19,700	90			
224	2022	일반	○○ ○○과	○○천 준설 및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314	2022 0413	19,130	17,500	91	1		1
225	2022	일반	○○ ○○과	○○ 하천(○○지구) 유지관리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2 0315	2022 0511	21,440	19,300	90	1		1
226	2022	일반	○○ ○○과	○○○○천(○○지구) 유지관리사업	○○건설(주)	2022 0315	2022 0515	19,950	18,200	91	1		1
227	2022	일반	○○ ○○과	○○○○천(○○지구) 유지관리사업	○○종합건설 (주)	2022 0314	2022 0428	21,850	19,700	90	1		1
228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316	2022 0412	22,000	19,800	90	1	1	
229	2022	일반	○○과	○○○○마을 안길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316	2022 0412	15,620	14,400	92	1	1	
230	2022	일반	○○과	○○○○마을 세천정비공사	(주)○○건설	2022 0318	2022 0418	18,219	16,800	92	1		
231	2022	일반	○○ ○○과	○○○○골천 호안정비공사	(주)○○건설	2022 0315	2022 0413	20,000	18,000	90	1		1
232	2022	일반	○○ ○○과	○○소하천 하상 호안정비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315	2022 0419	15,100	13,900	92	1	1	1
233	2022	일반	○○ ○○과	○○천(○○마을) 호안정비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315	2022 0411	21,710	19,600	90	1	1	1
234	2022	일반	○○ ○○과	교통지장 가로수 전정사업(○○면)	○○건설 주식회사	2022 0315	2022 0331	21,401	19,300	90			
235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주)○○	2022 0316	2022 0413	20,000	18,000	90	1		1
236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주)○○○○ 산업	2022 0316	2022 0412	17,900	16,500	92	1		1
237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2 0318	2022 0614	21,800	19,700	90	1	1	1
238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2 0318	2022 0614	21,700	19,600	90	1	1	1
239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	2022 0318	2022 0614	20,600	18,600	90	1	1	1
240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2022 0318	2022 0614	20,000	18,000	90	1	1	1
241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2022 0318	2022 0614	16,200	14,900	92	1	1	1
242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사업	(주)○○○○	2022 0318	2022 0614	17,700	16,300	92	1	1	1
243	2022	일반	○○ ○○과	○○○○천 호안정비공사	○○개발(주)	2022 0314	2022 0426	21,930	19,800	90	1		1
244	2022	일반	○○ ○○과	○○○○천 하천지구 호안정비공사	○○산업개발 (주)	2022 0316	2022 0515	20,190	18,200	90	1		1
245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주)○○건설	2022 0316	2022 0421	22,000	19,800	90	1		1
246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건설(주)	2022 0316	2022 0526	22,000	19,800	90	1		1
247	2022	일반	○○ ○○과	○○○○천 호안정비공사	○○건설(주)	2022 0316	2022 0426	20,500	18,500	90	1		1
248	2022	일반	○○ ○○과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건설주식 회사	2022 0314	2022 0511	20,000	18,000	90	1		1
249	2022	일반	○○ ○○과	○○지구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건설조경	2022 0321	2022 0503	18,010	16,600	92	1		1
250	2022	일반	○○ ○○과	○○지구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주)○○건설	2022 0316	2022 0513	21,800	19,700	90	1		1
251	2022	일반	○○ ○○과	○○지구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주)○○건설	2022 0315	2022 0520	21,030	19,000	90	1		1
252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재포장공사	(주)○○	2022 0408	2022 0511	19,000	17,500	92	1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253	2022	일반	○○과	○○ 리도○○호선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주)○○	2022 0408	2022 0511	15,700	14,500	92	1	1	1
254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411	2022 0520	14,660	13,800	94	1	1	1
255	2022	일반	○○과	○○초등학교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2 0411	2022 0607	17,470	16,100	92		1	1
256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411	2022 0620	16,580	15,300	92	1	1	1
257	2022	일반	○○과	○○ 리도○○호선(○○지구) 등 2개소 차선도색공사	(주)○○건설	2022 0418	2022 0608	13,390	12,600	94	1		1
258	2022	일반	○○과	○○ 면도○○호선(○○지구) 차선도색공사	○○○○○○	2022 0422	2022 0518	11,510	10,900	95	1		1
259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주)○○	2022 0420	2022 0816	17,700	16,300	92	1		
260	2022	일반	○○과	○○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주)○○건설	2022 0425	2022 0818	17,900	16,500	92	1		
261	2022	일반	○○ ○○과	○○ ○○○씨 총택 안채 보수공사	○○종합건설 (주)	2022 0506	2022 0628	17,680	16,300	92			1
262	2022	일반	○○ ○○과	○○ ○○제 ○○ 사랑채 지붕보수공사	(주)○○	2022 0510	2022 0810	60,010	52,874	88			1
263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건설	2022 0608	2022 0621	18,670	17,000	91	1		1
264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여배제) 준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식회사 ○○건설	2022 0609	2022 0624	20,070	18,100	90	1		1
265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식 회사	2022 0609	2022 0620	19,280	17,600	91	1		1
266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	2022 0609	2022 0624	21,500	19,400	90	1		1
267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2 0609	2022 0622	21,920	19,800	90	1		1
268	2022	일반	○○ ○○과	2022년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면 ○○천, ○○○천)	(주)○○	2022 0609	2022 0622	19,400	17,700	91	1		1
269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건설	2022 0609	2022 0628	21,230	19,200	90	1		1
270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2 0609	2022 0624	12,400	11,600	94	1		1
271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지구)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0609	2022 0627	12,280	11,500	94	1		1
272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0608	2022 0623	19,550	17,800	91	1		1
273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준계하천제방 정비공사	○○건설(주)	2022 0608	2022 0621	18,080	16,500	91	1		1
274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식 회사	2022 0608	2022 0621	11,860	11,200	94	1		1
275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등6개소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	2022 0609	2022 0706	17,370	16,000	92	1		1
276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2 0610	2022 0621	21,690	19,600	90	1		1
277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건설	2022 0610	2022 0622	21,810	19,700	90	1		1
278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2 0613	2022 0627	18,400	16,600	90	1		1
279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준계하천제방 정비공사	○○건설	2022 0613	2022 0628	11,160	10,500	94	1		1
280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2 0610	2022 0622	21,530	19,400	90	1		1
281	2022	일반	○○ ○○과	2022년 ○○ ○○천 외 1개소 준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	2022 0610	2022 0628	16,770	15,500	92	1		1
282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0609	2022 0622	13,990	13,100	94	1		1
283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준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 ○	2022 0609	2022 0623	13,990	17,400	124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284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춘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0614	2022 0627	18,570	16,900	91	1		1
285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주)○○종합 건설	2022 0613	2022 1013	21,350	19,500	91	1		1
286	2022	일반	○○과	○○ ○○ 우수관로 정비공사	○○토건(주)	2022 0614	2022 0902	21,810	19,700	90	1		
287	2022	일반	○○과	○○ ○○○ 안길 보수공사	○○건설(주)	2022 0614	2022 0809	16,210	15,000	93	1		
288	2022	일반	○○과	○○ ○○마을 버무골 세천 보수공사	(주)○○	2022 0614	2022 0722	18,580	17,000	91	1		
289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주)○○산업 개발	2022 0614	2022 1108	21,630	19,500	90	1		
290	2022	일반	○○과	○○ 리도○○호선(○○지구)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713	18,270	16,700	91	1	1	1
291	2022	일반	○○과	○○ 면도○○호선(○○지구)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729	14,330	13,400	94	1	1	1
292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714	21,630	19,500	90	1	1	
293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908	20,640	18,600	90	1	1	
294	2022	일반	○○과	○○ ○○ 안길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729	12,820	12,100	94	1	1	
295	2022	일반	○○과	○○ 면도○○호선(○○) 아스콘 포장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2 0614	2022 0822	11,390	10,800	95	1	1	1
296	2022	일반	○○과	○○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토건(주)	2022 0615	2022 1130	21,637	19,500	90	1		
297	2022	일반	○○과	○○ ○○ 안길 선형개량공사	(주)○○건설	2022 0615	2022 0729	14,020	13,100	93	1		
298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포장공사	(주)○○	2022 0616	2022 0714	14,980	14,000	93	1	1	
299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주)○○	2022 0616	2022 0714	17,840	16,500	92	1	1	
300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 재포장공사	(주)○○	2022 0615	2022 0704	13,200	12,300	93	1	1	
301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개발(주)	2022 0620	2022 0627	21,560	19,500	90	1		1
302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춘계하천제방 정비사업	○○토건(주)	2022 0620	2022 0628	21,350	19,300	90	1		1
303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춘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2 0620	2022 0628	21,600	19,500	90	1		1
304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주)○○	2022 0620	2022 0714	18,160	16,600	91	1	1	
305	2022	일반	○○과	○○ ○○ 큰골 아스콘덧씌우기	(주)○○	2022 0620	2022 0714	12,860	12,100	94	1	1	
306	2022	일반	○○ ○○과	2022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주)○○○○	2022 0615	2022 0624	17,358	16,000	92	1		
307	2022	일반	○○ ○○과	2022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주)○○종합 산업	2022 0616	2022 0629	20,856	18,800	90	1		
308	2022	일반	○○ ○○과	2022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 시행 및 계약의뢰	(주)○○	2022 0829	2022 0913	17,358	16,000	92	1		
309	2022	일반	○○ ○○과	2022년 ○○○지구 임도시설 풀베기사업(2차) 시행 및 계약의뢰	주식회사 ○○	2022 0829	2022 0916	20,856	18,800	90	1		
310	2022	일반	○○과	○○ ○○ ○○곡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2 1107	2022 1215	14,970	14,100	94	1		
311	2022	일반	○○과	○○ ○○○지구(○○) 세천 정비공사	(주)○○	2022 1107	2022 1206	21,900	19,800	90	1		
312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2 1107	2022 1215	12,600	11,900	94	1		
313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2 1107	2022 1215	13,400	12,600	94	1	1	
314	2022	일반	○○과	○○ ○○마을 안길 포장공사	○○○○(주)	2022 1107	2022 1215	16,560	15,300	92	1	1	
315	2022	일반	○○과	○○ ○○○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주)○○	2022 1108	2022 1205	14,800	14,000	95	1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316	2022	일반	○○과	○○ ○○ 안길 재포장공사	주식회사 ○○○○	2022 1109	2022 1226	18,450	17,000	92	1	1	
317	2022	일반	○○과	○○ ○○ 안길 포장공사	주식회사 ○○○○	2022 1109	2022 1226	14,400	13,600	94	1	1	
318	2022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재포장공사	(주)○○	2022 1109	2022 1205	13,580	12,800	94	1	1	1
319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지구)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1111	2022 1123	12,500	11,800	94	1		1
320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추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식회사 ○○건설	2022 1111	2022 1123	20,300	18,300	90	1		1
321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조경 (주)	2022 1111	2022 1124	19,920	18,300	92	1		1
322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토건	2022 1111	2022 1124	21,600	19,500	90	1		1
323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개발(주)	2022 1114	2022 1129	21,900	19,800	90	1		1
324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	2022 1114	2022 1128	12,100	11,400	94	1		1
325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추계하천제방 정비공사	○○건설(주)	2022 1114	2022 1122	11,300	10,700	95	1		1
326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식회사 ○○종합건설	2022 1114	2022 1122	18,500	17,100	92	1		1
327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1114	2022 1123	20,100	18,100	90	1		1
328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공사	○○건설(주)	2022 1114	2022 1124	18,900	17,400	92	1		1
329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 ○	2022 1114	2022 1123	19,300	17,800	92	1		1
330	2022	일반	○○ ○○과	2022년 ○○ ○○천 외 1개소 추계하천제방 정비공사	(주)○○	2022 1114	2022 1123	16,600	15,300	92	1		1
331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2 1114	2022 1123	21,800	19,700	90	1		1
332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토건(주)	2022 1114	2022 1123	21,700	19,600	90	1		1
333	2022	일반	○○ ○○과	2022년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면 ○○천, ○○○천)	(주)○○산업	2022 1114	2022 1124	19,900	18,100	91	1		1
334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등6개소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	2022 1114	2022 1123	17,200	15,900	92	1		1
335	2022	일반	○○ ○○과	2022년 추계 ○○강(○○○○○○) 생태공원 정비사업	○○○○(주)	2022 1114	2022 1124	14,800	14,000	95	1		1
336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2 1114	2022 1124	20,400	18,400	90	1		1
337	2022	일반	○○ ○○과	2022년 ○○천(○○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건설(주)	2022 1115	2022 1123	18,500	17,100	92	1		1
338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	2022 1115	2022 1124	21,700	19,600	90	1		1
339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주)○○	2022 1115	2022 1123	13,900	13,100	94	1		1
340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2 1115	2022 1128	12,300	11,600	94	1		1
341	2022	일반	○○ ○○과	2022년 ○○(정암외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2 1115	2022 1125	18,900	17,400	92	1		1
342	2022	일반	○○ ○○과	2022년 ○○천 추계하천제방 정비사업	○○개발(주)	2022 1116	2022 1124	21,900	19,800	90	1		1
343	2022	일반	○○ ○○과	○○ ○○ ○○길 가로수 전정사업(○○제)	○○ 주식회사	2022 1114	2022 1202	10,904	10,300	94	1		
344	2022	일반	○○ ○○과	2022년 생활지장 가로수 전정사업(○○면)	○○건설 주식회사	2022 1114	2022 1206	16,600	15,300	92	1		
345	2022	일반	○○ ○○과	2022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식회사 ○○○○	2022 1116	2022 1129	21,400	19,300	90	1		1
346	2023	일반	○○ ○○과	(명시)도시계획도로(○○○-○○ 호선) 페슬레이트 철거공사(○○○○○ ○-○)	○○○○○업 (주)	2023 0201	2023 0327	11,600	10,910	94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347	2023	일반	○○ ○○과	(명시)도시계획도로(○○○-○○호선) 지장물 철거공사(○○○○○ ○-○)	○○○○○○(주)	2023 0201	2023 0327	7,350	7,100	97			1
348	2023	일반	○○ ○○과	○○ ○○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3 0227	2023 0429	20,300	18,270	90	1		1
349	2023	일반	○○ ○○과	○○ ○○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건설(주)	2023 0227	2023 0430	20,500	18,450	90	1		1
350	2023	일반	○○과	○○ ○○마을 농로 포장공사	(주)○○	2023 0309	2023 0909	21,400	19,260	90	1		
351	2023	일반	○○과	○○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3 0309	2023 0612	15,610	14,370	92	1		
352	2023	일반	○○과	○○ 리도 ○○○호선(○○마을)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3 0310	2023 0329	14,900	14,100	95	1		1
353	2023	일반	○○ ○○과	○○ ○○천 ○○지구 하상정비공사	○○토건(주)	2023 0310	2023 0407	20,000	18,000	90	1		1
354	2023	일반	○○ ○○과	○○ ○○천 하상정비사업	(주)○○건설	2023 0310	2023 0410	19,400	17,850	92	1		1
355	2023	일반	○○과	○○ ○○2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주)○○○○	2023 0317	2023 0614	21,200	19,080	90	1		
356	2023	일반	○○과	○○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주)○○○○	2023 0321	2023 0618	21,980	19,790	90	1		
357	2023	일반	○○과	○○ 군도○호선(○○지구)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3 0322	2023 0411	15,500	14,260	92	1		1
358	2023	일반	○○과	○○ ○○마을 안길(잔여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주)○○	2023 0322	2023 0413	21,220	19,100	90	1		
359	2023	일반	○○과	(사고이월)○○ ○○○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건설(주)	2023 0327	2023 0525	18,200	16,750	92	1		
360	2023	일반	○○과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주)	2023 0327	2023 0529	17,210	15,840	92	1		
361	2023	일반	○○과	○○ ○○ ○○골 농로 포장공사	(주)○○종합 건설	2023 0327	2023 0627	10,440	9,820	94	1		1
362	2023	일반	○○과	○○ ○○ ○○○골 안길 정비공사	(주)○○산업 개발	2023 0331	2023 0519	14,354	13,500	94	1		
363	2023	일반	○○과	○○○○ ○○마을 안길 정비공사	(주)○○건설	2023 0331	2023 1002	16,300	15,000	92	1		
364	2023	일반	○○과	(명시이월)○○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	2023 0405	2023 0704	15,600	14,360	92	1		
365	2023	일반	○○과	○○ ○○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주)○○	2023 0405	2023 0708	19,990	18,400	92	1		
366	2023	일반	○○과	○○ ○○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건설(주)	2023 0405	2023 0703	16,270	14,970	92	1		
367	2023	일반	○○ ○○과	○○ ○○리 은행나무 보호관리(상시관리) 사업	(주)○○○○ ○○	2023 0407	2023 1009	17,800	16,380	92			1
368	2023	일반	○○ ○○과	○○ ○○리 소나무 보호관리(상시관리) 사업	(주)○○○○ ○○	2023 0407	2023 1003	16,200	14,910	92			1
369	2023	일반	○○과	○○ ○○ 농로 포장공사	(주)○○	2023 0413	2023 1013	21,360	19,230	90	1		
370	2023	일반	○○과	○○ ○○삼거리 농로 포장공사	○○○○(주)	2023 0414	2023 0719	14,200	13,350	94	1		1
371	2023	일반	○○과	○○ ○○마을 ○○들 농로 재포장공사	(주)○○○○	2023 0417	2023 0715	14,180	13,330	94	1		1
372	2023	일반	○○ ○○과	제48회 ○○○○○○ 간선 설치 공사	○○○○	2023 0418	2023 0428	21,900	19,710	90	1	1	1
373	2023	일반	○○ ○○과	제48회 ○○○○○○ 축등 설치	(주)○○○○	2023 0418	2023 0428	21,700	19,530	90	1		1
374	2023	일반	○○ ○○과	제48회 ○○○○○○ 축제장 라인조명 설치공사	○○○○	2023 0419	2023 0428	15,020	13,820	92	1	1	1
375	2023	일반	○○ ○○과	제48회 ○○○○○○ 축제장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	2023 0417	2023 0428	21,900	19,710	90	1		1
376	2023	일반	○○과	○○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공사	(주)○○산업	2023 0424	2023 0626	17,340	15,960	92			1
377	2020	특별	○○ ○○과	2020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주)○○건설	2020 1029	2020 1111	15,900	14,628	92	1		1
378	2020	특별	○○ ○○과	2020년 ○○(○○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시행	○○토건(주)	2020 1103	2020 1110	10,900	10,137	93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379	2020	특별	○○ ○○과	국가하천 ○○(○○제) 유수지장목 제거공사	(주)○○건설	2020 1109	2020 1125	16,300	14,996	92	1		1
380	2020	특별	○○ ○○과	국가하천(○○제) 유수지장목 제거공사	(주)○○	2020 1109	2020 1125	16,360	15,051	92	1		1
381	2020	특별	○○ ○○과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토건	2020 1113	2020 1204	15,800	14,536	92	1		1
382	2020	특별	○○ ○○과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토건(주)	2020 1113	2020 1225	15,870	14,600	92	1		1
383	2020	특별	○○ ○○과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건설	2020 1126	2020 1211	15,300	14,076	92	1		1
384	2020	특별	○○ ○○과	○○ ○○○제 외 1개소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건설주식 회사	2020 1127	2020 1211	11,960	11,123	93	1		1
385	2020	특별	○○ ○○과	○○ ○○○제 외 1개소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건설	2020 1127	2020 1211	13,490	12,545	93	1		1
386	2020	특별	○○ ○○과	○○ ○○○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건설	2020 1203	2020 1211	15,570	14,324	92	1		1
387	2020	특별	○○ ○○과	○○ ○○○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식회사 ○○건설	2020 1203	2020 1211	15,260	14,039	92	1		1
388	2020	특별	○○ ○○과	○○ ○○○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주)○○○○	2020 1221	2020 1228	15,550	13,995	90	1		1
389	2020	특별	○○ ○○과	○○ ○○○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조경 (주)	2020 1221	2020 1228	15,600	14,040	90	1		1
390	2021	특별	○○ ○○과	○○천 ○○○지구 외 2개소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주)	2021 0322	2021 0414	21,000	19,320	92	1		1
391	2021	특별	○○ ○○과	○○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조경 (주)	2021 0322	2021 0329	20,000	18,400	92	1		1
392	2021	특별	○○ ○○과	○○천 ○○○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식회사 ○○건설	2021 0330	2021 0412	19,580	18,010	92	1		1
393	2021	특별	○○ ○○과	○○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공사	○○건설(주)	2021 0331	2021 0412	20,000	18,400	92	1		1
394	2021	특별	○○ ○○과	2021년 ○○○제(○○○○○○○) 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1 0908	2021 0923	11,290	10,400	92	1		1
395	2021	특별	○○ ○○과	2021년 ○○○제 하천제방정비사업	○○개발(주)	2021 0908	2021 0927	14,650	13,500	92	1		1
396	2021	특별	○○ ○○과	2021년 ○○○○○○ 1구간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1 0909	2021 0927	13,240	12,200	92	1		1
397	2021	특별	○○ ○○과	2021년 ○○○○○○ 2구간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종합건설 (주)	2021 0909	2021 1001	14,310	13,200	92	1		1
398	2021	특별	○○ ○○과	2021년 ○○○소하천 추계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0909	2021 0923	14,530	13,400	92	1		1
399	2021	특별	○○ ○○과	2021년 ○○○제 하천제방정비사업	(주)○○○○	2021 0910	2021 0924	20,060	18,300	91	1		1
400	2021	특별	○○ ○○과	2021년 국가하천 ○○○○제 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1 0913	2021 0927	12,090	11,100	92	1		1
401	2021	특별	○○ ○○과	국가하천 ○○○○○지구 제방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행	○○(○○)○ ○건설	2021 0916	2021 1001	20,000	18,300	92	1		1
402	2021	특별	○○ ○○과	2021년 ○○○제 하천제방정비사업	○○건설(주)	2021 0917	2021 0927	14,650	13,500	92	1		1
403	2021	특별	○○ ○○과	2021년 ○○○○○의 숲 생태공원 정비공사 시행	(주)○○건설	2021 1008	2021 1015	20,600	18,750	91	1		1
404	2021	특별	○○ ○○과	○○천 ○○○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식회사 ○○	2021 1012	2021 1025	20,000	18,300	92	1		1
405	2021	특별	○○ ○○과	○○천(○○지구~○○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주식 회사	2021 1125	2021 1202	21,000	19,320	92	1		1
406	2021	특별	○○ ○○과	○○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1 1126	2021 1207	20,000	18,300	92	1		1
407	2021	특별	○○ ○○과	○○면 ○○○천 외 1개소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식회사 ○○○○	2021 1126	2021 1209	20,430	18,700	92	1		1
408	2021	특별	○○ ○○과	○○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 ○)○○건설	2021 1129	2021 1213	20,000	18,320	92	1		1
409	2021	특별	○○ ○○과	○○면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	2021 1130	2021 1216	20,140	18,320	91	1		1
410	2021	특별	○○ ○○과	○○면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조경	2021 1130	2021 1216	21,490	19,550	91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411	2021	특별	○○ ○○과	2021년 ○○제 외 1개소 하천제방정비사업	(주)○○건설	2021 1209	2021 1216	18,000	16,500	92	1		1
412	2022	특별	○○ ○○과	2022 ○○제 주변 정비사업	(주)○○	2022 0228	2022 0316	20,000	18,000	90	1		1
413	2022	특별	○○ ○○과	○○면 ○○제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조경 (주)	2022 0228	2022 0316	22,000	19,800	90	1		1
414	2022	특별	○○ ○○과	○○(○○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2 0303	2022 0316	21,470	19,323	90	1		1
415	2022	특별	○○ ○○과	○○(○○지구) 수목정비사업	○○○(○○ ○○(○○)조 경건설)	2022 0303	2022 0316	20,000	18,000	90	1		1
416	2022	특별	○○ ○○과	○○(○○제,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식회사 ○○○○	2022 0315	2022 0328	20,600	18,540	90	1		1
417	2022	특별	○○ ○○과	○○ ○○천 ○○지구 하상정비공사	○○건설주식 회사	2022 0315	2022 0328	20,900	18,810	90	1		1
418	2022	특별	○○ ○○과	○○ ○○천 하상정비공사	(주)○○토건	2022 0315	2022 0329	20,000	18,000	90	1		1
419	2022	특별	○○ ○○과	○○ ○○천 하천정비공사	○○토건(주)	2022 0315	2022 0407	16,220	14,598	90	1		1
420	2022	특별	○○ ○○과	○○ ○○천 호안정비공사	○○종합건설 (주)	2022 0315	2022 0407	19,310	17,379	90	1		1
421	2022	특별	○○ ○○과	○○(○○○, ○○배수문) 인근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건설	2022 0315	2022 0329	18,780	16,902	90	1		1
422	2022	특별	○○ ○○과	○○(○○, ○○배수문) 인근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조경	2022 0315	2022 0329	19,000	17,100	90	1		1
423	2022	특별	○○ ○○과	○○ ○○천 하상정비공사	○○건설(주)	2022 0315	2022 0512	20,500	18,450	90	1		1
424	2022	특별	○○ ○○과	의령 하천 호안정비공사	(주)○○건설	2022 0315	2022 0412	19,630	17,667	90	1		1
425	2022	특별	○○ ○○과	○○면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	2022 0315	2022 0329	20,400	18,360	90	1		1
426	2022	특별	○○ ○○과	○○(○○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2 0622	2022 0628	20,000	18,400	92	1		1
427	2022	특별	○○ ○○과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조경 (주)	2022 0622	2022 0628	20,000	18,400	92	1		1
428	2022	특별	○○ ○○과	○○○ ○○ ○○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건설	2022 1214	2022 1226	20,300	18,270	90	1		1
429	2022	특별	○○ ○○과	○○면 ○○ ○○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2 1215	2022 1222	21,500	19,350	90	1		1
430	2022	특별	○○ ○○과	○○○ ○○ ○○제(○○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	2022 1219	2022 1227	20,300	18,270	90	1		1
431	2022	특별	○○ ○○과	○○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식회사 ○○○	2022 1219	2022 1228	20,800	18,720	90	1		1
432	2023	특별	○○ ○○과	○○○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건설	2023 0405	미완료	19,570	18,000	92	1		1
433	2023	특별	○○ ○○과	○○면 ○○천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	2023 0405	2023 0420	19,290	17,740	92	1		1
434	2023	특별	○○ ○○과	○○○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3 0405	2023 0502	20,050	18,040	90	1		1
435	2023	특별	○○ ○○과	○○○ ○○천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주)○○토건	2023 0405	2023 0427	19,580	18,010	92	1		1
436	2023	특별	○○ ○○과	○○면 ○○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건설 주식회사	2023 0407	2023 0425	20,160	18,140	90	1		1
437	2020	특별	○○ ○○과	소규모하수처리구역(○○지구) 준설공사	○○산업(주)	2020 1013	2020 1021	16,060	14,776	92	1		1
438	2020	특별	○○ ○○과	소규모하수처리구역(맨홀 및 펌프장) 준설공사	○○산업(주)	2020 1102	2020 1117	16,090	14,803	92	1		1
439	2020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0 1207	2020 1222	15,980	14,702	92	1		1
440	2020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0 1207	2020 1222	16,470	14,988	91	1		1
441	2021	특별	○○ ○○과	하수처리구역(○○권역)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217	2021 0314	19,642	19,642	100	1		1
442	2021	특별	○○ ○○과	하수처리구역(○○권역)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217	2021 0314	17,800	17,800	100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임명
443	2021	특별	○○ ○○과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점검장 정비공사	(주)○○○○ ○○○	2021 0223	2021 0312	20,900	18,810	90	1		1
444	2021	특별	○○ ○○과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분배조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416	2021 0526	18,390	16,920	92	1		1
445	2021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천 일원)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416	2021 0426	19,630	18,060	92	1		1
446	2021	특별	○○ ○○과	의령○○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601	2021 0624	18,770	17,268	92	1		
447	2021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601	2021 0624	19,320	17,774	92	1		
448	2021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지구)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811	2021 0825	19,250	17,710	92	1		1
449	2021	특별	○○ ○○과	○○하수처리구역(○○지구)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811	2021 0825	18,660	17,168	92	1		1
450	2021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지구) 준설공사	○○산업(주)	2021 0907	2021 0913	19,370	17,820	92	1		1
451	2021	특별	○○ ○○과	○○면 ○○2구마을 중계펌프장 이설공사	○○산업개발 (주)	2021 0909	2021 1008	21,290	19,161	90	1	1	
452	2021	특별	○○ ○○과	○○면 ○○마을 중계펌프장 이설공사	○○산업개발 (주)	2021 0909	2021 1006	22,000	19,800	90	1	1	
453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311	2022 0323	21,820	19,638	90	1		
454	2022	특별	○○ ○○과	하수관로(○○○ ○○리 외 1개소)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311	2022 0323	21,400	19,260	90	1		
455	2022	특별	○○ ○○과	하수관로(○○면 ○○리 외 2개소) 준설공사	(주)○○산업 개발	2022 0311	2022 0328	21,820	19,638	90	1		
456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418	2022 0509	21,820	19,638	90	1		1
457	2022	특별	○○ ○○과	○○하수처리구역(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418	2022 0509	21,610	19,449	90	1		1
458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공사	(주)○○산업 개발	2022 0420	2022 0510	21,820	19,638	90	1		1
459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마을) 하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524	2022 0531	21,830	19,647	90	1		
460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외 4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524	2022 0531	21,170	19,053	90	1		
461	2022	특별	○○ ○○과	소규모하수처리구역(○○외 2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	(주)○○산업 개발	2022 0524	2022 0620	17,720	16,302	92	1		1
462	2022	특별	○○ ○○과	중계펌프장(○○외 6개소) 및 하수관로(○○외 4개소) 준설공사	○○산업(주)	2022 0613	2022 0624	20,580	18,522	90	1		1
463	2022	특별	○○ ○○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공사(전기 및 계측제어)	(주)○○○○	2022 0927	2023 0306	11,550	10,741	93	1		1
464	2022	특별	○○ ○○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재염소 투입설비설치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주)○○○○ 공사	2022 0927	2022 1118	17,690	16,274	92	1		1
465	2022	특별	○○ ○○과	소규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2 1006	2022 1104	19,760	18,179	92	1		1
466	2022	특별	○○ ○○과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주)○○산업 개발	2022 1007	2022 1025	19,760	18,179	92	1		1
467	2022	특별	○○ ○○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공사	○○개발(주)	2022 1024	2022 1115	20,580	18,522	90	1		1
468	2022	특별	○○ ○○과	의령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공사	○○개발(주)	2022 1025	2022 1115	20,580	18,522	90	1		1
469	2022	특별	○○ ○○과	소규모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2 1111	2022 1208	19,760	18,522	94	1		1
470	2022	특별	○○ ○○과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마을) 전기공사	○○○○공사	2022 1227	-	13,620	12,666	93	1	1	1
471	2022	특별	○○ ○○과	○○정수장 가압장 설치공사(전기)	○○○○공사	2022 1227	-	21,320	19,188	90	1	1	1
472	2023	특별	○○ ○○과	2023년도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건설 주식회사	2023 0306	2023 0323	19,420	18,000	93	1		1
473	2023	특별	○○ ○○과	2023년도 의령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산업(주)	2023 0308	2023 0323	19,930	18,330	92	1		1

연번	연도	회계명	발주부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분할수의발주	분할수의계약	공사감독미임명
474	2023	특별	○○○○과	2023년도 소규모하수처리구역(2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주)○○산업개발	2023 0309	2023 0405	19,730	18,150	92	1		1
475	2023	특별	○○○○과	2023년도 유량조정조 및 우수관로 준설공사	○○○○건설주식회사	2023 0324	2023 0417	19,800	18,216	92	1		1
476	2023	특별	○○○○과	2023년도 소규모하수처리구역(1구역) 우수관로 준설공사	○○개발(주)	2023 0328	2023 0426	19,520	17,960	92	1		1

[출처 :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2] 통합 가능한 용역 분할발주 및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건)

통합 발주 시				실제 계약					
연번	사업내용 (발주부서)	(최대) 절감액 ¹⁾	적정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 일자	기초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합계	20건	30,083		48건		865,541	791,760		
1	농로포장 실시설계 (2020년) ○○과	2,094	2인건적 수의계약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면 외 4개면)	'20.11.17.	16,276	15,000	(주)○○ 엔지니어링	1인건적 수의계약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면 외 4개면)	'20.11.17.	16,468	15,200	"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 외 2개면)	'20.11.17.	16,468	15,200	(주)○○ 엔지니어링	
2	세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2021년) ○○과	1,351	2인건적 수의계약	○○○○-○○지구 세천 정비공사 등 4건 실시설계용역	'21.01.11.	18,150	16,690	주식회사 ○○	1인건적 수의계약
				○○○○○○마을 세천 정비공사 등 8건 실시설계용역	'21.01.11.	21,360	19,430	"	
3	교량 정밀안전 점검 (2021년) ○○과	2,548	2인건적 수의계약	○○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3.12	13,400	12,400	○○○○ (주)	1인건적 수의계약
				○○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3.12	16,000	14,700	"	
				○○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3.12	13,700	12,700	(주)○○○ ○○	
				○○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3.12	14,800	13,700	"	

통합 발주 시				실제 계약					
연번	사업내용 (발주부서)	(최대) 절감액 ¹⁾	적정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 일자	기초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4	배수로 정비공사 (2021년) ○○과	1,144	2인건적 수익계약	○○ ○○○○ 뒷길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 등 7건 실시설계용역	'21.06.24.	15,300	14,000	주식회사 ○○	1인건적 수익계약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 실시설계용역	'21.06.24.	15,900	14,600	"	1인건적 수익계약
5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2021년) ○○과	2,592	2인건적 수익계약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1.	13,700	12,700	(주)○○	1인건적 수익계약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1.	15,100	13,900	"	1인건적 수익계약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6.	14,500	13,500	(주)○○○ ○○	1인건적 수익계약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6.	15,800	14,500	"	1인건적 수익계약
6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2021년) ○○○○과	1,190	2인건적 수익계약	○○배수문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9.	20,020	18,200	○○○○ (주)	1인건적 수익계약
				○○배수문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1.07.09.	20,900	19,000	"	1인건적 수익계약
7	제방 정밀안전점검 (2021년) ○○○○과	1,235	2인건적 수익계약	○○제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1.10.22.	21,120	19,200	(주)○○	1인건적 수익계약
				○○제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1.10.22.	21,340	19,400	"	1인건적 수익계약
8	수문-제방 정밀안전점검 (2021년) ○○○○과	1,312	2인건적 수익계약	하반기 ○○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21.10.22.	21,868	19,900	○○○○ (주)	1인건적 수익계약
				하반기 ○○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21.10.22.	21,868	19,900	"	1인건적 수익계약
9	용배수로 실시설계 (2021년) ○○과	1,457	2인건적 수익계약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외 4개면)	'21.12.14.	16,276	15,000	(주)○○ 엔지니어링	1인건적 수익계약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외 4개면)	'21.12.14.	19,341	17,800	"	1인건적 수익계약

통합 발주 시				실제 계약					
연번	사업내용 (발주부서)	(최대) 절감액 ¹⁾	적정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 일자	기초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10	배수로 공사 실시설계 (2021년) ○○과	1,510	2인건적 수익계약	배수로 개설공사 등 7건 실시설계용역 (○○ ○○마을)	'21.12.14.	19,360	17,800	주식회사 ○○	1인건적 수익계약
				배수로 설치공사 등 6건 실시설계용역 (○○ ○○지구)	'21.12.14.	19,720	18,100	"	
11	도시 계획도로 실시설계· 실시계획 (2022년) ○○○○과	849	2인건적 수익계약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 용역 (소요○-○○○호선외 1개소)	'22.01.19.	19,934	18,000	주식회사 ○○	1인건적 수익계약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 용역 (소요○-○○○호선외 1개소)	'22.01.21.	17,738	16,000	"	
12	신호기 설치사업 실시설계 (2022년) ○○과	1,420	2인건적 수익계약	○○초등학교 신호기설치사업 등 3건 실시설계 용역	'22.01.21.	18,966	17,400	(주)○○○ ○○○	1인건적 수익계약
				○○초등학교 신호기설치사업 등 3건 실시설계 용역	'22.01.24.	18,966	17,400	"	
13	교량 정기안전점검 (2022년) ○○과	438	2인건적 수익계약	○○권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22.02.15.	16,720	14,500	(주)○○○ ○○	1인건적 수익계약
				○○권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22.02.17.	18,260	16,720	"	
14	제방 정밀안전점검 (2022년) ○○○○과	1,121	2인건적 수익계약	○○○제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4.13.	17,710	16,110	(주)○○○ ○○	1인건적 수익계약
				○○○제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4.13.	20,130	18,310	"	
15	수문·제방 정기안전점검 (2022년) ○○○○과	1,418	2인건적 수익계약	상반기 ○○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4.14.	19,228	17,700	○○○○ (주)	1인건적 수익계약
				상반기 ○○ 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4.14.	21,593	19,640	"	

통합 발주 시				실제 계약					
연번	사업내용 (발주부서)	(최대) 절감액 ¹⁾	적정 계약방법	계약명	계약 일자	기초 금액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16	배수장 초기점검 (2022년) ○○과	1,184	2인건적 수의계약	○○배수장 초기점검 용역	'22.05.13.	11,600	10,800	○○○○ (주)	1인건적 수의계약
				○○배수장 초기점검 용역	'22.05.13.	11,600	10,800	(주)○○○ ○○	
				○○배수장 초기점검 용역	'22.05.16.	11,600	10,800	"	
17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2022년) ○○과	1,376	2인건적 수의계약	의령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등 9건 실시설계용역	'22.09.29.	17,180	15,806	(주)○○○ ○○○○	1인건적 수의계약
				○○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등 10건 실시설계용역	'22.09.29.	17,210	15,834	"	
18	도시 계획도로 실시설계· 실시계획 (2022년) ○○○○과	1,415	2인건적 수의계약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중로○-○○호선)	'22.10.18.	19,400	17,848	(주)○○○ ○○○○	1인건적 수의계약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역 (중로○-○○호선 외 1개소)	'22.10.18.	21,300	19,383	"	
19	조명 임차 설치운영 (2022년) ○○○○과	1,234	2인건적 수의계약	연말연시 경관조명 임차 설치운영 용역	'22.12.15.	20,378	18,552	유한회사 ○○○○ ○	1인건적 수의계약
				중로○-○○호선 쌈지공원 조명 임차 설치운영 용역	'22.12.15.	20,483	18,640	"	
20	세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2022년) ○○과	2,604	2인건적 수의계약	세천 정비공사 등 6건 실시설계 용역 (○○ ○○마을)	'22.12.22.	21,380	19,456	주식회사 ○○	1인건적 수의계약
				세천 정비공사 등 10건 실시설계 용역 (○○ ○○마을)	'22.12.22.	21,980	20,002	"	
				세천 정비 등 6건 실시설계 용역 (○○ ○○마을 정골)	'22.12.22.	21,560	19,619	(주)○○○ ○○○○	
				세천 정비공사 등 10건 실시설계 용역 (○○ ○○정 주변)	'22.12.23.	21,890	19,920	(주)○○○ ○○○○	

1) 개별 계약 기초 금액의 88%(2인 소액수의 견적 시 최저낙찰률)를 곱하여 모두 더한 값에서 실제 분할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시담을 통하여 절감한 계약금액을 차감한 값

[출처 : ○○과, ○○○○과,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1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재해예방을 위해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발주해 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계약 상대자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20. 12. 24.	○○○ ○○리 ○○○ 번지	우수 저류시설 V=43,000m ³	13,959	9,233.2	4,725.8	'20. 12. 29. ~ '23. 3. 10.	○○건설(주) 대표 ○○○	100%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 6. 5.	○○면 ○○리 ○○리	제방정비 L=3.4km	8,558	6,720.6	1,837.4	'20. 6.12. ~ '23. 2. 14.	(주)○○종합 건설 대표 ○○○	100%

※ 우수저류시설 보조금 사업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외 놀이 및 체육시설 설치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¹⁾ 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2019~2021년도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²⁾ 및 교부조건 제5항(보조조건) 가항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중앙부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2. 3. 행정안전부)」 제1장(총칙) 제1호(목적)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세부 추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장(사업추진 43, 45페이지)에 따라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사업 지구 내에서 공사내용이나 방법 등의 경미한(사업비 10% 미만)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국비,도비,군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놀이 및 체육시설, 조경”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재해예방사업 예산(국비, 도비, 군비) 중 527백만 원의 비용으로 2022. 12월 말 설치 완료하였다.

1) 2021. 12. 30. 전부개정 되었으며, 2021. 7. 13.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시행 2021. 7. 13. 2021. 1. 12. 제정)

2) 2021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경상남도 ○○○○과-1836호(2021. 2. 2.)]

[표 2] 재해예방사업 부지 내 목적외 사용내역

(단위: 백만 원)

목적 외 사용내용	세부 설치내용	설치위치	설치시기	공사비	목적외 집행
놀이 및 체육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1식 미니축구장 1식 조경식재 1식 (교목 221주, 관목 16,210주)	우수저류시설 상부	'22. 6~12월	527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설치완료

※ 공사비는 순공사비, 자재대, 재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과에서는 이 건의 사업에 대해 2020. 9. 29.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설계도서를 검토³⁾할 당시 “설계에 반영한 조경 등은 우수저류조 설치와 관련이 없어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령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 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령군에서 별도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2022. 12월 말경 설치 완료하였다.

3. 품질시험계획 승인없이 공사 추진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실시설계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과 - 6443 (2020.9.29.)]

따라서 ○○○○과에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하면 승인하여 시공자가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등 2개 공사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품질시험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시공자가 착공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하였다.

[표 3]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내역

공 사 명	총공사비 (억 원)	공사기간	품질시험계획 제출일	품질시험계획 승인통보일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140	'20.12.29.~ '23. 3.10.	'20.12.29.	미승인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	'20. 6.12.~ '23. 2.14.	'20. 6.12.	미승인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4. 재해예방사업 준공 후 지정해제 등 절차 미이행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5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제방(호안 및 배수 시설을 포함한다) 공사 등을 준공한 때에는 하천공사의 명칭, 개요, 위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하천구역 지형도면,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르면
 군수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
 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된 하천정비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하천공사의 명칭, 개요, 위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하천구역 지형
 도면,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3.
 2. 14. 정비공사를 완료한 이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4]과 같이 하천
 공사의 개요,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하천구역의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지 않았고,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4] 재해예방사업 준공후 지정해제 등 절차 미이행 내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재해예방사업 지정해제일	하천준공 고시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축제 및 호안 정비 3.2km	'20. 6.12.~ '23. 2.14.	미 고시	미 고시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감독책임자 ○○○○과 ○○○○○○○○ ○○○(현 ○○○○○○○○○○),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 부지 내에 놀이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비용 527백만 원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의 협의하여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8】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등 2개 부서)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표 1]과 같은 준공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다.

[표 1] 건설공사 준공정산 절차

순 서	준공정산 절차	주 요 내 용
① 정산서류 제출	시공사→사업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시공자가 실제 사용한 실적 제출
② 정산서류 확인	사업부서	시공자가 발주청에 정산을 위해 제출한 사용실적 확인
③ 계약 변경	시공사↔계약부서	계약금액에 계상된 정산 항목 중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후 변경계약 체결
④ 대가지급	계약부서→시공사	정산 및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 대가지급

[출처 : 의령군 준공정산 절차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¹⁾ 제7조(사용기준)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이하 ‘시공자’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 제1항 나호에 따라 공사 도급 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를 반영한 경우와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된 인건비²⁾ 등에 대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2020. 1.23. 시행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2022. 6. 2. 개정되기 이전 기준 적용

2) 환경관리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1호 (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따라 살수차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말한다.

확인) 제8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를 준공정산 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용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한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에 대해 2022. 6. 30. 준공정산하면서 시공자[(주)○○]가 2022.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의 안전관리 인건비 550천 원의 사용실적³⁾을 제출했음에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과 등 2개 부서 2개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44,101천 원과 환경관리비 795천 원 등 총 44,896천 원을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내역

(금액단위: 천 원)

연번	공 사 명	지급일자 (정산일자)	과다 지급액			준공정산 부서	시 공 자
			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합계	2건		44,896	44,101	795	2개 부서	2 개 업체
1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 1차분	'21. 2. 10. ('20. 12. 28.)	44,101	44,101		○○ ○○과	(주)○○ (○○시 소재)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 2차분	'21. 6. 30. ('21. 6. 23.)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 3차분	'22. 6. 30. ('22. 6. 23.)					

3) '○○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2단계)'의 시공자는 2022. 6. 23. 준공정산 시 2022. 5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고 발주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2022.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사용실적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음

연번	공 사 명	지급일자 (정산일자)	과다 지급액			준공정산 부서	시 공 자
			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3. 5. 24. (23. 5. 17.)	795		795	○○ ○○과	○○종합건설(주) (○○군 소재)

※ 과다 지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별표]

[출처 : 의령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 등 2개 부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등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과 ○○○○○○○○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 총 44,896천 원의 회수방안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시공사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1. 공사명 : ○○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공사 차수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30,503천원		
'20년 6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88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6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1차분
'20년 7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66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7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0년 8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88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8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0년 9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99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9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0년 10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21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0년 11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10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0년 12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55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1년 3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88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1년 4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76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4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1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98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5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2차분
'21년 6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31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6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7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475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7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8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87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8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9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20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9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10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53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11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64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1년 12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2,838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2년 3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10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2년 3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2년 4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1,10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2년 4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22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 (1명)	55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2년 5월 노무비명세서 첨부)	3차분

※ 본 공사 현장은 설계내역서에 교통 신호수 노무비 150,000천원(재경비 포함)이 별도 반영되어 있음
준공 정산시 동일시기 동일인물에 대해 매월 노무비를 지급한 명세서를 안전관리 인건비로 재청구
시공자에게 지급됨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30,503천원	안전신호수
② 일 반 관 리 비	1,485천원	(①) × 4.87%
③ 이 윤	3,425천원	(①+②) × 10.71%
④ 공 급 가 액	35,413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3,541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5,147천원	1차(3.16%),2차(3.18%),3차(3.68%),4차(3.2%)
⑦ 과 다 지 급 액	44,101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명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나. 환경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600천 원	
'23년 03월	환경 보전비	도로청소 및 살수작업(1명)	28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3년 03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3년 04월	환경 보전비	도로청소 및 살수작업(1명)	320천원	총1명(○○○) 인건비 중복지급 (근거 : '23년 04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600천 원	중복지급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9천 원	(①) × 4.89%
③ 이 윤	66천 원	(①+②) × 10.535%
④ 공 급 가 액	695천 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70천 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30천 원	(④+⑤) × 3.923%
⑦ 과 다 지 급 액	795천 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19】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토석발생 건설공사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등 6개 부서)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토 및 순성토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암관정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토석발생 건설현장 축중기 미설치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리) 제9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7조(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에

따르면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¹⁾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 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²⁾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토석발생으로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축중기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해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의령 ○○○(○○)장 조성사업’ 등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사토 및 순성토 운반을 위해 16,068대의 덤프 트럭(24톤)이 공용 중인 도로를 운행 함에도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축중기 설치비용 1,190천 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았다.

[표 1] 토석발생 공사현장 축중기 미설치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부서	공 사 명	공사기간	사토량 (m ³)	순성토량 (m ³)	덤프운반 대수 ³⁾	축 중 기	
							설치 여부	설계 반영액
합계	3개 부서	4건		75,389	85,300	16,068	4건	1,190
1	○○ ○○과	의령 ○○○(○○)장 조성사업	’21.12월 ~ ’23.7월	17,590	-	1,759	미설치	미반영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은 축중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연번	사업부서	공 사 명	공사기간	사토량 (m ³)	순성토량 (m ³)	덤프운반 대수 ³⁾	축 중 기	
							설치 여부	설계 반영액
2	○○ ○○과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18. 3월~ `23. 6월	-	85,300	8,530	미설치	1,190
3	○○과	○○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0. 6월 ~ `23. 6월	23,700	-	2,370	미설치	미반영
4	○○과	○○ ○○지구 사면복구공사	`19.9월 ~ `22.6월	34,099	-	3,409	미설치	미반영

※ 축중기 설계반영액은 재경비를 포함한 비용임

[출처 : 의령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이용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적용) 제2항, 제6조(정보관리 주체), 제12조(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항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최초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온라인 거래기능) 제2항, 제16조(매각 공고기능)에 따르면 발주청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온라인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리핑암, 발파암)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3) 덤프트럭(24톤)의 운반대수를 계산하면 토석의 단위중량은 2.1로 적용, 운반시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환산계수 1.15 적용시 덤프 1대에 적재 토석량은 24톤/(2.1×1.15) = 10m³임

제공하며 발주청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광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3개 부서에는 토석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매각공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의령 ○○○(○○)장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사토량에 대한 온라인 매각공고를 하지 않는 등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

[표 2] 토석정보시스템 미등록 및 사토매각 미광고 내역

연번	사업부서	공사명	사토량 (m ³)	토석정보시스템	
				시스템 등록일	사토매각 광고여부
합계	3개 부서	3건		3건	3건
1	○○○○과	의령 ○○○(○○)장 조성사업	17,590	미등록	미광고
2	○○○○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2,165	미등록	미광고
3	○○과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3,700	미등록	미광고

[출처 : 의령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사토량 10,000m³ 이상 현장 확인

4. 암버력(발생암) 매각절차 미이행으로 처리비용 발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공사원가계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부산품⁴⁾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부산품 (부산물, 부제품) :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입찰공고, 계약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등)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버릭(발생암)을 처리 할 경우 암버릭은 공사의 부산물로써 그 소유권은 발주청에 있으므로 사토하는 비용과 매각하는 비용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매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인 ‘온비드’⁵⁾ 등을 통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암 버릭을 처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를 걷는 ○○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공사중 발생하는 암버릭(발생암)을 온비드를 활용해 사토처리비와 매각비용을 비교 검토하지 아니하고 119,034천 원의 비용을 들여 사토처리 하였다.

[표 3] 암버릭(발생암) 온비드 미활용 내역

연번	사업부서	공사명	암버릭발생량 (m ³)	처리비용 (천원)	온비드 입찰일
합계	3개 부서	3건	11,273	119,034	3건
1	○○○○과	○·○○·○○○를 걷는 ○○공원 조성사업	1,590	9,934	미이용
2	○○○○과	의령도시계획도로 (○○○-○호선)개설사업	6,581	20,788	미이용

5) 온비드(Onbid)는 Online Bidding의 약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구매정보를 통합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고의 구매포털시스템

연번	사업부서	공사명	암버력발생량 (㎡)	처리비용 (천원)	온비드 입찰일
3	○○과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102	88,312	미이용

※ 암 버력 발생량은 연암, 경암 등을 말함

※ 처리비용은 순공사비에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출처 :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5. 암판정위원회 절차 없이 공사비 증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 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 대비표 등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⁶)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설계변경)에 따르면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 암반선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암반량을 확인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를 걷는 ○○공원 조성 사업’ 등 12건의 공사에 대하여 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 중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위원회 절차에 따라 암반량을 확인한 이후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표 4]와 같이 감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암반량을 확인해 754,234천 원을 증액하였다.

[표 4]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부서	사 업 명	착공일 (암노출일)	절토 순공사비			재경 비율	증액 공사비
			당초	변경	증액		
합계	12건						754,234
○○○○ 과	○·○○·○○○를 걷는 ○○공원 조성사업	'21. 4. 14. ('21. 6. 13)	38,629	65,166	26,537	1.67	44,317
○○○○ 과	2020년 간선임도사업 (의령○○지구)	'20. 4. 23. ('20. 5. 22.)	15,320	33,086	17,766	1.56	27,715
○○○○ 과	2020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20. 6. 29. ('20. 7. 28)	23,645	33,328	9,683	1.57	15,202
○○○○ 과	2021년 간선임도 (○○ ○○지구)개설사업	'21. 4. 15. ('21. 5. 14.)	11,331	39,674	28,343	1.56	44,215
○○○○ 과	2021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지구)	'21. 8. 23. ('21. 9. 22.)	71,888	148,719	76,831	1.51	116,015

6)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부서	사업명	착공일 (암노출일)	절토 순공사비			재경 비율	증액 공사비
			당초	변경	증액		
○○○○ 과	2021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 ○○○지구)	'21. 9. 29. (21. 10. 30.)	75,131	115,887	40,756	1.48	60,319
○○○○ 과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22. 3. 31. (22. 4. 30.)	45,201	77,021	31,820	1.57	49,957
○○○○ 과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22. 3. 31. (22. 4. 30.)	21,667	49,164	27,497	1.49	40,971
○○○○ 과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22. 5. 24. (22. 6. 25.)	22,264	53,714	31,450	1.47	46,232
○○○○ 과	의령도시계획도로 (○○○-○호선)개설사업	'20. 6. 04. (20. 12.20)	15,515	143,030	127,515	1.61	205,299
○○과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0. 6. 08. (22. 11. 21)	23,721	69,226	45,505	1.65	75,083
상하 수도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9. 1. 11. (19. 9.)	28,924	46,445	17,521	1.65	28,909

※ 절토 순공사비는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등의 합계한 순공사비임
 ※ 건설공사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별표] 참조
 [출처 :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 등을 위반하여 축중기 미설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등록 및 사토매각 미활용, 암버력 매각 절차 미이행, 암판정위원회 절차 없이 공사비 증액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및 ○○○○과 ○○○○○○ ○○○(현 ○○○○과), ○○○○과 ○○○○○○○○ ○○○(현 ○○○○과),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한 ‘○○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은 비용 1,190천 원은 ‘회수’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건설공사 압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사업명 : ○,○○,○○○를 걷는 ○○공원 조성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압판정 위원회 구성일	압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 ³)	2,172	628	1,544	0	3,305	1,715	352	1,238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38,629	689	37,940	0	65,166	11,750	8,649	44,766		

※ 공사 재경비율 : 67%

사업명 : 2020년 간선임도사업(의령○○지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압판정 위원회 구성일	압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 ³)	8,810	8,565	0	245	8,272	7,024	0	1,248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5,320	10,518	0	4,802	33,086	8,625	0	24,461		

※ 공사 재경비율 : 56%

사업명 : 2020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압판정 위원회 구성일	압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 ³)	4,847	3,978	0	869	5,135	3,816	0	1,319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3,645	4,583	0	19,062	33,328	4,396	0	28,932		

※ 공사 재경비율 : 57%

사업명 : 2021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압판정 위원회 구성일	압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 ³)	4,877	4,332	0	545	6,533	4,863	0	1,67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1,331	5,211	0	6,120	39,674	5,850	0	33,824		

※ 공사 재경비율 : 56%

사업명 : 2021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지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12,630	10,062	0	2,568	12,594	6,076	0	6,518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71,888	17,910	0	53,978	148,719	10,815	0	137,904		

※ 공사 재경비율 : 51%

사업명 : 2021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지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9,565	6,497	0	3,068	10,825	5,753	0	5,072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75,131	10,843	0	64,288	115,887	9,602	0	106,285		

※ 공사 재경비율 : 48%

사업명 :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4,788	3,067	0	1,721	5,885	2,759	0	3,126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45,201	5,545	0	39,656	77,021	4,988	0	72,033		

※ 공사 재경비율 : 57%

사업명 :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4,276	3,592	0	684	4,386	2,391	0	1,995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1,667	6,390	0	15,277	49,164	4,254	0	44,910		

※ 공사 재경비율 : 49%

사업명 : 2022년 간선임도(○○ ○○지구)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8,211	7,704	0	507	7,311	5,278	0	2,033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2,264	10,693	0	11,571	53,714	7,326	0	46,388		

※ 공사 재경비율 : 47%

사업명 : 의령도시계획도로(○○○-○호선)개설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3,135	2,367	523	245	9,673	3,324	3,296	4,192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5,515	4,182	2,846	8,487	143,030	5,997	10,831	126,202		

※ 공사 재경비율 : 40%

사업명 :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31,212	31,212	0	0	26,436	23,334	0	3,102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3,721	23,721	0	0	69,226	17,733	0	51,493		

※ 공사 재경비율 : 65%

사업명 :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11,681	11,681	0	0	11,681	9,342	0	2,339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4,613	14,613	0	0	89,828	11,687	0	78,141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 재경비율 : 55%

사업명 :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연암	계	토사	리핑암	연암		
물량 (m³)	60,194	56,136	4,058	0	63,264	57,994	2,634	2,636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20,198	53,201	66,997	0	168,576	55,219	43,487	69,870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 재경비율 : 49%

사업명 :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안전정 위원회 구성일	안전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사	리핑암	발파암		
물량 (m³)	2,807	2,696		111	4,044	3,882		162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8,924	26,261		2,662	46,445	42,557		3,888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 재경비율 : 65%

【일련번호 : 20】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등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행정직군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고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안전화 및 피복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였다.

[표 1] 피복 및 안전화 구입내역

구분	일자 및 문서번호	문서제목	담당	구입내역				비고 (결재)
				품명	수량	단가	합계(원)	
6건					25		6,780,000	
1	2020.11.3. ○○○○○과-123727	○○○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감독 위한 안전복 및 안전화 구입	○○담당	안전화	2	275,000	550,000	○○○ ○○○ ○○○
				안전복	2	200,000	400,000	
2	2020.11.4. ○○○○○과-123982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현장감독 위한 안전복 및 안전화 구입	○○담당	안전화	2	275,000	550,000	○○○ ○○○ ○○○
				안전복	2	200,000	400,000	
3	2021.1.29. ○○○○○과-11313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감독 안전화 구입	○○담당	안전화	3	300,000	900,000	○○○ ○○○ ○○○ 협조:○ ○○
4	2021.3.25. ○○○○○과-34414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안전화 구입	○○담당	안전화	3	200,000	600,000	○○○ ○○○ ○○○
5	2021.6.25. ○○○○○과-77196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안전화 구입	○○담당	안전화	3	260,000	780,000	○○○ ○○○ ○○○
6	2022.5.31. ○○○○○과-67819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용 피복(작업화, 작업복)구입	○○담당	작업화(여)	2	250,000	500,000	○○○ ○○○ ○○○
				작업화(남)	2	250,000	500,000	
				작업복	4	400,000	1,600,000	

[출처: 의령군 감사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로 재산취득 및 공사 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과 같다고 되어 있고, 해당 기준의 ‘13.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 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 현장 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에 공사기간,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지급대상은 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한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건의 공사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안전화, 작업복)만을 구입·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대상 및 공사기간,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안전화 17켤레와 작업복 8벌을 구입하고 6,780천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시설부대비(피복비) 부적정 집행내역

구분	사업제목	구입일	직급담당자 (감독)	근무기간	사용 기간	구입내역				비고
						품명	수량	단가	합계(원)	
6건							25		6,780,000	
1	○○○ ○○ 공영주차장	'20.11.10.	○○○ ○○○○○○○	'20.1.1.~ '21.7.4.	7개월 26일	안전화	2	275,000	550,000	지급대상 부적정 (감독외), 중복 지급, 기간미고려
						안전복	2	200,000	400,000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20.11. 9.	○○○ ○○○○○○○	'20.1.1.~ '21.7.4.	7개월 27일	안전화	2	275,000	550,000	
안전복						2	200,000	400,000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21. 1.29.	○○○ ○○○○○○○	'20.1.1.~ '21.7.4.	5개월 6일	안전화	3	300,000	900,000	
2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 3.29.	○○○ ○○○○○○○	'20.1.1.~ '21.7.4.	3개월 7일	안전화	3	200,000	600,000	지급대상 부적정 (감독외), 중복 지급, 기간미고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 6.29.	○○○ ○○○○○○○	'20.1.1.~ '21.7.4.	
3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2. 6. 8.	○○○ ○○○○○○○	'21.7.5.~ '22.10.13	4개월 25일	작업화(여)	2	250,000	500,000	지급대상 부적정 (감독외), 기간미고려
						작업화(남)	2	250,000	500,000	
						작업복	4	400,000	1,600,000	

[출처: 의령군 감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에서는 기술직렬의 경우 담당하는 공사업무가 많은 관계로 ○○○○○과 업무의 공사감독까지 의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자체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집행이 부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향후 기술직 부서와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지급대상, 공사기간, 내용연수, 구매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책임자 ○○○○○과 ○○○○○○ ○○○(현 ○○○○○○○○○○), 실무담당자 ○○○○○과 ○○○○○○ ○○○(현 ○○○)와 상기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감독책임자 ○○○○○과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본 감사지적 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물품 지급 시 지급대상 범위, 지급 방법, 물품 사용연한 등을 명확히 하시고,

이와 더불어 시설부대비 집행 물품의 부당수령 예방 및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 부서에서의 공사 감독업무 협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 및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공동주택 소규모지하영향평가 미실시 등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1. 1. ~ 2022. 12. 31. 건축허가 등 총 1,541건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중에서 관내 ○○○ ○○리 ○○○-○○번지의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의 건축허가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1]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현황

(기간 : 2021. 1. 1. ~ 2022.12.31.)

구분	합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허가, 신고 포함)	가설건축물
건수	1,541	109건	358건	444건	630건

[표 2] 공동주택 건축허가 개요

구분	대지위치	건축규모	건축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리 ○○○-○○	지하3층 지상15층	공동주택(3~15층) 제2종근생(1~2층)	562㎡	6,544.57㎡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미협 의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에 따르면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협의 요청, 검토·통보, 협의 내용의 반영,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건축물의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업무를 할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건축허가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신고를 수리해야만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공동주택 지하 3층 전기실 최대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한 11.15m에 해당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으로써 지하개발사업자인 건축주 ○○○에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무 부서인 ○○○○과와 관련 법에 대한 협의없이 2022. 1. 28. 건축허가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협의 요청, 검토·통보, 협의 내용의 반영, 사업 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 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2022. 9. 26. 착공 신고를 수리하였다.

3.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3항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제2호에 따르면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¹⁾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허가 업무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받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건축허가권자인 의령군 ○○○○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과 관련하여 2021. 12. 8.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과(○○○○담당)에 의령군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 여부를 조회하였고, 2021. 12. 13. ○○○○과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13개 층은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벽체식 구조로써 그 하중이 지상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기둥식 구조인 슬래브와 보에 전이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표 3]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의대상 아님으로 통보하였다.

[표 3] 건축구조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조회 현황

관련부서	관련법규	검토결과
○○○○과	경관법, 건축법	<input type="checkbox"/> 검토내용 : 경관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 ○ 경관법 규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이 아님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건축구조 분야 전문 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의사 결정없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수리가 되었다.

4. 공동주택 대피공간 면적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 이상으로 바깥의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등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의령군 ○○리 ○○○-○○번지 아파트의 허가 신청도서를 검토하면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2㎡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2㎡²⁾ 미만인 약1.42㎡ 및 1.19㎡로 계획하여 대피공간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면적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수리하였다.

5. 조경설치 기준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르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① 2019. 5. 14. 법제처 법령해석(의뢰자 :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②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따라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아닌 유효면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령군 건축 조례」 제25조(대지안의 조경)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23호)」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에 따르면 조경면적은 하나의 식재면적이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서 1㎡ 이상 적합하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검토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경면적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서 1㎡ 이상 적합하게 배치하도록 검토하여 규정에 적합한 조경계획일 경우 건축허가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의령군 ○○리 ○○○-○○번지에 공동주택의 조경계획도를 검토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6,544.57㎡로써 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132㎡³⁾가 조경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식물의 생육에 부적절한 건축물 하부를 조경면적에 포함하고, 한 변의 길이가 1m가 미달되는 부위를 식재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140.25㎡에 해당하는 조경계획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조경 배치 및 면적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3. 6. 21. 감사일 현재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면적을 재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한 식재면적 140.25㎡에서 부적정한 식재면적 22.08㎡를 제외하면 118.17㎡가 적정한 식재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규로 13.83㎡ 이상 식재면적이 추가 계획되어야 법정 조경면적 기준인 132㎡를 충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지면적 880㎡ × 15% = 132㎡

6.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 서명날인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3항에 따르면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7항에 따르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2023. 4. 13. 공동주택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가 제출한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기초공사가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데도 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란에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 ○○○의 확인과 서명날인 누락 사항에 대한 공사감리보고서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령군 ○○○○과에서는 건축허가 업무를 하면서 고질 민원 등의 애로사항과 건축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여 관련 법령 검토와 업무 처리가 미숙하였던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누락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조안전 등의 시공관리를 위해 관련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피공간은 적정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도록 건축허가(변경)하여 시공되도록 하겠으며, 조정면적 미달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감리 보고서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요구하고,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을 위반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의 협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면사무소)**과 실무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실무책임자 ○○○○과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대피공간의 유효면적을 확보하고, 「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조정면적의 산정)에 따라 조속히 법정 조정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시공현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이 확보되도록 시공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설계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대표 ○○○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피해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건축사 위법보고 또는 주의 조치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설계용역 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8. 13. ○○○○○건축사사무소 대표 ○○○와 도금액 113백만 원에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5. 13. 용역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9. 20. (주)○○ 대표 ○○○와 도금액 933백만 원에 건립공사를 계약하여 2024. 9. 8.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표 1]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실시설계 용역	2021. 8.13.	○○면리 ○○○ ○○○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113	113	-	2021. 8.18. ~ 2022. 5.13.	○○○○○건축사 사무소 대표 ○○○	100%
건립사업	2022. 9.15.		건립공사 1식	1,352	933	419	2022. 9.20. ~ 2024. 9. 8.	(주)○○ 대표 ○○○	20%
감리용역	2022. 8.31.		감리용역 1식	17	17	-	2022. 9. 1. ~ 2024. 9.19.	○○건축사 사무소 대표 ○○○	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사전착공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및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허가권자인 ○○○○과와 공용건축물 협의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설계용역 성과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그 내부 용도를 휴게·전시·체험 및 교육 공간 등 다용도 활용 가능한 공간 구성할 것으로 전시 방향을 계획하였음에도 미리 허가권자인 ○○○○과와 공용건축물 협의를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2. 9. 15. 착공하였고,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의령군 ○○○○과에서는 2021. 5. 21. ○○과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¹⁾’ 하면서 입찰공고²⁾에는 [표 1]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의 평가 기준을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축물의 실시설계를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정하였고,

[표 1] 입찰공고 현황(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

구분	내용	
3. 입찰 참가 자격	<p>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p> <p>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일 까지 계속 유지)</p> <p>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p> <p>3)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p> <p>-----중 략-----</p> <p>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p>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	<p>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실적누계 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p>	
	<p>해당분야</p> <p>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시설계</p>	<p>추정가격</p> <p>금117,079,500원</p>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021. 6. 4.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에는 [표 2]와 같이 건축·토목·조경·전기·조명분야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과 건축·산림·환경·도시계획·문화재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명시하였는데도 2021. 8. 13. ○○○○○건축사사무소 대표 ○○○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한 이후 ‘○○○ ○○○○’이 건축물 또는 건축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으로 부적정한 구두 의견조회³⁾만 하였고, 해당 용역 결과물인 실시설계에 대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관계 법령과 관련된 협의를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한 사실이 없다.

1) ○○○○과-6938호(2021. 5. 21.)

2) 의령군 공고 제○○○○-○○○호(2021. 6. 4.)

3) 해당 사업의 실무담당자인 ○○○○과 ○○○ 주무관은 2022. 5. 13. ‘○○○ ○○○○’의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는데도 건축허가권자인 ○○○○과 ○○ 주무관에게 실시설계도서(건축)가 아닌 조감도만 제시하여 구두로 협의를 요청하여 ○○○ ○○○○이 건축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2022. 12. 5. 공직자 메일로 회신받았고 이 자료를 2022. 12. 9. ○○○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 위한 보완서류로 경상남도 ○○○○과에 제출함

[표 2] 과업지시서 현황

구분	과업내용
3. 과업의 내용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조명분야 실시설계 ○ 각종 인.허가(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포함)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 검토와 이에 관련된 도서작성 및 이행
5. 실시 설계	라. 관련법규는 건축, 산림, 환경, 도시계획, 문화재 및 기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2. 5. 13. [표 3]과 같이 실시설계 성과물을 건축물로 준공승인 하면서 설계용역사업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관련 행정절차인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같은 해 9. 20. 착공신고 없이 공사에 착수하였다.

[표 3] ○○○ ○○○○ 개요

구분	대지위치	건축규모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면 ○○리 ○○○○ 일원	1층	인공동굴	570m ²	570m ²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관람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데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른 소방서장의 동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BF인증 등의 관련 법 협의와 건축협의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 중에 있다.

3.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⁴⁾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2021. 5. 21. ○○과에 ‘○○○○○○○○○단지 ○○○ ○○○○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156,615천 원으로 산출하였고 [표 4]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과업 목적은 ‘전시 및 체험시설 설치’이며 과업의 내용도 건축분야 및 각종 인허가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 검토를 명시하는 등 해당 구조물의 용도와 기능이 전시 및 체험시설로 검토하였고, 입찰공고에는 설계용역업자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하였음에도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하며, 「건축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행위를 말함

- ①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②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 ③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표 4] 과업지시서 내용

I. 설계설명서
3. 과업의 목적 ○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 ○○○○을 구성하여 특색있는 전시 및 체험시설 설치 로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 구성으로 관광자원화
II.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 측량 및 지표 및 지질조사 ○ ○○○ ○○○○ 디자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적용 검토 및 자료 제작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조명분야 실시설계 ○ 주변 경관 및 조명분석, 운영프로그램 등을 반영한 디자인제안 ○ 각종 인.허가(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포함)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 검토와 이에 관련된 문서작성 및 이행 ○ 시설물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의 이행, 민원 처리, 각종 보고자료 작성 ○ 설계와 관련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한 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감독을 할 때에는 용역 완료 전에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의령군 계약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여 계약내용,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건축물의 경사로 기준 미달 및 안전난간 손잡이 미설치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2021. 8. 18.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하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경사로의 기울기가 1/4.4(22.7%)로써 계단을 대체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사로 기준인 1/8(12.5%)를 초과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사로의 난간 및 벽 등의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3.8cm 이하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의 형태로 벽 등으로부터 5cm 떨어지게 설치⁶⁾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항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

그 결과 의령군 ○○○○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도서와 같이 ○○○○ 내부의 경사로 기울기와 난간 및 손잡이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장애없는 공간⁷⁾을 계획할 수 없었는데도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완 설계토록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이후 2022. 10. 19. ‘○○○ ○○○○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공고를 하면서 설계도서 변경 없이는 장애 없는 공간을 구성할 수 없는데도 [표 5]와 같이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없는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과에 공고 의뢰하였다.

[표 5] ‘○○○ ○○○○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4. 과업지침
가. 기본지침
9) 통로, 전시실 출입문, 로비 공간에 대한 계획은 전시실 진입 전 공간으로서 전시공간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한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 없는 공간(Barrier free)으로 계획한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②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누락 등 부당한 실시설계 용역준공

의령군 ○○○○과에서는 [표 6]과 같이 2022. 5. 13.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한 설계도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⁸⁾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의령군 계약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해야 하는데도 설계용역감독관과 설계용역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의 적합성과 제출도서를 면밀히

7) Barrier Free(무장애)

8)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실시설계용역이 계약조건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한 준공 조서를 의령군 경리관에 제출하였다.

[표 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제출 및 표기여부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제출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제출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제출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제출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미제출	5. 주차장규모
	미제출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미제출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배치도	표기	1. 축척 및 방위
	미표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표기	3. 대지의 종·횡단면도
	미표기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미표기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대상아님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제출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미제출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대상아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표기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대상아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미제출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표기	2. 외부마감재료
	미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위치)
단면도	제출	1. 종·횡단면도
	표기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제출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제출	1. 구조계산서 목록표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	제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령군 ○○○○과에서는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업무를 하면서 설계용역 도서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허가권자의 사전 의견을 조회하면서 건축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의견에 따라 해당 사업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으며, 지하공작물인 자연휴양림 내 체험시설로 추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공동굴을 연출하기 위하여 경사지에 절토하여 기초를 형성하고 지붕과 기둥·벽을 축조한 공작물에 지붕에 토사를 얹어 지하층인 것처럼 형성한 사항이 지하공작물에 해당하여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오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시설계용역에 따른 ○○○○ 내부의 최대 수용인원이 118명이고, 상시 관리 인력이 3명이 필요한 체험·관람 및 휴게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실의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 ○○○○이 “건축물”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므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판단하였는데도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에 적격심사 실적 기준을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용도’로 한 사실은 설계용역업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건축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동굴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준공 후에도 건축협의(건축물, 공작물축조신고)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을 하면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시 건축법 등이 의제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법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며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는 다년간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건축협의를 없어도 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건축허가권자인 ○○○○과 ○○ 주무관과 2023. 6. 19. 문답조사에서 실시설계도서, 내역서, 전시설계 관련 자료 등을 재확인한 결과 ○○○ ○○○○의 구조물이 건축허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과의 실무담당자 ○○○ 주무관은 2023. 6. 20. 문답조사에서 설계용역 전반에 걸쳐 감독업무를 하면서도 설계도서와 함께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구조물에 대한 관련법 협의를 관련 실과에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의견 조희한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아 해당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였다고 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관련법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만으로 실시설계의 목적물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설계용역감독 업무가 소홀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정하면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검토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발주 시점에는 건축, 토목 등 전반적인 분야의 업체가 참여해야 실시설계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아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21. 8. 13.자 용역도급계약 시에도 토목 39%, 건축 38.3%, 산업디자인 22.7%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표준협정을 맺었다고 답변하였으나,

2021. 6. 4.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건축사 면허를 가진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고, 당초 업무의 분담 비율과 관계없이 실시설계용역은 건축사가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설계용역대가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산출하고 실시설계용역업자 선정방식을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도록 ○○과에 입찰 의뢰했어야 하는데도 적정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과의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협회의 미이행에 따라 건축, 소방, 전기, 기계 등의 관련 법령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해당 구조물의 실시설계도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노유자 및 장애인의 보행과 안전에 대해서도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아 ○○○○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의 범위가 일반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설계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자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소결>

위 지적사항은 ‘○○○ 자연휴양림 ○○○ ○○○○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발주,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하면서 설계용역 발주 단계에서 사업 목적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한 점,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을 일반입찰로 발주한 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단계에서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미이행하여 해당 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설계되지 않은 점과 설계도서 준공 검사 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가 누락 되었음에도 준공처리 한 실시설계용역 검사업무 부적정에 대한 지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 행위자와 감독책임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단순·반복 업무의 경미한 사항은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순으로 문책정도의 순위를 정하여 처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등을 위반하여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

○○○○)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설계용역 및 업무대가 산정 등 실시설계용역 발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과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과 ○○○○○○○○ ○○○(현 ○○○○과 ○○○○), ○○○○○○○○ ○○○(현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훈계, 주의)

② 해당 사업의 현장 여건 및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보완설계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문객(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업무 등 소홀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와 도급액 55백만 원에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6. 27. 용역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12. 25. ○○ 건설 대표 ○○○과 도급액 1,172백만 원에 건축공사를 계약하여 2023. 9. 29.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표 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실시설계 용역	2021. 2. 22.	○○ ○○리 ○○○○- ○○번지 일원	실시설계 용역 1식	55	55	-	2021. 2. 23. ~ 2022. 6. 27.	○○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	100%
건축시공	2022. 12. 27.		주차장 조성 1식 (63대)	1,442	1,172	270	2023. 1. 3. ~ 2023. 9. 29.	○○건설 대표 ○○○	10%
감리용역	2023. 4. 28.		감리용역 1식	16	16	-	2023. 4. 28. ~ 2023.10.24.	○○건축사 사무소 대표 ○○○	10%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및 제33조(건축물의 평가)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과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부칙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르면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제17조(계약의 체결), 제62조(사전보상)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회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금 산정 및 지급업무를 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1989년 1월 24일 이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의 물건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화 가능성과 거래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무허가 창고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지급 검토 소홀

의령군 ○○○○○과에서는 2021. 2. 18.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토지, 지장물, 주거이전비 등 36건, 2,515㎡, 1,643백만 원 상당의 총 보상금액을 산정하였고, [표 2]와 같이 ○○○ ○○리 ○○○-○○번지(지장물소유자 ○○○)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업무를 하면서 1989. 12. 4.¹⁾ 이후 임의로 건축한 창고(조적조 판넬, 5㎡)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의령군 계획 조례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66%미만)을 초과²⁾하였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을 위반하여 도로 부지에 건축한 상태로 합법화 가능성이 없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었는데도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1,200천 원 상당의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하였다.

1)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의 허가일은 1989. 12. 4.로 되어 있음

2)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59.02% = 건축면적 57.31㎡ ÷ 대지면적 97.11㎡), 기존건축물 외에 임의로 건축한 무허가 창고 5㎡, 욕실 4㎡를 포함하여 산정한 건폐율[68.28% = 건축면적 (57.31㎡ + 5㎡ + 4㎡) ÷ 대지면적 97.11㎡]

[표 2] 지장물건 보상비 지급 부적정 내역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사정가액 (천원)	비고
주택	조적조 및 스라브	57.31	m ²	28,655	합법
창고	조적조 판넬	5	m ²	1,200	무허가(건폐율 초과 및 건축선 위반)
욕실	조적조 스라브	4	m ²	1,240	무허가(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보상 가능)
주택 및 창고(2층)	조립식 판넬	18.5	m ²	5,365	무허가(대법원 판례 등 적법화 가능)
계단실	콘크리트조	2.4	m ²	72	무허가(적법화 가능)
대문(2층)	알루미늄	1	식	150	-
건조대	철재	1	식	100	-
수도	-	1	식	700	-
마당	콘크리트	10	m ²	200	-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② 실시계획 승인 전 토지보상금 지급 및 환수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낭비

의령군 ○○○○○과에서는 2021. 2. 18.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업무를 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인 군계획시설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 수용의 절차를 이행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최초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당시 사업부지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씨와 인근 주민 2명³⁾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시기를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면적 비율에 따라 보상 협의가 과반 이상 성립하는 시점부터 착공 전까지 지급할 것과 사업무산 및 사업구역 축소, 이전, 변경 등의 불가항력 사항에 대비한 기보상액의 환수, 환매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체결할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2021. 3. 15. ~ 2021. 3. 22. ○○○ 등 3인에게 247백만 원 상당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3) ○○○(○○리 ○○○-○, ○○○번지, 774m²), ○○○(○○리 ○○○번지, 448m²), ○○○(○○리 ○○○-○○, ○○○-○○번지, 454m²)

그리고 2022. 3. 7. 사업부지 변경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의 변경계약을 ○○과에 의뢰한 결과 2022. 3. 13. 최초 설계용역계약금 69백만 원에서 91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이 체결되어 22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며,

또한, 2021. 12. 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추진 검토보고를 하면서 변경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사항 중 ‘보상협의 완료된 토지 중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필지는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군수의 결재를 받았으나, 보상을 완료한 3필지 중 2필지(○○리 ○○○-○, ○번지)는 차량 진입도 불가 하며, 나머지 1필지(○○○-○○번지)는 토지 형태로 인해 주차효율도 낮아 보상이 완료된 필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지장물에 대한 철거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등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활용도가 낮은데도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한 부지를 환매하거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씨 및 인근 주민 2명과 보상협의를 원만하지 않음을 사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1. 12. 1.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이미 지급한 247백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비가 매몰되었고, 추가 설계용역비 22백만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주차장 합성보 및 합성기둥 특허공법 선정 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합성보 및 합성기둥의 특허공법 선정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가위원들이 명확하게 평가(채점)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평가위원들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평가(채점)하여 적합한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합성보 및 합성기둥의 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2021. 3. 3. ○○○ 등 7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작성해 부군수(대결) 방침을 득한 후 2021. 3. 25. 서면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2021. 3. 3.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합성보 및 합성기둥의 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수립한 계획서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5개 평가항목 중 기술성 항목의 ‘8m 이하 공작물 설계 및 시공실적’에 관한 사항은 2021. 12. 1. 사업부지 변경(○○리 ○○○-○○번지 일원)에 따라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이에 따라 특허공법의 적정성 및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전 평가 결과대로 실시설계에 적용하였으며, 평가위원 중 2명은 [표 4]와 같이 평가 배점 기준을 초과한 채점 오류⁴⁾ 사항이 있었음에도 재검토 없이 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3]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법심의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성	30	10	해당 공법의 유사실적 (8m 이하 공작물 설계 및 시공실적) 상대평가
		10	구조 배치의 적정성(경간 및 보 배치)
		10	기술인정 내역(신기술 인증, 품질, 성능인증)
경제성	30	10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내역의 성실도 검토)
		20	공사비 비교(m ² 당 골조공사비 기준) 상대평가
시공성	15	10	시공의 용이성(설치 및 후속공정)
		5	공사기간의 적정성(제작 및 설치) 상대평가
유지관리	15	10	시설물의 일반적인 보수보강 방안
		5	유지관리의 용이성
기타	10	5	심미성(시각적, 공간적인 방해를 주지 않는 구조)
		5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상대평가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4) 평가 배점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2명의 평가위원이 2, 3순위 업체 평가에 동일한 오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 순위의 변동사항은 없음

[표 4]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법심의 채점오류 현황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A위원 (1위 업체)	B위원 (1위 업체)
기술성	30	10	해당 공법의 유사실적 (8m 이하 공작물 설계 및 시공실적) 상대평가	8	10
		10	구조 배치의 적정성(경간 및 보 배치)	10	6
		10	기술인정 내역(신기술 인증, 품질, 성능인증)	10	10
경제성	30	10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내역의 성실도 검토)	8	8
		20	공사비 비교(㎡당 골조공사비 기준) 상대평가	8	8
시공성	15	10	시공의 용이성(설치 및 후속공정)	10	8
		5	공사기간의 적정성(제작 및 설치) 상대평가	<u>10</u>	<u>8</u>
유지관리	15	10	시설물의 일반적인 보수보강 방안	10	10
		5	유지관리의 용이성	<u>8</u>	<u>10</u>
기타	10	5	심미성(시각적, 공간적인 방해를 주지 않는 구조)	<u>10</u>	<u>6</u>
		5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상대평가	<u>8</u>	<u>10</u>
배점합계	100	100	-	100	94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금지 위반 등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5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설계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한 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등의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 설계용역 감독을 할 때에는 용역 완료 전에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교차로의 가장 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가 설치되도록 감독하고 설계용역 검사를 할 때에는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사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적고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 내용, 계약금액을 조정한 뒤 검사 완료한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대가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등의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검토 부적정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2021. 12. 1. 사업부지 변경 검토 보고 이후 2021. 12. 1. ~ 2022. 6. 27.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하면서 설계용역업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가 노외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의 출입구를 도로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전기·통신 도서에는 출입구에 경보장치 설치 계획을 누락하여 용역성과물을 제출했음에도 주차장법과 설계도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설계용역업자에게 보완설계 및 시정요구 없이 2022. 6. 27.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다.

② 실시설계용역의 합리적·경제적 시공대안 검토 미흡

의령군 ○○○○○과에서는 2021. 12. 1. ~ 2022. 6. 27.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하면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변경 등 사업 지연사항이 있었는데도 특허공법 반영을 위해 140일간 용역 기간을 연장⁵⁾하였고,

그리고 ‘2020 의령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연구보고서⁶⁾’에 따른 주차장 부족면수 95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30m 인근에 중동 공영주차장(37대)⁷⁾이 조성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는 58대를 추가 계획할 것을 검토하고,

5) ○○○○○과-53751, 57120, 57148호에 따라 2회에 걸쳐 140일을 연장하여 2022. 6. 27. 준공함

6) 제5장 주차수급 현황분석에 따르면 12구역의 부족한 주차대수는 95대임

7) ○○○○○○ 공영주차장 사업부지에서 직선거리 약 30m 인근에 위치(○○리 ○○○-○○ 외 4필지)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주차규모 및 주차방식 변경 등 적절한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특허공법 반영을 위해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인허가 절차가 간소한 공작물축조신고⁸⁾가 아닌 건축허가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일 블록의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면 주차방식의 노외주차장으로써 96,200천 원 상당의 공사비로 총 37대의 주차면수를 확보(2,600천 원/1대)하였고, 이와 동일한 주차방식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검토할 경우 117,000천 원 상당의 공사비로 총 45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일부 구간을 지상 1층(2단) 규모의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조성하면 경제적인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

5. 신축 주차장건축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하고, 재산관리관은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8)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높이 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임

따라서 의령군 ○○○○○과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1건 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하며,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 1. 22.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⁹⁾을 추진하면서 당초 노면주차를 10억 원 이상인 18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신축 건축물식 주차장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보상취득을 위한 사업부지를 취득(변경)할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부지면적	3,527㎡	2,886㎡	감 641㎡
주차면수	120면	102면	감 18면
보 상 비	2,621백만 원	1,644백만 원	감 977백만 원
공 사 비	879백만 원	1,856백만 원	증 977백만 원
주차형태	노면주차	1층-39대, 2층 39대 노면주차-24대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9) ○○○○○과-8388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

또한 2021. 12. 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¹⁰⁾을 추진하면서 취득하고자 하는 신축 건축물 또한 변경되어 취득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누락하였고,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의령군 ○○○○○과에서는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차장 합성보 및 합성기둥 특허공법 선정,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업무 등을 하면서 지장물건에 대한 적법 여부 검토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의 운영 부적정, 신규 취득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관련 법령 검토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검토 소홀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3필지 보상을 우선 추진하였고 최대 면적 소유자(○○○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보상협의를 계속하면서도 소유자간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2021년 추석¹¹⁾ 직전 갑자기 쓰러져 1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고 난 후 건강과 가사 사정 등의 이유로 보상 포기를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보상이 완료된 3필지의 보상금 지급일('21. 3. 15. ~ 3. 22.) 이전까지 총 11회의 보상협의를 위한 관내 출장¹²⁾이 있었고, 그 후 추가로 같은 해 4월까지 총 9회의 보상협의를 위한 관내 출장¹³⁾이 있었으나 같은 해 4. 29. 편입부지 대상자 6명에게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¹⁴⁾하는 등 보상대상자 10명 중 7명¹⁵⁾은 당초부터 보상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0) ○○○○○과-145309호(2021. 12. 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추진 검토보고

11) 2021. 9. 20. ~ 9. 22.

12) ○○○○○과-13248, 13242, 13243, 13244, 13846, 14747, 14786, 15323, 19815, 19816, 29172호

13) ○○○○○과-31465, 35764, 39100, 39784, 42307, 42308, 48285, 48600, 48601호

14) ○○○○○과-51798, 51799, 51800, 51801, 51802호(수신자: ○○○, ○○○, ○○○, ○○○, ○○○, ○○○)

15) 토지보상 대상 18필지(1,547㎡) 중 15필지(1,165㎡) 소유자 7명으로 면적대비 75% 토지지분 보유

또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계약금액의 청구와 지급) 제2항에 따라 매수인 의령군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계약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보상금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므로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령군 ○○○○○과에서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인정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인 군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아 협의 보상으로만 247백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보상금 지급 취소 및 회수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보상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적절한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여건상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상관련 업무에 따른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1. 12. 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따라 2022. 3. 7. 사업부지 변경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의 변경계약을 ○○과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22. 3. 13. 최초 설계용역계약금 69백만 원에서 91백만 원으로 변경 체결되어 22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된 사항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당 사업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금지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의령군 ○○○○○과에서는 사전 검토 시 ○○○○○○ 부설주차장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였으며,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의 행사 시 열악한 주차 여건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사업의 중앙단위 최종 심사에서 전용주차장 필요성 인정, 해당 사업의 명칭에 ○○○○○○이 포함되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사업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의 목적이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별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 확충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의령군 주차장 조례」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이란 의령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과에서 ○○○○○○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의 검토 소홀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어 인허가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자 발주청으로써 주차방식 변경, 특허공법 적용 제외,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대안·검토 요구를 설계용역사에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사에 검토한 결과 SRC(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 공영주차장’은 건축물식 주차장으로써 SRC구조로 할 경우 구조적 강성 확보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SRC구조 및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설계용역 준공기한을 연장¹⁶⁾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으로 되어 BF 예비인증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등의 인허가 기간과 사업비 증가 등 불합리한 여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8m 이하의 일반철골조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만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대안검토 없이 설계용역사의 설계(안)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사항은 발주청으로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16) ○○○○○과-14289(사업구역 변경으로 2022. 5. 8.까지 90일 연장), 53751(용역 준공기한 2022. 5. 8. 일정지연 우려로 특허업체 및 설계업체에 독촉 요구), 57148(사업부지 매입 및 분할 측량으로 2022. 6. 27.까지 50일 연장)호

더욱이 노면주차 방식의 주차장과 주차구획 당 공사비를 비교·검토해보면 ‘○○○○○○ 공영주차장’은 1대당 2,280만 원¹⁷⁾이 소요된 반면 노면주차 방식은 1대당 260만 원이 소요되므로 발주청으로써 설계용역 검토과정에서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¹⁸⁾가 부적정했다고 판단된다.

위 지적사항은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차장 특허공법 선정,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247백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비가 매몰된 점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책임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정책결정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비위행위자(담당자) 순으로 문책 정도의 순위를 정하고 관련자의 경력과 업무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처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등을 위반하여 실시설계용역 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특허공법 선정,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와 관련한 실무담당자의 지도·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 ○○○(현 ○○○○○○○○○)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사업부지 변경추진 당시 감독책임자 ○○○○○과 ○○○○○○○○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17) 63대 주차구획 조성에 건축공사비 1,442백만 원(보상비 제외)으로 2023. 6. 21. 설계변경 사항 반영 전 금액임

18)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2조(기본설계의 내용 등) 제1항 제8호

○○○(현 ○○○○), 설계용역 감독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과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과 ○○○○○○○○ ○○○(현 ○○○장)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훈계, 주의)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별도 ‘주의’ 처분 대상

②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금지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한 설계용역사업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에 대하여 건축사 위법보고 또는 주의조치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노외주차장 출입구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시설 및 과속 방지시설 설치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신축 주차장건축물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보상취득 재산에 대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 및 ○○ ○○○○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등 설계용역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의령군 (○○○○과)
조 치 기 관 의령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의령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 8. 10. ○○건축사사무소 대표 ○○○과 도급액 37백만 원에 ‘○○○○○ ○○○○○○ 및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6. 용역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5. 8. (주)○○ 대표 ○○○과 도급액 826백만 원에 건축공사를 계약하여 2023. 11. 3.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표 1] ○○○○ ○○○○○○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실시설계 용역	2022. 8.10.	○○면 ○○리 ○○○- ○	실시 설계용역 1식	37	37	-	2022. 8.16.~ 2023. 2.26.	○○건축사 사무소 대표 ○○○	100%
건축공사	2023. 4.30.		건축공사 1식	981	826	155	2023. 5. 8.~ 2023.11. 3.	(주)○○ 대표 ○○○	21%
감리용역	2023. 4. 7.		건축 감리용역 1식	14	14	-	2023. 5.10.~ 2023.11. 5.	○○○ ○○ 대표 ○○○	21%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르면 사업계획면적이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10,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에 따르면 승인기관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에서는 ○○○○ ○○○○○ 및 ○○ ○○○○ 조성공사의 사업계획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 이상에 해당 할 경우에는 대상 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에서는 2022. 8. 10.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해당 사업계획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 이상인 11,892㎡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¹⁾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항 아호에 따라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토비피복지도의 나지(裸地)로 분류된 계획관리지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3만㎡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그 결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2023. 5. 8. 착공하였다.

[표 2] ‘○○○○ ○○○○ 및 ○○ ○○○○ 조성사업’ 건축개요

구분	지역.지구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계획관리 지역	○○면 ○○리 ○○○-○번지	11,892㎡	지상2층 (7개 동)	제1종 근생 (주민공동이용시설)	208.13㎡	299.85㎡

[출처 : 의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따르면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²⁾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 협의³⁾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 ○○○○○○○○○에서는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하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 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3)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음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령군 ○○○○○○○○○에서는 ‘○○○○ ○○○○○ 및 ○○ ○○ ○○○ 조성사업’의 설계용역감독을 하면서 대지면적이 2,000㎡를 초과한 11,892㎡로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기존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건축물 등을 배치계획하여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우수의 직접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 및 침투량 결정과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규모계획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검토하여야 하는데도 면밀하게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아 설계용역사업자에게 보완설계 및 시정요구 없이 준공 승인하였고, 2023.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의령군 ○○○○○○○○○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면적을 건축물, 진입로 등 실제 개발면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연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검토 미숙으로 이에 대해서 누락하였으나 현재 자연 투수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되는 건축물 개발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반영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등을 위반하여 실시 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현 ○○면사무소)와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또는 의령군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 증축 및 추가 개발사업 추진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